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진 >

- 연구책임자
임형택 (광주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학장)

- 공동연구원
권재환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송형길 (광주 평생교육사협회 협회장)

- 연구보조원
김종완 (진학일보 토크아카데미 대표)
임윤환 (전 목포과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 자문
선홍규 (동명회계법인)
김민석 (동명회계법인)
지채호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오소면 (전라남도 인재양성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주요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II.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유관 법령 분석 · 6

1.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변화 · 6
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변화 · 9
3. 평생교육 유관법령의 체계 · 13
4. 평생교육법에서의 추진근거 · 14
5. 지자체 조례에서의 추진근거 · 16
6. 요약 및 시사점 · 19

III. 지역평생교육정책 추진현황과 운영사례 분석 · 20

1. 중앙정부의 평생교육정책 동향 · 20
2.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정책 동향 · 24
3.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정책 동향 · 31
4.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사례 분석 · 35
5. 요약 및 시사점 · 37

IV. 전라남도 평생교육 환경과 관계자 요구 분석 · 39

1. 전라남도 평생교육인프라 SWOT분석의 개요 · 39
2. 전라남도 평생교육환경 분석 · 44
3.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관계자 요구 분석 · 55

V.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 69

1. 타당성 검토의 개요 · 69
2. 법적 타당성 분석 · 76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 79
4. 재무적 타당성 분석 · 93
5. 실행 타당성 분석 · 114

VI.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 124

1. 기본방향 · 124
2. 조직설계를 위한 환경분석 · 127
3. 조직 구성 전략 · 130
4. 추진체계 구성 · 131
5. 법인의 단계적 발전 · 132
6. 법인화 추진 당위성 및 제언 · 154

< 참고문헌 > · 155

< 부 록 > · 157

< 표 목 차 >

- [표Ⅱ-1] 추진체제별 역할 및 기능 · 9
- [표Ⅱ-2] 제1~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주요 변화내용 · 10
- [표Ⅱ-3] 평생교육 유관법령 내용 · 14
- [표Ⅱ-4] 평생교육법 주요내용 · 15

- [표Ⅲ-1] 교육부 평생교육 전담부서 주요 업무 · 20
- [표Ⅲ-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 22
- [표Ⅲ-3] 각 시·도별 평생학습 전담조직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 · 24
- [표Ⅲ-4]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현황 · 25
- [표Ⅲ-5] 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성 및 예산 · 26
- [표Ⅲ-6]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 27
- [표Ⅲ-7] 평생학습관 운영현황 · 32
- [표Ⅲ-8]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33
- [표Ⅲ-9]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사 채용 비율 · 34
- [표Ⅲ-10] 전남·경기·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35
- [표Ⅲ-11] 서울·경기·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비교 · 35
- [표Ⅲ-12] 전남·대전·경기의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인력 및 예산 비교 · 36

- [표Ⅳ-1]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팀별 주요업무 · 44
- [표Ⅳ-2]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 45
- [표Ⅳ-3] 지역별 평생교육 기관 · 46
- [표Ⅳ-4]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기관 · 47
- [표Ⅳ-5] 지역별 설립주체 현황 · 48
- [표Ⅳ-6] 주력 교육영역 · 49
- [표Ⅳ-7] 기초문해 프로그램 · 49
- [표Ⅳ-8] 학력보완 프로그램 · 50
- [표Ⅳ-9] 직업능력 프로그램 · 50
- [표Ⅳ-10] 문화예술 프로그램 · 50
- [표Ⅳ-11] 인문교양 프로그램 · 51
- [표Ⅳ-12] 시민참여 프로그램 · 51
- [표Ⅳ-13] 성별 참여자현황 · 52
- [표Ⅳ-14] 연령별 참여자현황 · 52
- [표Ⅳ-15] 거주지역별 참여자현황 · 53
- [표Ⅳ-16] 학력별 참여자현황 · 53
- [표Ⅳ-17] 결혼여부별 참여자현황 · 54
- [표Ⅳ-18] 종사직종별 참여자현황 · 54

- [표Ⅴ-1] 타당성 검토 기준 · 70
- [표Ⅴ-2] 설립 타당성 검토 항목(제6조제3항 관련) · 70
- [표Ⅴ-3] 설립심의위원회 심사표(예시) · 73
- [표Ⅴ-4] 설립 전 협의 생략 기준 · 74

[표 V-5]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독립의 판단 기준	· 78
[표 V-6]	세부 추진과제	· 85
[표 V-7]	전년 대비 소요예산 비교	· 93
[표 V-8]	재정 투자 계획	· 94
[표 V-9]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재정지원 근거	· 97
[표 V-10]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대안 비교 검토	· 99
[표 V-11]	설립유형별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	· 101
[표 V-12]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	· 115
[표 V-13]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팀별 주요업무	· 116
[표 V-14]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117
[표 V-15]	전라남도 시·군별 평생교육 추진 현황	· 121
[표 VI-1]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 131
[표 VI-2]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사업	· 131
[표 VI-3]	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1안)	· 133
[표 VI-4]	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2안)	· 134
[표 VI-5]	2018~2019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안)	· 135
[표 VI-6]	2020~2021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안)	· 137
[표 VI-7]	2022~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안)	· 139
[표 VI-8]	2016~2021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팀)별 인력 운영계획(안)	· 141
[표 VI-9]	전라남도 평생학습전략 협의회 구성 예시	· 145
[표 VI-10]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153

[그림 목차]

- [그림Ⅱ-1] 개정 전 평생교육 추진체제 · 7
- [그림Ⅱ-2] 개정 후 평생교육 추진체제 · 7
- [그림Ⅱ-3] 평생교육 추진체제 · 8
- [그림Ⅱ-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11
- [그림Ⅱ-5] 평생교육 유관법령 법체계 · 13
- [그림Ⅱ-6] 평생교육법 구성체계 · 16
- [그림Ⅱ-7] 17개 광역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17

- [그림Ⅲ-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 21
- [그림Ⅲ-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 23
- [그림Ⅲ-3]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현황 · 32

- [그림Ⅳ-1] SWOT분석 기본 틀 · 39
- [그림Ⅳ-2]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 45
- [그림Ⅳ-3] 설립 주체별 기관 현황 · 47

- [그림Ⅴ-1] 제 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79
- [그림Ⅴ-2] 창조학습생태계 · 80
- [그림Ⅴ-3]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계도 · 82
- [그림Ⅴ-4] 전라남도 평생교육 비전과 전략 · 84
- [그림Ⅴ-5]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1(추진역량 강화)과의 연계성 · 87
- [그림Ⅴ-6]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2(생활의 활력 증진)과의 연계성 · 88
- [그림Ⅴ-7]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3(사회통합)과의 연계성 · 89
- [그림Ⅴ-8]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4(지역산업 지원)과의 연계성 · 90
- [그림Ⅴ-9]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 · 115
- [그림Ⅴ-10]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 118
- [그림Ⅴ-1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 118
- [그림Ⅴ-12]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 119
- [그림Ⅴ-13]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 119

- [그림Ⅵ-1] 전라남도 평생교육 비전과 전략 · 124
- [그림Ⅵ-2] 조직설계를 위한 환경분석 · 127
- [그림Ⅵ-3] 분석내용 정리방법 · 127
- [그림Ⅵ-4] 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1안) · 133
- [그림Ⅵ-5] 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2안) · 134
- [그림Ⅵ-6] 2018~2019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안) · 135
- [그림Ⅵ-7] 2020~2021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안) · 137
- [그림Ⅵ-8] 2022~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안) · 139
- [그림Ⅵ-9] 전남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 방안 · 14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사회적 변화에 맞는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필요

□ 창의력 중심의 창조경제 시대 도래

-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확산 되고 있음
- 노동구조의 탄력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변화 형태는 교육 분야에서의 점진적 유연화를 요구함
- 따라서 현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체제의 유연한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100세 시대 인생 후반기 교육체제 및 평생교육인프라 확충 필요

- 현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인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창의교육 전략과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채택 됨
- 조기은퇴 또는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 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체제가 미흡한 현실임
-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 등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함

나. 제도적 변화에 따른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

□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증대

- 글로컬(Glocal) 시대에 평생학습사회 건설은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함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됨. 이에 전라남도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를 통한 전남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광역 단위에서는 평생교육 추진 가시화를 통한 기초지자체와의 견고한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중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견고한 조직체제 정착을 통해 광역단위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합리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군과의 정책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도민 평생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현재의 광주전남연구원 위탁 운영 결과, 상호 간 시너지 효과 미창출

- 광주전남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간 기관성격의 차이로 상호간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함
- 회계분야의 업무 처리 시 독립적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단의 승인 절차를 통해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복잡한 행정의 비효율화 및 회계처리 상의 빈번한 문제 발생 초래
- 또한, 업무에 관한 상호 의견 충돌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 성과평가에 있어 광주전남연구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그대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전가되는 등 중복 및 의견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소모적 행정력 낭비 초래

□ 자생적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제도적 한계 극복 필요

-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예산의 자생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 사업 수탁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기관 성격의 한계(단체)로 인하여 외부 공모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실정임
- 외부 공모 사업의 경우 참여 자격 요건을 법인으로 규정하는 사업이 많아 기존 계속사업 이외의 공모사업에 현 기관격(단체)으로는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결국 도 출연금 의존도를 높여 도와 평생교육진흥원 양쪽에 재정진전화 측면에서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도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평생교육진흥원 자생적 재정 자립도 증가를 위해서 법인화를 통한 자생적 수익구조 창출이 절실히 요구됨

라. 연구목적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계획 수립 및 향후 운영방안 마련
- 법인 설립 적정성 및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운영, 법인 설립 전후 효과 및 전망 분석 등 법인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
- 진흥원 설립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 발전방향, 조직·예산규모, 인사운영 방안 등 진흥원의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연구 내용

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문헌조사 및 국내 관련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평생교육 관련 정책수립 지원 및 관련 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및 전환 운영 사례 검토·분석
 - 시설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조직·인력구성, 시설운영 및 재무현황 등
 - 운영 성공·실패 요인 분석 및 사례연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분석, 정책 제언 등
-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 법인 설립의 법적제도적 타당성 분석(관련법률 검토 및 설립절차 등 제시)
 - 전남 평생교육 여건 분석, 진흥원 법인 설립의 목적, 필요성 및 법인의 역할·기능 등 검토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당해 평생교육 관계기관 및 지역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 사업별 수지분석(B/C분석) (향후5년간)

-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을 추정
- 비용과 편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 확보
- 비용과 편익의 비교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여 분석
-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편익비용비(BCR) 분석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향후 5년간)

- 사업의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 장단기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정량, 정성적)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지역주민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나.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운영 기본계획(안) 제시

□ 법인의 사업범위·제공서비스 및 법인 설립 방안 제시

- 법인 설립 목적, 필요성 및 법인의 역할·기능
- 법인의 사업범위(세부내용 포함)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제시
- 법인설립 절차 등 구체적 법인설립 방안 제시
- 자본금의 출연형태 등 분석(현금 및 현물출연)
- 법인의 비전, 목표, 기능 등 마스터플랜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법인의 업무분장(안), 조직·인력운영계획(안)제시(향후 5년간)

-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 후 최적의 업무분장(안)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하여 최적안 선정
-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 직급별·직종별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등 검토

□ 법인 설립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향후 5년간)

- 사업에 필요한 적정 출연금 규모 분석(자본금 및 운영출연금)
-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지원예산 규모 분석
- 전라남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을 통하여 재원조달방안 마련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법인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 법인 운영 관련 공적자금 외 사업예산 확보 방안
- 기타 수익 발굴 및 수익 창출 방안 등 분석·제시

3. 연구 방법

□ 현황조사 : 전라남도 평생학습자원 현황 조사

□ 문헌조사 : 국내 평생교육진흥원 자료 수집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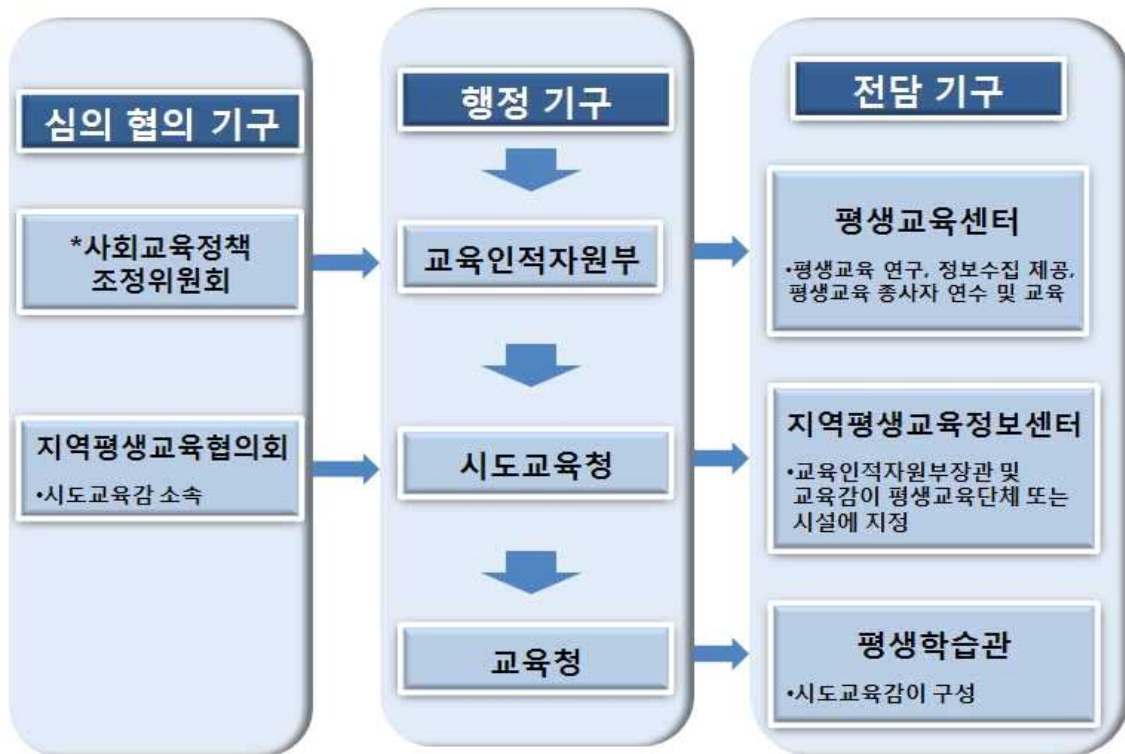
□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와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계사, 평생학습 전문가, 평생학습 유관 인사, 관계공무원 등과의 수시 협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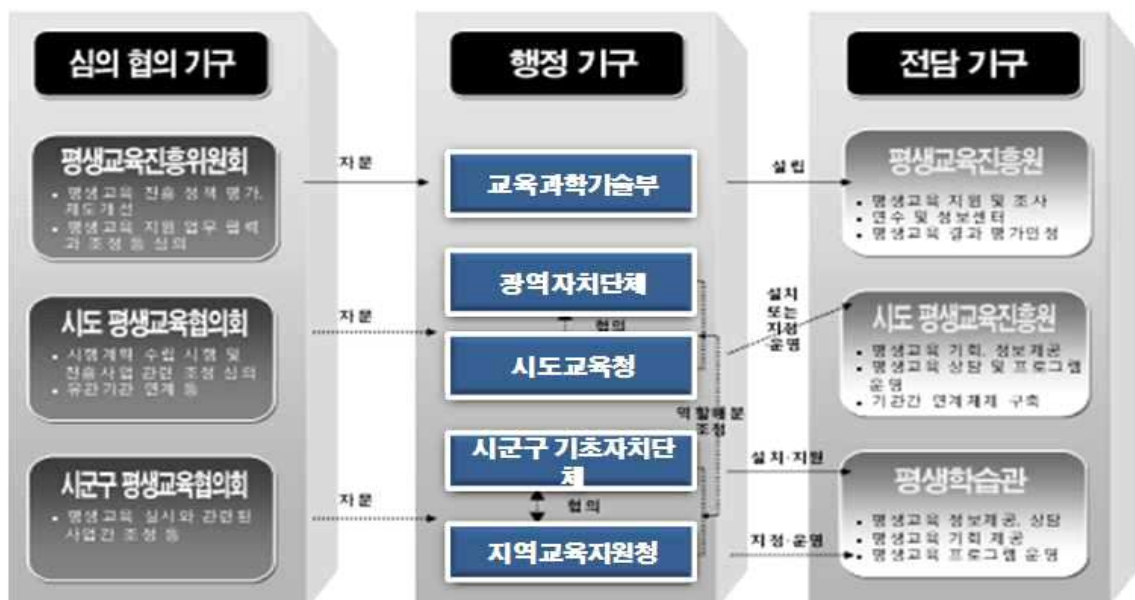
1.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변화

가. 일반행정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변화

-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 5조 1항)
-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우리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에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직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평생교육센터-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청 교육감 지정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교육감지정 평생학습관의 실행기구에 의해 추진됨
- 허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학교교육에 집중된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이 일반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책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임
- 이에 정부는 2007년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전 시·도교육청이 수행했던 지역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협업’을 통하여 교육청이 지방평생교육에 참여하게 함
- 이러한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변화는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단위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두어 지역의 평생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1] 개정 전 평생교육 추진체제



[그림 II-2] 개정 후 평생교육 추진체제

*출처 : 박인중 외 8인(2011).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출연기관의 조직 운용 방안 p.43~45 재구성

나. 현행 평생교육 추진체계

-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2014.01.28.) 과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확립된 현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II-3]와 같음
-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간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완성도를 포함
 - 국가·시·도 및 교육청·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스마트한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각 기관별 역할분담의 효율성을 기대함



[그림 II-3] 평생교육 추진체계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 평생교육백서 p.52

□ 추진체제별 주요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표 II-1]와 같음

[표 II-1] 추진체제별 역할 및 기능

구분		중앙	시·도(광역시)	시·군·구(기초)
명칭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주체		국가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이원화 운영체제 *교육감: 지정 운영 *지자체장: 설치 지원
성격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 *평생교육전담 집행기관	광역시·도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기능	위원회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정부 정책 및 사업 조정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조정, 심의, 규관기관 연계 등	평생교육 실시, 관련 사업 간 조정 등
	전담 기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육부장관 위 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의 장: 시·도지사 부의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위 원: 20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의 장: 기초단체장 위 원: 12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근거		평생교육법 제 19조	평생교육법 제 20조, 지자체의 조례	평생교육법 제21조, 지자체 조례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연구. p.20

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변화

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개요

- 우리나라의 국제지위와 경제수준은 높아졌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OECD 조사 결과 34개국 중 27위였고, 국민 행복지수의 주요 요소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임

*OECD 평균 40.4%, 스웨덴 73.4%, 핀란드 55%, 한국 35.6%('12년)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제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02~'06)」, 「제2

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08~'12)」에 이어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3~'17)」을 수립하였음

□ 지금까지 시행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Ⅱ-2)와 같음

[표 Ⅱ-2] 제1~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주요 변화내용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02~2006)	제2차 기본계획 (2008~2012)	제3차 기본계획 (2013~2017)
비전	- 교육복지국가 - 인적 강국 건설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교육사회 구현	- 100세 시대 창조적
목표	- 자아실현 - 경제적 경쟁력 - 사회통합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 -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 - 평생학습기반 구축	- 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
전략	- 정보화 - 지역화 - 파트너십 - 학습	- 생애 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 평생학습네트워크	- 일, 학습, 능력 연계 - 국가재정지원 확충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
주요 정책영역	- 지역학습 문화진흥을 통한 평생학습의 지역화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 지역평생학습관으로서 학교의 재구조화	-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 지역하회의 학습역량 강화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연구. p.21

나.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의의

■ 비전 및 목표체계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 은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이라는 비전아래 3대 목표, 4대 영역,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함



[그림 II-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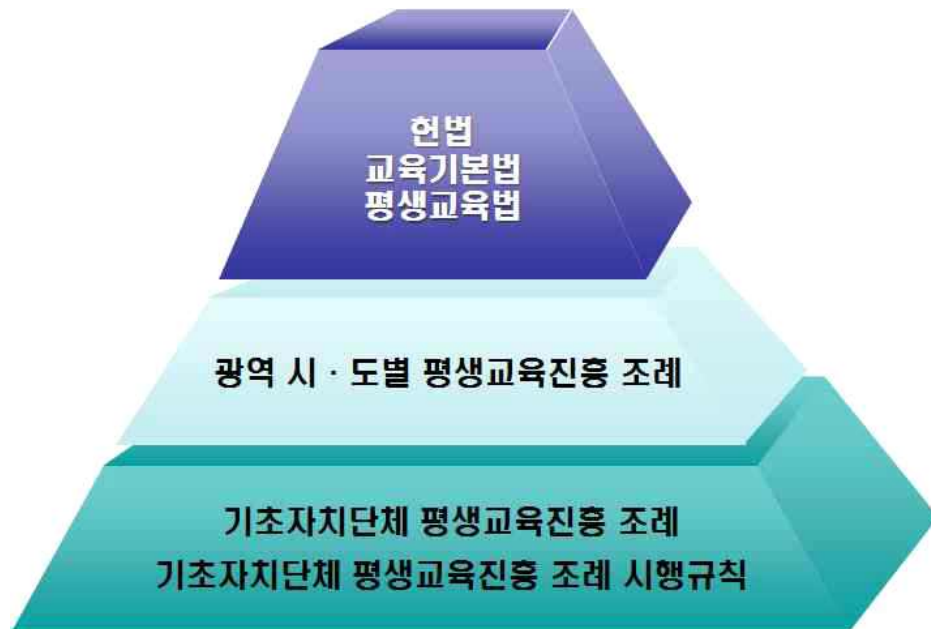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4대 영역에는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를 설정함
- 제2차 계획('08~'12)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지원전담기구 정비와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제3차 계획은 창조경제시대에 진입에 따라 전 생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제3차 계획을 통해 생애단계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 학습을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 학습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을 통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온·오프라인의 학습정보와 콘텐츠를 한데 모아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련된 조항이 대폭 신설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능을 적극 추진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광역단위 평생학습이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에 비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지역평생학습추진체제의 재정비를 강조하고 있음
-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예산의 확대, 평생학습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

3. 평생교육 유관법령의 체계

- 평생교육과 관련한 법령 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Ⅱ-5)와 같은 최상위 법령으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차상위 법령에서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음. 이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정책의 집행과 기관 간 연계체제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하위 법령 단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지원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림 Ⅱ-5] 평생교육 유관법령 법체계

*출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연구. p.3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의 평생학습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 장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 실시에 대한 임무를 명시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시행규칙은 광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

[표 II-3] 평생교육 유관법령 내용

구분	조항	내용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 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평생 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3조 도지사의 임무	도지사의 주요임무는 정책수립 및 추진, 평생교육 권장, 교육감과 연계한 평생교육 추진 포함

4. 평생교육법에서의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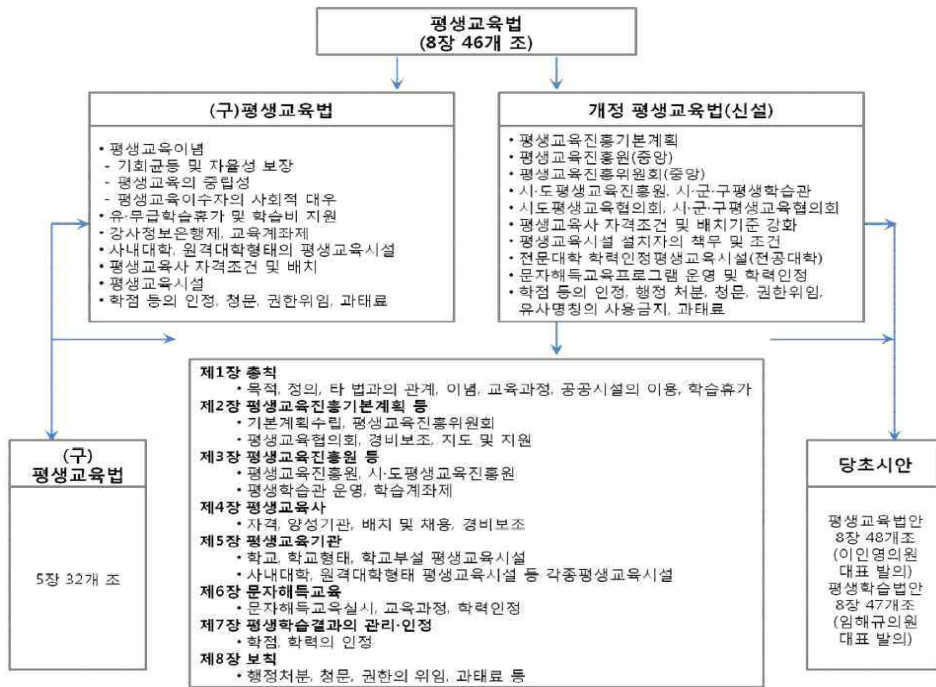
- 사회교육법에서 1999년에 전부 개정된 (구)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2007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개정 평생교육법이 됨
 -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관련 개념 규정의 명확화, 평생교육진흥조항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강화, 평생교육사업 전담기구 강화, 평생교육사 관련규정 강화,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조항의 신설 등임

- 개정 전 평생교육법은 평생학습 범위가 포괄적이었으나 전면 개정 후에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문자해독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
-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업 전담기구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강화를 위해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인정조항이 신설되고 가장 기초적인 문자해독능력 고취를 위한 노력이 신설됨. 또한 평생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인정을 통해 평생교육과정이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표 II-4] 평생교육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평생교육이념과 교육과정, 공공시설 이용 등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과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시·군·구 및 읍·면·동의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사항
제4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에서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자격부여 및 양성과 배치에 관한 사항
제5장 평생교육기관	학교 및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및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들에 대한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제6장 문자해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실시 노력과 교육과정, 학점인정 사항
제7장 평생학습결과의 관리 인정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점 및 학력인정 사항
제8장 보칙	행정처분 및 권한의 위임과 위탁, 유사명칭 사용금지, 과태료에 관한 사항

*출처 : 경기도(2013).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13~'17) 진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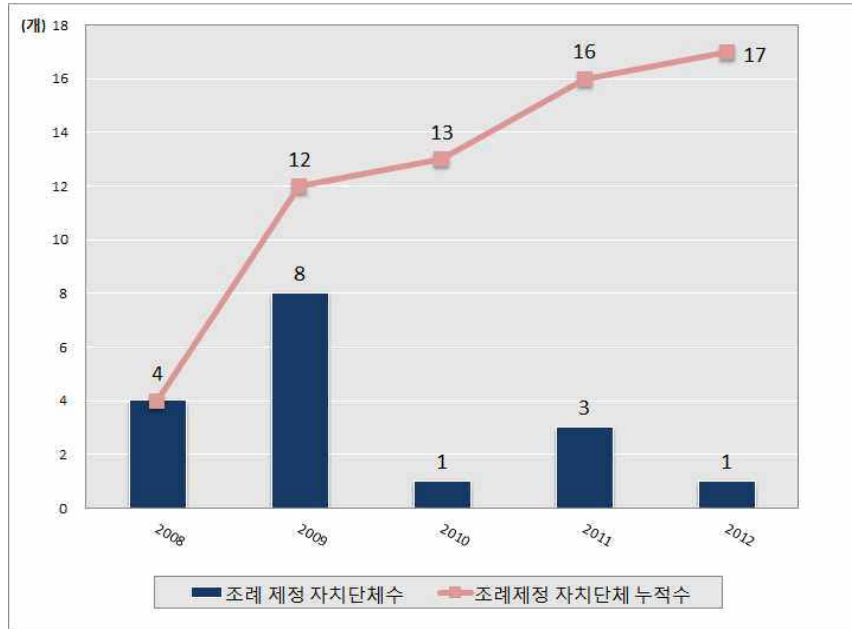
[그림 II-6] 평생교육법 구성체계

*출처 : 경기도(2013).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13~'17) 진흥계획.

5. 지자체 조례에서의 추진근거

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도별 조례

- 17개 광역 시·도 모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명시하고 있음. 이는 17개 시·도 모두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10월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함
- 17개 광역 시·도 모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림 II-7] 17개 광역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출처 : 최운실(20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수립연구.

□ 평생교육진흥 관련 조례가 제정된 17개 시·도 중, 강원,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도지사(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조항이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업무, 조직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단, 강원, 대전, 부산, 제주, 충북은 위의 내용들이 별도의 장 구분 없이 명시되어 있음

나.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2015.2.26.)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총칙,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보칙 등 총 4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임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경비보조 및 지원 등의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장 평생교육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의장 직무, 수당 운영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3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는 설치, 업무, 조직 및 시설, 운영 및 경비조달, 지정·운영절차, 직원 배치, 지정 취소, 운영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4장 보칙에는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 3장 제14조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가능함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되며, 「평생교육법」 제20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을 두고 원장이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 헌법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와 교육기본법에서의 국민의 학습권리 및 국민을 위한 사회교육 장려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제도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에 평생학습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가능성 인식은 17개 광역 시·도 모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도록 함
 -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는 재단법인 형태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운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평생교육 지원 책무를 수행 중임
 - 앞선 사례를 통해 평생교육진흥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조직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Ⅲ

지역평생교육정책 추진현황과 운영사례 분석

1. 중앙정부의 평생교육정책 동향

가. 정책 추진주체 및 주요 업무

□ 교육부

- 교육부는 차관 직속으로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과 단위의 조직으로 인재직무능력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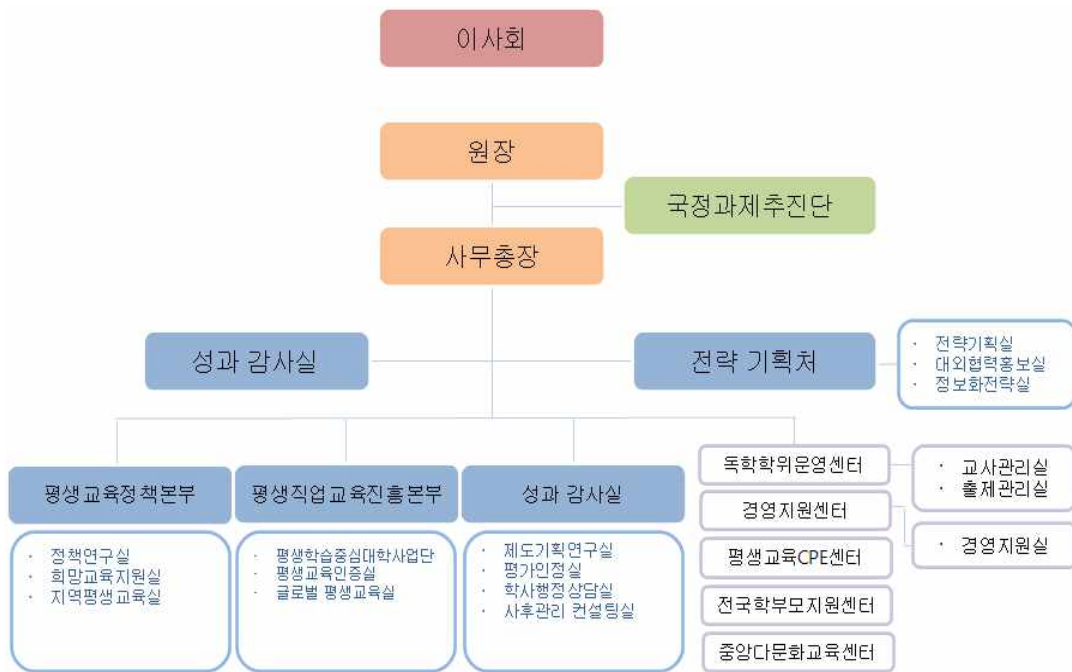
[표 Ⅲ-1] 교육부 평생교육 전담부서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인재 직무 능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총괄 •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평생 학습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 시행 •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 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 •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진로 교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 시행 •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책의 수립 시행 •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직업 교육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등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제도 개선 •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의 육성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거, 국가 평생교육진흥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지원,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평생교육의 중추 기관임



[그림 III-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 평생교육백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정책연구·개발, 평생학습 제도 운영, 평생학습 현안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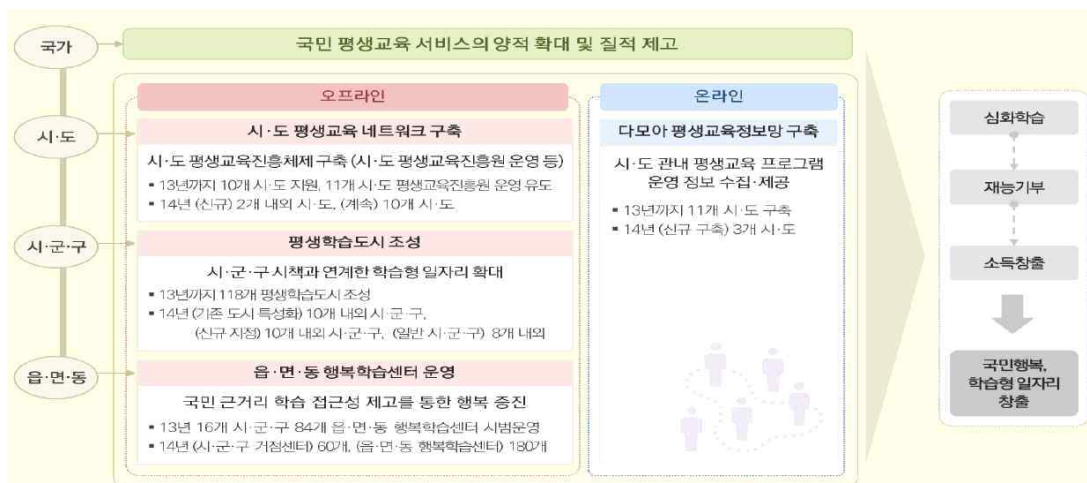
[표 III-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분야	목표	주요 업무
평생학습 기반 구축	국가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6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을 지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되는 국가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도모
	기초지자체 평생학습도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습-고용-복지 등 각 사회부문의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사회를 재구조화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참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에 기여 •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도모
	다모아 평생학습정보 망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 및 대민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광역단위 평생학습 추진체제 정비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역단위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 지원과 이를 위한 표준 개발 보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평생학습 국내 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관련 국내 외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해외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기관 방문 및 연수,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해외 유관 기관과의 MOU 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지속적인 협력 및 관계 발전 모색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선순환 경로 창출을 위한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성인학습자 친화형 커리큘럼 특화과정 개발 및 운영 • 학사운영체제 유연화를 통하여 일-학습의 병행이 원활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지원
	지역인적자원 개발(RHRD)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기반 마련 • 지역수요에 근거한 인재양성 및 활용을 지원
	희망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평생학습 지원사업
	전국학부모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학부모정책의 실행기구로서 학부모정책 추진체제 구동, 학부모서비스 제공, 학부모정책개발 기능을 수행
평생학습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 학습 대상자에 맞는 평생학습을 지원 	

*출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3). 경기도평생교육중장기('13~'17)진흥계획.

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현황

-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교육청 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다원화되면서 평생교육 체제가 안정화 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시 되었고 「평생교육법」 개정('07.12, '14.1.)으로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평생교육 추진체제 근거가 마련됨
 - 국가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추진(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교육정보화 및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연계된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임
 -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학습도시(시·군·구), 행복학습센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을 통한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
- 지자체가 지역 내 평생학습자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체계로 추진됨
 - 시·도 대상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군·구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 읍·면·동 대상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 온라인을 통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그림 III-2]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출처 : 교육부(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 계획 p.1~2.

2.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정책 동향

가. 광역단위의 평생학습 전담조직

□ 심의 및 협의 기구

- 광역 시·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와 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행정조직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행정조직으로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시·도 조직 내 평생학습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7개 지역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표 III-3] 각 시·도별 평생학습 전담조직 설치 및 기본계획수립 현황

구분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제정	시행	설치	담당부서	현황
서울	제정	'09.03.18	설치	교육협력국, 평생학습과	기본계획 수립
부산	제정	'09.02.04	설치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기본계획 수립
대구	제정	'09.05.11	설치	기획관리실교육협력 담당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실시
대전	제정	'08.12.26	설치	기획관리실, 교육지원 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울산	제정	'08.10.16	설치	교육혁신도시, 협력관실	기본계획 수립
인천	제정	'09.10.12	설치	기획관리실, 교육지원 담당관	진흥 연구 완료
광주	제정	'10.10.01	설치	창조도시정책 기획관실, 인재육성팀	기본계획 수립
강원	제정	'09.09.25	설치	기획관실, 교육복지팀	평생교육진흥실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경기	제정	'09.04.21	설치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수립
경북	제정	'09.03.09	설치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진흥 연구 완료
경남	제정	'08.12.31	설치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 담당	기본계획 미수립 시행계획 수립
충북	제정	'11.02.11	설치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기본계획 수립
충남	제정	'08.10.30	설치	교육법무 담당관실 평생학습 담당	기본계획 수립
전북	제정		설치	기획관리실, 교육법무과	진흥 연구 완료
전남	제정	'09.02.05	설치	행정과, 교육지원 담당	진흥 연구 완료
제주	제정	'09.03.18	설치	인재개발원, 평생학습과	기본계획 수립
세종			설치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출처 : 조순옥 김기환(2012). 국가평생학습 여건과 동향. 지역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경기도(2014).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13~'17) 진흥계획.

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설치 현황

□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2014년 기준 14개 시·도(대전, 경기, 충북, 대구, 울산, 제주, 광주, 강원, 전남, 서울, 충남, 인천, 부산, 경북)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하고 있음
- 특히, 경기와 대전은 독립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미설치 지역은 전북, 경남, 세종시임

[표 III-4]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현황(2014년 10월 기준)

구분	시·도	담당부서	지원 연차	운영 유형 및 주체	운영 시점	인구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운영	대전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담당(3명)	3년차	재단설립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중 (2011.7.)	1,533	57.5	75.4
	경기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21명)	3년차	재단설립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중 (2011.12.)	12,235	71.6	81.4
	부산	교육협력과 평생교육담당(3명)	3년차	지정 운영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운영 중 (2011.3.)	3,528	56.6	74.1
	울산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실 평생교육팀	2년차	지정 운영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중 (2012.7.)	1,147	70.7	80.0
	충북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1명)	3년차	지정 운영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중 (2011.4.)	1,573	27.6	73.6
	충남	교육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담당(4명)	2년차	지정 운영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 중 (2012.1.)	2,048	28.6	71.8
	제주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8명)	2년차	지정 운영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중 (2012.7.)	593	30.6	70.6
	인천	교육지원담당관실 평생교육팀(4명)	1년차	지정 운영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영 중 (2013.5.)	2,880	67.3	77.3
	광주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인재육성팀(1명)	1년차	지정 운영 (광주발전연구원)	운영 중 (2013.4.)	1,473	45.4	67.6
	경북	인재양성과 인재육성담당(3명)	1년차	지정 운영 (대구대학교)	운영 중 (2013.6.)	2,699	28.0	73.2
	대구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2명)	2년차	지정 운영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중 (2012.5.)	2,502	51.8	75.0
	전남	행정과 교육지원담당 (조례만관리)	-	지정 운영 (전남발전연구원)	운영 중 (2014.1.)	1,907	21.7	68.5
	강원	기획관실 교육복지팀	-	지정 운영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중 (2014.2.)	1,542	26.6	74.1
	서울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13명)	-	지정 운영 (서울연구원)	운영 중 (2014.4.)	10,144	88.8	90.1
운영 예정	전북	교육법무과 인재양성담당	-	지정 예정 (전북발전연구원)	2014년 목표	1,873	25.7	69.1
	경남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3명)	-	미정	미정	3,333	41.7	73.4
미정	세종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 담당	-	미정	미정	122	30.6	77.7

*출처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12 평생교육백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수정 보완

□ 대다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규모 확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은 시·도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규모가 확대
-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은 울산으로 2012년 5.5억원에서 2013년 26.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기도의 경우 2012년 21억원에서 42억원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고, 2013년 기준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으로 약 64억원 수준임

[표 III-5] 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성 및 예산

시·도	조직구성	인력	예산(단위 : 천원)	
			2012년	2013년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정책연구센터 3명 • 사업운영센터 3명 • 행정 전산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명 - 평생교육사 6명, 그 외 4명 - 정규직 9명, 비정규직 1명 	550,000	550,000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정책기획부 5명 • 교육운영부 7명 • 행정지원부 4명 • 대전시민대학본부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9명 - 평생교육사 22명, 그 외 17명 -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20명 	2,969,492	6,589,158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센터장 1명 • 평생교육팀 5명 • 청년창업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명 - 평생교육사 5명, 그 외 5명 - 정규직 2명, 비정규직 8명 	559,400	2,696,038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본부장 1명 • 평생학습전략실 5명 • 평생학습정책연구실 5명 • 경기창조학교 운영실 7명 • 행정지원실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3명 - 평생교육사 10명, 그 외 13명 - 정규직 23명 	2,100,964	4,216,765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사무처장 1명 • 전략기획팀 1명 • 역량강화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명 - 평생교육사 3명, 그 외 2명 - 정규직 4명, 비정규직 1명 	288,000	300,000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사무처장 1명 • 정책기획팀 2명 • 교육연수팀 3명 • 정보관리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명 - 평생교육사 6명, 그 외 4명 - 정규직 6명, 비정규직 4명 	177,906	1,088,115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정책기획팀 3명 • 교육지원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명 - 평생교육사 5명, 그 외 1명 - 정규직 6명 	400,000	500,000

* 출처 : 2012-13년도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다. 시·도 평생교육 정책 추진 동향

□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 2012~2013년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와 전남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시·도별 평생교육 정책 추진방향의 공통점은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별 맞춤형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국가 평생교육 정책과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음

[표 III-6]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2012~2013기준)

지자체	년도	추진방향	주요 과제
서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시민력 향상 • 생애단계별·대상별 평생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교육정책 추진본부로서의 서울 시민대학 운영 • 권역별 시민대학 캠퍼스 지정·운영 • 시민청 시민대학과정 운영 • 시립대학교 시민대학과정 개편 •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개방 • 평생학습장 확보·운영 • 평생학습리더 역량 강화 •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 운영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분석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구축·운영 •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학습공동체 모델 발굴 및 운영지원 •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지원 확대 • 노령사회를 대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부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교육진흥 •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연계 강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진흥 활력기반 강화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평생학습 공모사업 확대 및 시민참여 확산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글로벌교육 강화로 국제화 의식 제고 •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 고령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 고용 연계형 순환교육으로 평생직업능력 향상 • 지역 공공시설 활용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대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시민을 육성하는 인재도시 • 학습고용의 연계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활력 사회 • 학습 소외가 없는 평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행정지원시스템 체계화 •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전문화 • 평생교육정보 통합화 • 평생교육 전담인력 양성 및 활용 • 생애주기별 창조적학습자 양성 • 지역 생활권별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 평생학습문화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직업 능력 향상 • 평생교육기관 취업지원기능 고도화 • 소외계층 평생학습기회 확대 • 신소의 계층 평생 학습 안전망 구축 • 평생교육 파트너십 강화 • 평생교육 국제교류 협력 강화 • 평생교육 행정지원시스템 체계화 •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전문화 • 평생교육정보 통합화 • 평생교육 전담인력 양성 및 활용 • 생애주기별 창조적 학습자 양성 • 지역 생활권별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 평생학습문화 생활화 • 평생직업능력향상 • 평생교육기관 취업지원기능 고도화 • 소외계층 평생학습기회 확대 • 신소의 계층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 성인기초능력 향상 교육 체계화 •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계구축 • 평생교육 파트너십 강화 • 평생교육 국제교류 협력 강화
인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평생교육기반 구축 • 평생교육의 저변확대 및 전문화 • 다양화, 특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추진 • 시·군·구 평생교육전담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통합체계 확립 •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확립 • 평생교육 종사자 워크숍 개최 •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 지원 • 기능별 평생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특화형 및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 평생교육 등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각 실·과별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광주	2012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 추진 • 공공시설 이용 문화강좌 운영 •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 취업교육 및 직무능력 제고
대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사회 조성 • 지역사회통합 제고 • 평생학습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전문화·내실화 •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전 지역 운영 • 열린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 연합교양대학 운영, 인문고전 읽기 •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참여율 제고 • 고령사회 대비 지원 활성화 • 민주시민 참여교육 등 지역공동 실현 • 즐거운 학습문화 조성확산 • 평생학습기관간 상호 협력네트워크 강화
울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 • 울산지역 특화 사업 개발을 통한 평생교육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 평생교육의 Control Tower로서의 핵심 정책 기획 및 특화 사업 보급 • 공무원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한 대안적 사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 사업 운영 •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울산시민들의 상시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정기적인 운영 추진 •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소외계층 독서/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지원 •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지원 사업 •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전문가 특강 • 4050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울산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경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격차 해소로 도민역량 강화 • 성인학습자의 학습-일터 연계 강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체계 확립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학습마을 운영 및 확대 추진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 소외계층 자녀 학습 멘토링 사업 • 경기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 평생교육 e-러닝 '홈런(homelearn)운영' •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 • 경기5563 새 출발 프로젝트 • 경기 행복학습 병영 만들기 추진 • 경기 365 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성화 사업 • 도·시·군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분석·평가 •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시·군 공공기관 특성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 경기도 창의인성교육 브랜드화 • 경기도형 탈노숙 Toral-Care 프로그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평생교육을 통한 동반성장 • 도민 주도의 평생학습생태계 조성 • 경쟁력 있는 글로벌 평생학습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자원 • 일-학습-복지가 연계되는 평생학습 • 안정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아리 등 생활 속의 평생학습 실현 • 미래창조 평생교육 경기도민 육성 • 자기주도형 학습교육 기회 확대 • 평생학습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 거버넌스체제 및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 평생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강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기반구축 • 창조적 학습자 육성 • 직업능력 제고 • 사회통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 전담인력 양성 및 활용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운영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리더양성 및 선진인식 함양 • 학습-취업 연계 추진 •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 •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소외계층 평생학습 안정망 구축 • 성인 기초능력 향상
충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쟁력 강화 • 사회통합 증진 •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학습 연계 강화 • 재직자 평생직업교육 강화 • 성인후기 직업능력 향상 교육 강화 •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 평생학습 안정망 구축 • 지역공동체 실현 • 평생학습 참여 문화 조성 •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충남	2012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기반 구축 •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사업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기회 확대 •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 • 교육청연계 평생교육사업
전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현 •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실현으로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 • 도민의 사회통합 실현 • 도민의 직업능력 제고 및 향상, 능력사회 구현 •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의 생활화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 후기 평생학습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철시 또는 지정·운영 • 전라북도 평생교육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전라북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대 및 평생교육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인생4계 100세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경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체제 구축 • 모든 지역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충실 • 사회통합적 학습체계 구축 •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체계 마련 • 추진 주체 별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시설 및 환경의 정비 • 평생교육 추진시스템의 정비
경남	2012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대상별 평생학습 지원 •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중심 성인 전기·중기 평생학습 내실화 • 전문대학을 활용한 인터-학습 연계 강화 • 재직자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 학원 활용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 후기 평생학습 제공 • 초·중등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 • 지역 평생교육의 내실화 •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 등 신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안정망 구축 •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직업전문성 확보 •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과급
제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지역발전과 연계한 평생교육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추진체계 정비 • 평생교육기관 및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상생 지역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실태조사 분석 • 도민에게 실익이 가는 평생교육과정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지역화·특성화 • 직업능력개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육성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 생활화 •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운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실현: 개인의 성장, 인간의 잠재력 계발과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생산성 향상: 일과 학습의 연계를 통해 개인 삶과 지역의 경쟁력확보 가능성 향상 • 사회통합증진: 타인과 타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관심, 보살핌, 배려, 존중 등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과업에 따른 평생학습(교과학습, 자기개발) • 기본생활 적응 교육 및 문해 교육 등 성인기초교육 • 건강교육 등 성인 후기 교육 • 직무기초능력교육 • 직업윤리교육 • 직무능력 전문화 교육 • 창업·진직·전업 준비교육 • 여성직업교육 • 노인능력개발 교육 등 • 부모역할 및 가족, 세대 간 갈등해소 교육 • 사회봉사활동 교육 • 사회관계 개선 교육

3.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정책 동향

가.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전담조직

□ 심의 및 협의기구

- 시·군·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행정조직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전담 행정조직은 평생학습관으로,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기관수에 관해서 살펴보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74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과 부산이 각각 50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수에 있어서는 서울이 4,77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습자 수를 보면, 부산의 평생학습관 참여자수가 462,99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의 경우 지역인구수와 기관수를 고려할 때 197,643명의 학습자 수는 높은 수치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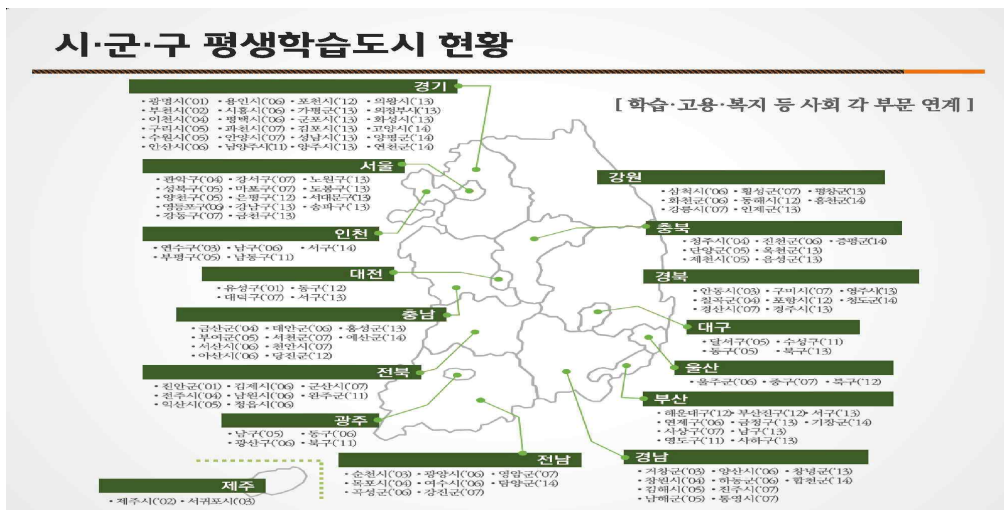
[표 III-7] 평생학습관 운영현황(2013년)

지자체	기관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명)
서울	50	4,772	197,643
부산	50	2,315	462,998
대구	31	1,827	105,928
인천	20	1,426	29,264
광주	22	1,004	52,693
대전	17	770	60,838
울산	4	211	12,119
세종	0	0	0
경기	74	2,673	114,887
강원	22	1,116	20,701
충북	15	515	9,180
충남	19	2,508	63,597
전북	19	574	24,061
전남	25	1,135	35,567
경북	24	1,053	22,020
경남	23	670	21,517
제주	6	147	6,710
합계	421	22,716	1,239,723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자료집

□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현황

-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서울은 14개의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며, 전라남도도 8개의 시·군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음
- 지역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를 보면, 서울이 14개, 경기도가 24개, 부산, 경남이 각각 10개 순이며, 다소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I-3]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현황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직무연수.

나. 시·군·구별 평생교육정책 추진 현황

□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 전체 227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210개 시·군·구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조례 제정 비율은 92.5%임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에 속한 시·군·구가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100%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강원(94.4%), 전북(92.9%), 충북(91.7%), 인천(91%) 순으로 조례 제정률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전남 지역의 조례 제정 비율은 72.7%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조례 제정률을 보이고 있음

[표 III-8]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3년)

지 역	전체 지자체수(개)	조례 제정 시·군·구(개)	비율(%)
서울	25	25	100.0
부산	16	16	100.0
대구	8	7	87.5
광주	5	5	100.0
인천	10	9	90.0
대전	5	5	100.0
울산	5	5	100.0
경기	31	31	100.0
강원	18	17	94.4
충북	12	11	91.7
충남	15	15	100.0
전북	14	13	92.9
전남	22	16	72.7
경북	23	20	87.0
경남	18	15	83.3
계	227	210	92.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2013). 서울시 평생교육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다.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전담인력 현황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사 채용 현황

- 광역자치단체 기준 평생교육사 채용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9]와 같음. 227개 시·군·구 중 111개 지역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50.2%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광주에서는 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어 평생교육사 채용비율 100%를 달성함
 -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평생교육사 채용률 87%로 나타나고, 대전과 울산이 80%로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사 채용률이 50%이상 넘는 기초자치단체들은 부산이 68.8%, 충남이 66.7%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56%, 전북이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은 41.7%, 인천은 40%, 대구 37.5%, 경북 30.4%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들 광역자치단체들과 대조적으로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구청 중 4개 기관만 채용되어 채용률이 18.2%이며, 경남 22.2%, 강원 27%로 나타나 지역의 평생교육사 채용률이 3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9]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사 채용 비율

지 역	시·군·구청 수(개)	채용기관 수(개)	평생교육사 채용 비율(%)
서울	25	14	56.0
부산	16	11	68.8
대구	8	3	37.5
대전	5	4	80.0
울산	5	4	80.0
인천	10	4	40.0
광주	5	5	100.0
강원	18	5	27.8
경기	31	27	87.1
경북	23	7	30.4
경남	18	4	22.2
충북	12	5	41.7
충남	15	10	66.7
전북	14	7	50.0
전남	22	4	18.2
계	227	114	50.2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4.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사례 분석

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 조례 비교

- 재단법인 형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임. 대전광역시는 평생교육진흥조례 외에도 2011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두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표 III-10] 전남·경기·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자체	설립형태	재원조성
전남	지정위탁	도 출연금
경기	재단법인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대전	재단법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비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적용

*출처 : 하봉운 외 2인(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 p.134 재구성

나.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비교

-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모두 평생교육 기회 부여 및 정보제공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연구조사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III-11] 서울·경기·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비교

지자체	기회 및 정보 제공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	평생 교육 관계자 연수	평생 교육 진흥 연구 조사 평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습 동아리 육성 활동 지원	소외 계층 지원	자치구 및 평생 교육 기관 지원	평생 교육 참여 확산 사업	도지사 시장 위탁 사업	평생 교육 진흥 필요 사업
서울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별도의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다른 조항에 내용이 포함된 경우 △표시

출처 : 하봉운 외 2인(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 p135 재구성

다.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및 인력 비교

- 재단법인 형태의 대전과 경기도의 경우 조직규모는 각 38명, 28명이나 지정 운영 형태인 전남의 경우 운영인력은 7명으로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인력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출연금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출연금 70억, 시민대학 30억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역시 약 43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약 5억원의 수준으로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Ⅲ-12] 전남·대전·경기의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인력 및 예산 비교

지자체	유 형	운영인력	예산과목 (금액)	비고
전남 (2014년)	지정운영 (광주전남연구원)	7명 (파견 3명)	출연금 (5.6억)	• 별도 예산편성 관리
대전 (2011년)	독립형 재단법인	39명 (파견 5명)	출연금 (70억) 시민대학(30억)	• 초기 : 13명 (시 파견 2, RHRD센터 4명, 공채7명) • 시민대학 24명 - 시 파견 3명
경기도 (2011년)	독립형 재단법인	29명 (파견 4명)	출연금 (43억)	• 초기 : 9명(공채 9명) • 창조학교, 창의인성센터 등

출처 : 허봉운 외 2인(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 p136 재구성

5.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 현황 요약

□ 중앙정부의 지역평생교육정책 요약

-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정책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전략과 과제에 따라 진행됨. 2014년 현재는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제1차, 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3차 계획을 통해 생애단계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함으로써 세대간·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기회와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의식 및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음
- 이로써 '17년까지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인 40.4%까지 올릴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평생학습 참여 격차는 9%로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평생교육정책 요약

- 시·도 평생교육 관련 조례 및 정책 추진 방향
 - 2008년 4개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2년 기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함
 - 시·도 평생교육정책은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노인, 여성, 장애인,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대에 초점을 둠
- 시·도 평생교육 주요 사업
 - 강원,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관련 사업 운영
 -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 경기도 끝든 트라이 사업, 울산지역 특화 사업 개발 등
 - 소외계층 지원 사업 비중 확대
 - 4050세대의 취·창업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전체 시·도 중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곳은 10곳(58.8%)임
 -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된지 2년 이상 된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 정책 추진, 평생교육 기관 정비 및 접근성 강화, 전문 인력 배치 등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 2년이상 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규모는 2~5배까지 확대되어 지역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의 체계를 갖추

□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

- 평생교육관련 조례 제정
 -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례 제정 비율은 92.5%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에 속한 시·군·구가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100% 제정함
 -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조례 제정 비율은 99.2%로 비평생학습도시 제정비율인 85.3%보다 높았음
- 평생교육 추진 조직 및 인력
 - 전체 시·군·구의 평생교육사 채용 비율은 48.9%로 나타났으며 광주(100%), 경기(87.1%), 대전(80.0%), 울산(80.0%)의 채용 비율이 높음.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자치구 중 4개의 자치구만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18.2%의 낮은 채용률을 나타냄

나. 정책적 시사점

□ 지역평생학습체제의 공간적 확대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확대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운영되어온 지역의 평생학습추진체제를 읍·면·동까지 보다 확대하는 것임
-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평생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 연차별 확대 계획 :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시·군·구
- 이와 같은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지역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총괄적 관리를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게 됨.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러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만함

□ 중앙-지역이 연계된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정책은 제1,2,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음. 국가 수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능동적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정책 추진방향은 평생교육정책 추진 기반 조성과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고용-복지 연계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대에 초점을 둠

IV

전라남도 평생교육 환경과 관계자 요구 분석

1. 전라남도 평생교육인프라 SWOT분석의 개요

- SWOT 분석은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기회와 위협요인, 내부조직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 등을 나열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임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자원 및 인프라 분석을 위하여 먼저 SWOT분석의 기본 틀(Framework)을 제시한 후에, 각각의 상황별 대응전략을 설명하고자 함
- 외부환경 분석에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정책의 추진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변수(거시적 차원의 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하게 됨
- 내부환경 분석에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정책의 성과 및 시·군·구별 평생교육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내부변수(미시적 차원의 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함

		외부환경	
		기 회 (O)	위 험 (T)
내부환경	강점 (S)	조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경 요인	조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환경 요인
	약점 (T)	경쟁자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조직 내부 역량	경쟁자와 비교하여 열위에 있는 조직 내부 역량
		SO 측면 대응전략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 (강점활용전략)	ST 측면 대응전략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응전략 (위험대처전략)
		WO 측면 대응전략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전략 (약점보완전략)	WT 측면 대응전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 (생존 및 방어전략)

[그림 IV-1] SWOT분석 기본 틀

*출처 : 201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 p.97

가. 전라남도 평생교육 SWOT 분석

□ 기회요인

- 1) 웰빙에 대한 관심, 지속적 증대
 - 글로벌 케어산업 육성 가능성, 웰빙 산업 활성화 기회 많음.
 - 관광(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 : 관광 및 문화 자원화 가능성 높음
- 2) 지방화 시대 도래로 지역단위 국제 행사 개최 확보
 - 여수 EXPO, 국제농업박람회, 순천만 정원박람회 행사 진행
- 3) 학습도시지정 및 행복학습센터 추가 지정 가능성
 - 기초단체 22곳중 '16년 현재 11곳 지정.
 - 행복학습센터 확대 추진(30개 읍면동 → 40개 읍면동으로 확대)
- 4)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에 “따른 사업 추진 : 61개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14조 5천억원과 8천억원임. 61개 사업 가운데에는 4대 정책과제로 서남권 물류거점 구축 3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15건, 신·재생 에너지 보급기지 조성 7건,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15건 등 포함.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산업을 육성하면서 관광인프라도 구축
- 5)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정책 지속적 시행
 - 지방 중소도시 육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전남 낙후지역에 투입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증가
- 6)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및 체제 개편
 - 정부의 '인재대국' 강조 정책
 -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책임·권한 확대

□ 위협요인

- 1) 행정구역 개편
 - 현행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인 지방행정 체제에서 도를 실질적으로 없애 2단계로 재편,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구를 없애거나 통·폐합해 행정 조직을 슬림화하자는 것이 요지
- 2) 지역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의 정책 영역에 대한 혼란 가중
 - 지역인재육성과 평생학습정책의 차별성 미흡
 - 관련부처 간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협력 미흡, 유사·중복사업 조정기제 미약

3) 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관심 증대

- 바우처 시스템 확대(교육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7개 사업에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인재육성 정책의 경우 성과 계량화가 어려움

□ 강점요인

1) 풍부한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 친환경 이미지

- 깨끗한 자연환경
- 친환경 농업의 발달
- 웰빙지역 이미지

2) 환경적 관광 인프라

- 다도해를 중심으로 개발가능한 서남해안 보유 → 관광산업 개발 잠재력
- 서남해안 다도해 중심의 관광 인프라 구축 진행
- 맛의 고장, 남도 미향의 이미지

3) 향토문화 예술기반

- 지역별 문화예술기반, 문화유적 및 인물(장보고, 이순신 등) 풍부
- 문화예술 관련 장인들 지역 내 다수 활동중

4) 학습사회 기반 조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과 상승효과
- 고등교육 기관 수 상대적 풍부 : 4년제 대학(국립 4개, 사립 5개)이 학생 수 대비 많은편으로 대학중심 평생교육 확대에 유리

5)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센터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속적 성장

□ 약점요인

1) 산업기반 취약

- 부가가치가 낮은 1-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매출액 1000대 기업 포함된 광주·전남지역 비중은 전국 대비 3% 수준

2) 지역 공동체화 및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 지자체간 협력체제 미구축, 사이버체제 미구축
-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효과 창출에 어려움

3) 지역 자생력 미흡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4) 인적자원 부족

- 지속적인 인구 감소 : 2000~2007년 광주·전남지역의 총인구 대비 인구 유출 비율은 전북(10.0%) 다음으로 높은 수준. 전체 유출인구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의 비중도 전남이 41%로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냄.
- 고령인구, 노령화 지수 높음 : 전남은 고령화가 더욱 심해 2030년에 고령 인구가 32.8%에 달해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57%로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됨
- 신 소외계층 확산(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5) 산업인프라 부족

- 문화생태자원이 전국적으로 풍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관광자원화가 매우 미약한 편임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 및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

나. Cross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내부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천연자원과 친환경 이미지 · 환경적 관광 인프라 · 향토문화 예술기반 · 학습사회 기반 조성 ·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 취약 · 지역 공동체화 및 네트워킹 어려움 · 지역 자생력 미흡 · 인적자원 부족 · 산업인프라 부족
기회(Opportunities)	<SO전략>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에 대한 관심 지속 증대 · 지방화 시대, 지역단위 국제행사 개최증대 · 국가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학습도시지정, 행복학습센터 추가지정 ·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정책 ·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및 환경적 인프라를 활용한 웰빙산업 활성화 인재 육성 · 다양한 인재육성 기반(산학연)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인재육성 · 국제행사 및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해설 인력 양성 · 지역 산업과 인재육성 산업의 적극 연계 ·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예산을 활용한 소외지역, 소외계층 대상의 교육강화(노인, 다문화가정 등) · 사회통합 정책을 활용한 전남 지역 가치 교육 · 1,2차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력 육성 · 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위협(Threats)	<ST전략>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개편 · 지역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정책 혼란 가중 · 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관심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내 권역의 특화사업단위로 인재육성 전략 수립 ·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의 통합운영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의 역량 향상 교육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교육 · 전남인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확보 : 향토문화중심 · 지역 내 교육 네트워킹 강화

2. 전라남도 평생교육환경 분석

가. 전라남도청 전담부서 조직·인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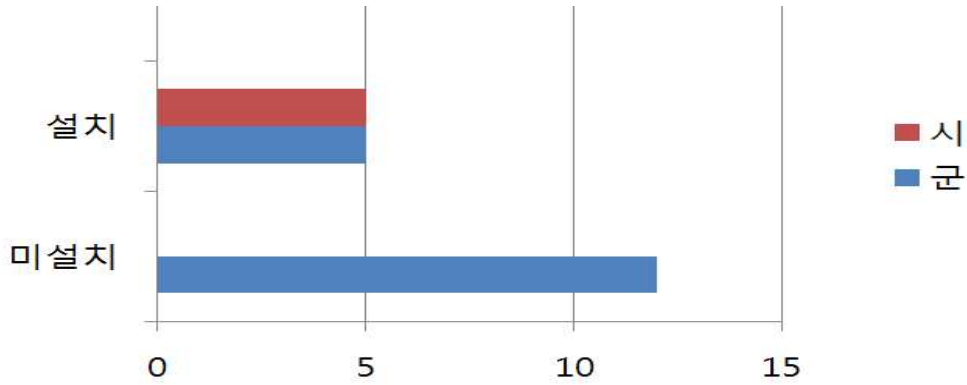
- 전라남도청 전담부서로는 자치행정국내 인재양성과의 평생교육팀을 두고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구조 및 담당업무를 보면 1원장, 1처, 2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 및 전라남도 평생교육 계획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과제 중심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 조직체계(직제) 및 인력 구성 비중으로 볼 때 업무의 효율성 및 성과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구체적인 팀별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IV-1]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팀별 주요업무

부서	인원			담당업무
	A+B	평생교육사 (A)	기타 (B)	
원장	1명	명	1명	사업 총괄
사무처장	1명	명	1명	사업 총괄
기획운영팀	3명	1명	2명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소식지 발행 평생학습 강사은행제 운영 평생교육 워크숍 실시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평생교육 DB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개발지원팀	2명	1명	1명	평생교육 각종 공모사업 추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학습축제 추진 평생학습 상담·실습 운영 학습동아리 발굴·육성 및 지원

□ 시·군 조직 및 전담부서

- 시 단위는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하여 5개시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군 단위는 17개 군 중 5개 군만 설치되어 있음



[그림 IV-2]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전담조직 설치 현황

※ 출처 : 2016년 전남평생교육협의회 자료 재구성

□ 평생학습도시 현황

- 평생학습도시 지정(11개 시군), 평생학습관 설치(5개 시군) 등

[표IV-2]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구분	기초단체수	계	지정연도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계	227	136	3	3	5	8	14	24	19	6	8	28	11	7
전남	22	11	-	-	순천시	목포시 (신안·무안)	-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	담양군	화순군
서울	25	14	-	-	-	관악구	양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인천	10	5	-	-	연수구	-	부평구	남구	-	남동구		-	서구	

※ '08~'10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출처 : 2016년 전남평생교육협의회 자료

나. 평생교육 기관 단체 현황

- 2014년 기준 전남지역 평생교육관련 기관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기관 중 목포가 35개 (15.6%)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남
- 장성이 3개(1.3%)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냄
- 전남지역 전체적으로 22개의 시·군에서 225개의 기관이 분포됨

[표IV-3] 지역별 평생교육 기관

구분	빈도(기관)	비율(%)
목 포	35	15.6
순 천	31	13.8
여 수	28	12.4
광 양	23	10.2
무 안	11	4.9
담 양	9	4.0
나 주	8	3.6
보 성	8	3.6
함 평	7	3.1
장 흥	7	3.1
해 남	6	2.7
영 압	6	2.7
완 도	6	2.7
곡 성	6	2.7
신 안	5	2.2
고 흥	5	2.2
강 진	5	2.2
구 례	4	1.8
진 도	4	1.8
화 순	4	1.8
영 광	4	1.8
장 성	3	1.3
합 계	225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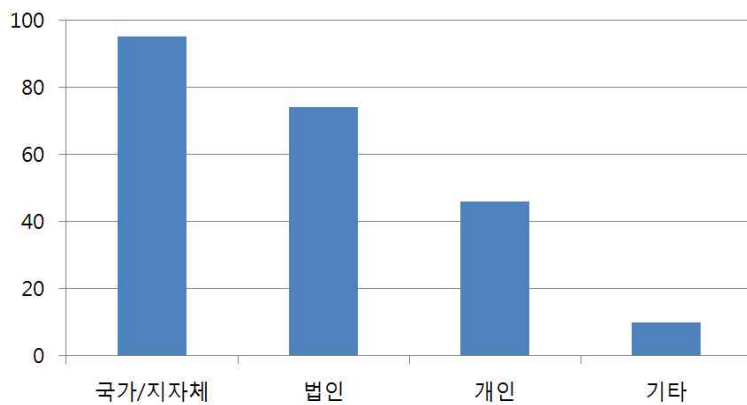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관’이 13.3%(3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훈련시설’ 11.1%(25개), ‘도서관’ 10.2%(23개) 순으로 나타남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0.4%(1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1.8%(4개)이 가장 적은 순으로 나타남

[표IV-4]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기관

구분	빈도(기관)	비율(%)
복지관	30	13.3
직업훈련시설	25	11.1
도서관	23	10.2
평생교육 운영학교	16	7.1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16	7.1
문화원	12	5.3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10	4.4
박물관·미술관	9	4.0
청소년시설	7	3.1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6	2.7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6	2.7
평생학습관	6	2.7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5	2.2
여성 관련 시설	5	2.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4	1.8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1	0.4
기타시설	44	19.6
합 계	225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31

- 평생교육 기관의 설립주체를 보면, 전체 기관 중에서 ‘국가·지자체’가 42.2%(9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 32.9%(74개), ‘개인’ 20.4%(46개) 순으로 나타남



[그림IV-3] 설립 주체별 기관 현황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34

- 평생교육 기관의 지역별 설립주체 현황을 보면, 국가·지자체는 순천이 12개 (12.6%), 법인은 목포가 14개(18.9%), 개인은 순천·여수가 각각 9개 (19.6%) 등으로 설립주체별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IV-5] 지역별 설립주체 현황

[단위 : 빈도(%)]

구분	설립주체				전체
	국가·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순천	12(12.6)	8(10.8)	9(19.6)	2(20.0)	31(13.8)
여수	11(11.6)	7(9.5)	9(19.6)	1(10.0)	28(12.4)
나주	3(3.2)	3(4.1)	1(2.2)	1(10.0)	8(3.6)
목포	11(11.6)	14(18.9)	8(17.4)	2(20.0)	35(15.6)
광양	7(7.4)	8(10.8)	7(15.2)		23(10.2)
무안	4(4.2)	7(9.5)			11(4.9)
구례	2(2.1)	1(1.4)	1(2.2)		4(1.8)
진도	2(2.1)	2(2.7)			4(1.8)
보성	4(4.2)	4(5.4)			8(3.6)
해남	4(4.2)	2(2.7)			6(2.7)
함평	4(4.2)	2(2.7)	1(2.2)		7(3.1)
장성	2(2.1)	1(1.4)			3(1.3)
영암	3(3.2)	2(2.7)		1(10.0)	6(2.7)
완도	2(2.1)	4(5.4)			6(2.7)
곡성	5(5.3)	1(1.4)			6(2.7)
장흥	5(5.3)		2(4.3)		7(3.1)
신안	3(3.2)	2(2.7)			5(2.2)
고흥	1(1.1)	1(1.4)	3(6.5)		5(2.2)
강진	3(3.2)	2(2.7)			5(2.2)
화순	2(2.1)	1(1.4)	1(2.2)		4(1.8)
담양	4(4.2)	2(2.7)	3(6.5)		9(4.0)
영광	1(1.1)		1(2.2)	2(20.0)	4(1.8)
합 계	95(100.0)	74(100.0)	46(100.0)	10(100.0)	225(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35

다. 전남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 주력하고 있는 교육영역은 ‘문화예술교육’ > ‘인문교양교육’ > ‘직업능력교육’ > ‘기초문해교육’ > ‘학력보완교육’ 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각종 레저스포츠, 요리, 사진, 공예, 연극, 노래, 영화 등)에 주력함

[표IV-6] 주력 교육영역

[단위 : 빈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종합순위
문화예술교육	98(43.8)	40(21.5)	21(13.5)	395(32.9)	1
인문교양교육	37(16.5)	76(40.9)	37(23.9)	300(25.0)	2
직업능력교육	38(17.0)	32(17.2)	52(33.5)	230(19.2)	3
기초문해교육	27(12.1)	22(11.8)	16(10.3)	141(11.8)	4
학력보완교육	3(1.3)	4(2.2)	4(2.6)	21(1.8)	7
시민참여교육	6(2.7)	7(3.8)	19(12.3)	51(4.3)	6
기 타	15(6.7)	5(2.7)	6(3.9)	61(5.1)	5
합 계	224(100.0)	186(100.0)	155(100.0)	1,199(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48

1) 기초문해 프로그램

- 기초문해 프로그램으로는 내국인한글문해는 프로그램운영 3.5개, 참여자 240.1명, 운영기간 10.2월, 다문화한글문해는 프로그램운영 3.6개, 참여자 49.7명, 운영기간 9.8월, 한글생활문해는 프로그램운영 1.9개, 참여자 25.7명, 운영기간 11.5월로 나타남

[표IV-7] 기초문해 프로그램

구 분	빈도(기관)	평균
내국인한글문해	프로그램운영수(개)	3.5
	전체참여자수(명)	240.1
	평균운영기간(월)	10.2
다문화한글문해	프로그램운영수(개)	3.6
	전체참여자수(명)	49.7
	평균운영기간(월)	9.8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운영수(개)	1.9
	전체참여자수(명)	25.7
	평균운영기간(월)	11.5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51

2) 학력보완 프로그램

- 학력보완 프로그램으로 초등학력보완은 프로그램운영 1.9개, 참여자 667.7명, 운영기간 7.4월, 중등학력보완은 프로그램운영 1.0개, 참여자 15.6명, 운영기간 10.6월, 고등학력보완은 프로그램운영 15.2개, 참여자 297.5명, 운영기간 6.0월로 나타남

[표IV-8] 학력보완 프로그램

구 분		빈도(기관)	평균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운영수(개)	22	1.9
	전체참여자수(명)	20	667.7
	평균운영기간(월)	22	7.4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운영수(개)	3	1.0
	전체참여자수(명)	3	15.6
	평균운영기간(월)	3	10.6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운영수(개)	4	15.2
	전체참여자수(명)	4	297.5
	평균운영기간(월)	4	6.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51

3) 직업능력 프로그램

- 직업능력 프로그램으로 직업준비는 프로그램운영 3.8개, 참여자 79.9명, 운영기간 7.0월, 자격인증은 프로그램운영 9.8개, 참여자 261.4명, 운영기간 4.5월, 현직직무역량은 프로그램운영 4.6개, 참여자 228.4명, 운영기간 3.5월로 나타남

[표IV-9] 직업능력 프로그램

구 분		빈도(기관)	평균
직업준비	프로그램운영수(개)	45	3.8
	전체참여자수(명)	44	79.9
	평균운영기간(월)	36	7.0
자격인증	프로그램운영수(개)	47	9.8
	전체참여자수(명)	46	261.4
	평균운영기간(월)	46	4.5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운영수(개)	17	4.6
	전체참여자수(명)	16	228.4
	평균운영기간(월)	14	3.5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52

4) 문화예술 프로그램

-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레저생활스포츠는 프로그램운영 4.7개, 참여자 213.6명, 운영기간 6.9월, 생활문화예술은 프로그램운영 11.2개, 참여자 700.7명, 운영기간 5.6월, 문화예술향상은 프로그램운영 6.8개, 참여자 503.4명, 운영기간 10.3월로 나타남

[표IV-10]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 분		빈도(기관)	평균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운영수(개)	63	4.7
	전체참여자수(명)	56	213.6
	평균운영기간(월)	58	6.9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수(개)	85	11.2
	전체참여자수(명)	85	700.7
	평균운영기간(월)	89	5.6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운영수(개)	81	6.8
	전체참여자수(명)	82	503.4
	평균운영기간(월)	77	10.3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52

5) 인문교양 프로그램

-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건강심성은 프로그램운영 40.1개, 참여자 384.1명, 운영기간 8.9월, 기능적 소양은 프로그램운영 4.6개, 참여자 406.6명, 운영기간 6.6월, 인문학적 교양은 프로그램운영 5.4개, 참여자 347.4명, 운영기간 5.9월로 나타남

[표IV-11] 인문교양 프로그램

구 분		빈도(기관)	평균
건강심성	프로그램운영수(개)	36	40.1
	전체참여자수(명)	33	384.1
	평균운영기간(월)	31	8.9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운영수(개)	38	4.6
	전체참여자수(명)	34	406.6
	평균운영기간(월)	33	6.6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운영수(개)	35	5.4
	전체참여자수(명)	29	347.4
	평균운영기간(월)	31	5.9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53

6) 시민참여 프로그램

-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시민책무성은 프로그램운영 5.5개, 참여자 56.1명, 운영기간 5.7월, 시민리더역량은 프로그램운영 1.1개, 참여자 196.8명, 운영기간 8.0월, 인문학적 교양은 프로그램운영 10.7개, 참여자 315.3명, 운영기간 10.3월로 나타남

[표IV-12]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 분		빈도(기관)	평균
시민책무성	프로그램운영수(개)	14	5.5
	전체참여자수(명)	13	56.1
	평균운영기간(월)	11	5.7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운영수(개)	7	1.1
	전체참여자수(명)	6	196.8
	평균운영기간(월)	5	8.0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운영수(개)	15	10.7
	전체참여자수(명)	13	315.3
	평균운영기간(월)	14	10.3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53

라. 도민 평생교육 참여 실태

□ 학습자 일반현황

1) 성별

- 평생교육 학습자 참여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전체 1,273명임, 이 중에서 남성은 21.7%(276명), 여성은 78.3%(99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표IV-13] 성별 참여자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남성	276	21.7
여성	997	78.3
합계	1,273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73

2) 연령

- 평생교육 학습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연령은 40대가 28.0%(3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27.7%(351명), 50대 16.7%(211명), 20대 15.6%(198명), 60대 8.1%(103명), 70대 3.0%(38명), 10대 0.9%(11명) 등으로 나타남

[표IV-14] 연령별 참여자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10 대	11	0.9
20 대	198	15.6
30 대	351	27.7
40 대	355	28.0
50 대	211	16.7
60 대	103	8.1
70 대	38	3.0
합계	1,267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74

3) 거주 지역

- 평생교육 학습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거주지는 목포가 20.4%(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이 1.0%(12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IV-15] 거주지역별 참여자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순 천	119	9.9
여 수	83	6.9
나 주	28	2.3
목 포	247	20.4
광 양	118	9.8
무 안	83	6.9
구 례	16	1.3
진 도	24	2.0
보 성	28	2.3
해 남	55	4.6
함 평	32	2.6
장 성	25	2.1
영 압	33	2.7
완 도	92	7.6
곡 성	30	2.5
장 흥	39	3.2
신 안	35	2.9
고 흥	16	1.3
강 진	29	2.4
화 순	12	1.0
담 양	33	2.7
기 타	21	2.6
합계	1,198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75

4) 학력

- 평생교육 학습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58.2%(7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졸업 27.6%(350명), 대학원졸업 5.9%(75명), 중학교졸업 4.3%(55명), 초등학교졸업 이하 3.9%(49명)등으로 나타남

[표IV-16] 학력별 참여자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초등학교 졸업 이하	49	3.9
중학교 졸업	55	4.3
고등학교 졸업	350	27.6
대학교 졸업	737	58.2
대학원 졸업	75	6.0
합계	1,266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74

5) 결혼

- 평생교육 학습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결혼여부는 기혼 74.4%(940명), 미혼 21.4%(270명), 기타 4.3%(54명)등으로 나타남

[표IV-17] 결혼여부별 참여자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기혼	940	74.4
미혼	270	21.4
기타	54	4.2
합계	1,264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74

6) 종사 직종

- 평생교육 학습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종사 직종을 보면 전업주부가 32.2%(406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 16.1%(203명), 관리·사무직 11.5%(145명), 자영업 8.8%(111명) 등으로 나타남

[표IV-18] 종사직종별 참여자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농축수산업	67	5.3
자영업	111	8.8
전문직	203	16.1
관리/사무직	145	11.5
생산기능직	4	0.3
판매/서비스직	27	2.1
전업주부	406	32.2
학생	92	7.3
단순노무직	16	1.3
은퇴자	26	2.1
구직자	14	1.1
공무원	87	6.9
기타	64	5.0
합계	1,262	100.0

출처 : 2014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p.74

3.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관계자 요구 분석

가. 설문지 구성 및 참여자 분석

□ 설문 조사 시기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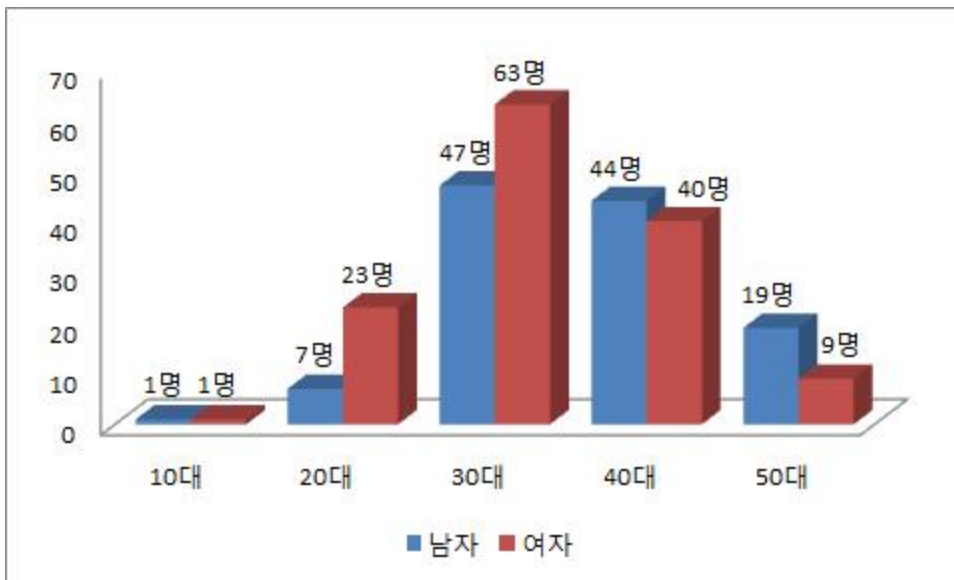
설문기간	2016년 4월 11일 ~ 4월 19일
설문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공무원 및 평생교육사 등
설문인원	254명

- 설문기간은 일주일 이상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평생교육 관련분야 공무원,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50명 이상 참여함

□ 대상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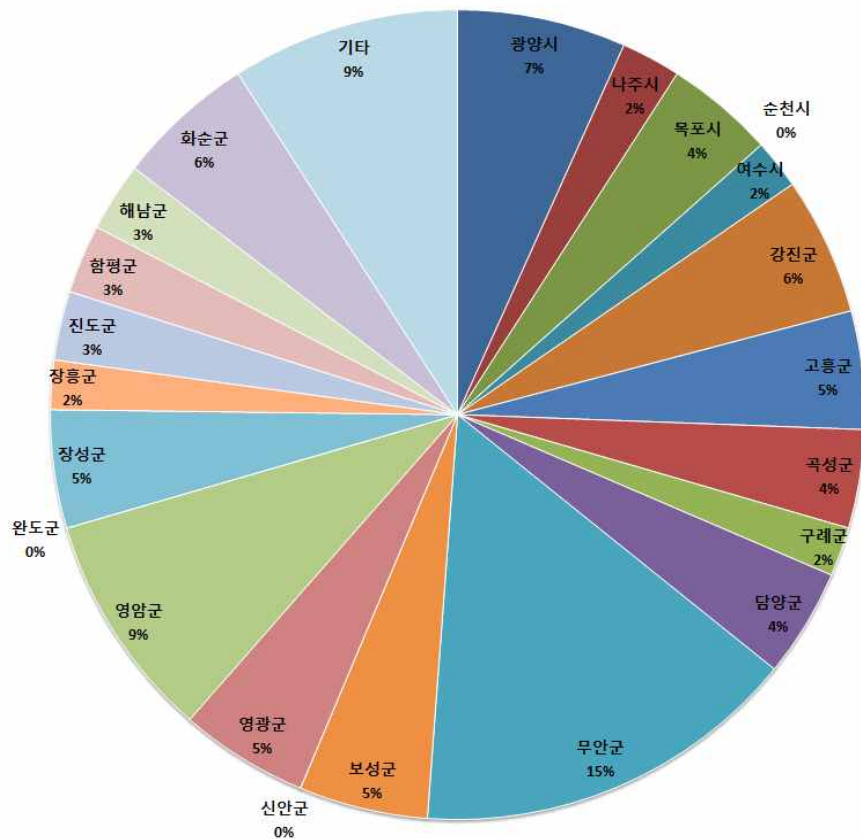
구분	연령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성별	남자	빈도 1	7	47	44	19	118
	%	0.8%	5.9%	39.8%	37.3%	16.1%	100.0%
성별	여자	빈도 1	23	63	40	9	136
	%	0.7%	16.9%	46.3%	29.4%	6.6%	100.0%
전체	빈도	2	30	110	84	28	254
	%	0.8%	11.9%	43.3%	32.9%	11.1%	100.0%



- 총 254명의 참여자 중 남자 118명, 여자 136명이 각각 참여하였고 세대별로는 30대가 110명, 40대 84명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구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빈도	17 6.7%	6 2.4%	11 4.3%	0 0.0%	5 2.0%	14 5.5%	12 4.7%	10 4.0%	5 2.0%	11 4.3%	39 15.4%	13 5.1%
구분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기타	합계
빈도	0 0.0%	13 5.1%	23 9.1%	0 0.0%	12 4.7%	5 2.0%	7 2.8%	7 2.8%	7 2.8%	14 5.5%	23 9.1%	254 100%



- 직종별

구분		업무경력					전체
		1년 미만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 이상	
평생교육업무 담당자	빈도	10	23	19	7	19	78
	%	12.8%	29.5%	24.4%	9.0%	24.4%	100.0%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	빈도	11	30	32	28	45	146
	%	7.5%	20.5%	21.9%	19.2%	30.8%	100.0%
전체	빈도	21	53	51	35	64	224
	%	9.4%	23.7%	22.8%	15.6%	2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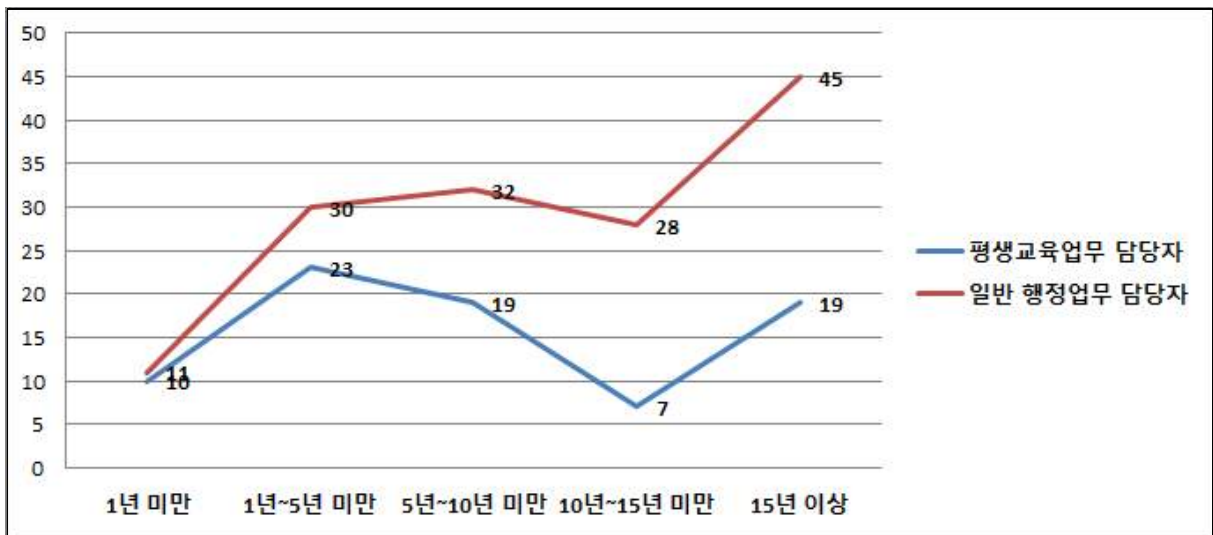
평생교육업무 담당자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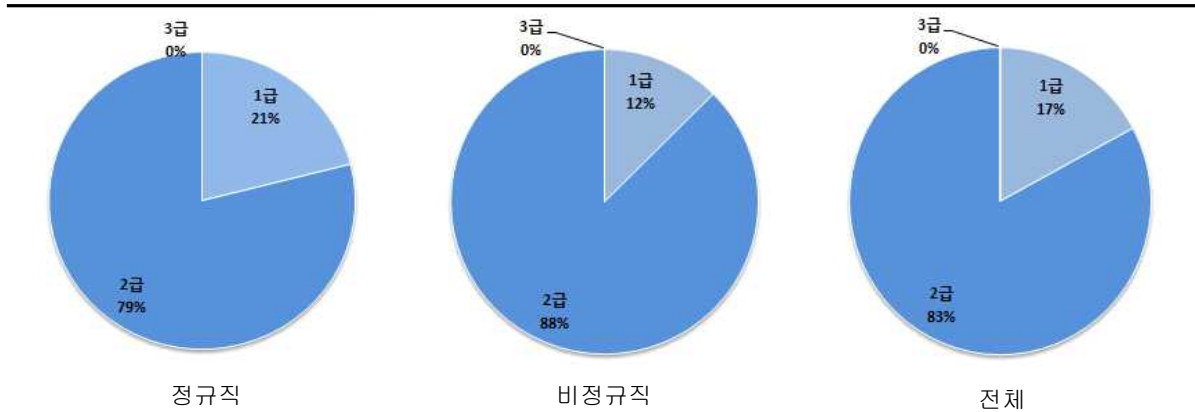
전체



- 직종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 146명, 평생교육업무 담당자 78명, 무응답 30명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업무경력 15년이상 64명, 1~5년 미만 53명, 5~10년 미만 51명 순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업무 담당자 업무경력은 1~5년 미만 23명, 5~10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각각 19명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 업무경력은 15년 이상 45명, 5~10년 미만 32명, 1~5년 미만 30명 순으로 나타남
- 업무경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업무 담당자의 비율이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업무경력이 5년 미만부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와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의 비율 격차가 좁혀져 가고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자격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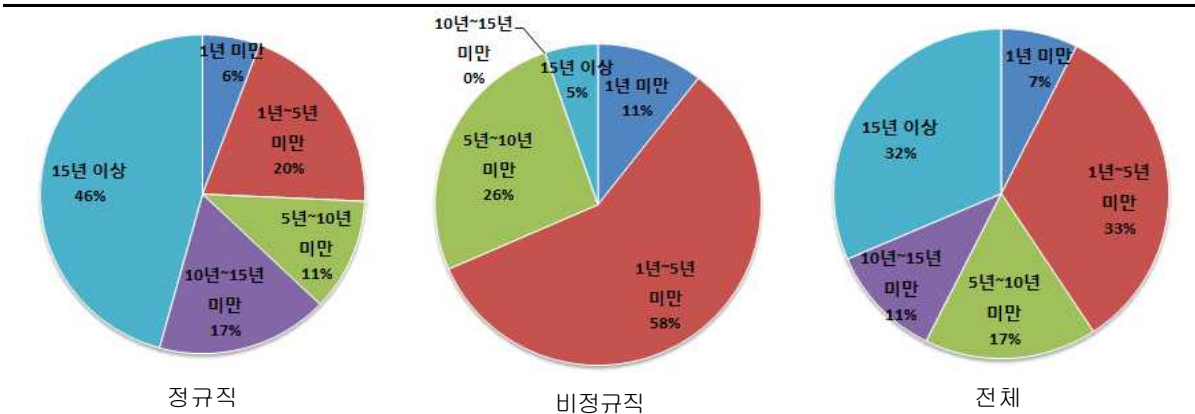
구분			평생교육사 자격급수			전체
			1급	2급	3급	
평생교육사	정규직	빈도 %	4 21.1%	15 78.9%	0 0.0%	19 100.0%
	비정규직	빈도 %	2 12.5%	14 87.5%	0 0.0%	16 100.0%
전체		빈도 %	6 17.1%	29 82.9%	0 0.0%	35 100.0%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유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35명의 응답자 중 2급 29명, 1급 6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남

- 업무경력

구분			업무경력					전체
			1년 미만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 이상	
평생교육사	정규직	빈도 %	2 5.7%	7 20.0%	4 11.4%	6 17.1%	16 45.7%	35 100.0%
	비정규직	빈도 %	2 10.5%	11 57.9%	5 26.3%	0 .0%	1 5.3%	19 100.0%
전체		빈도 %	4 7.4%	18 33.3%	9 16.7%	6 11.1%	17 31.5%	54 100.0%



- 고용형태로 보면 54명의 응답자 중 35명이 정규직 19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였음

나 . 요구 조사 분석 결과

□ 연구결과

① 평생교육의 필요성

- 매우 필요하다 161명(63.4%)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 82명(32.3%)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5.7%의 응답을 보임

- 전체 응답자 중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1. 귀하는 생활 속에서 평생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0	0	11	82	161	254
	%	0.0%	0.0%	4.3%	32.3%	6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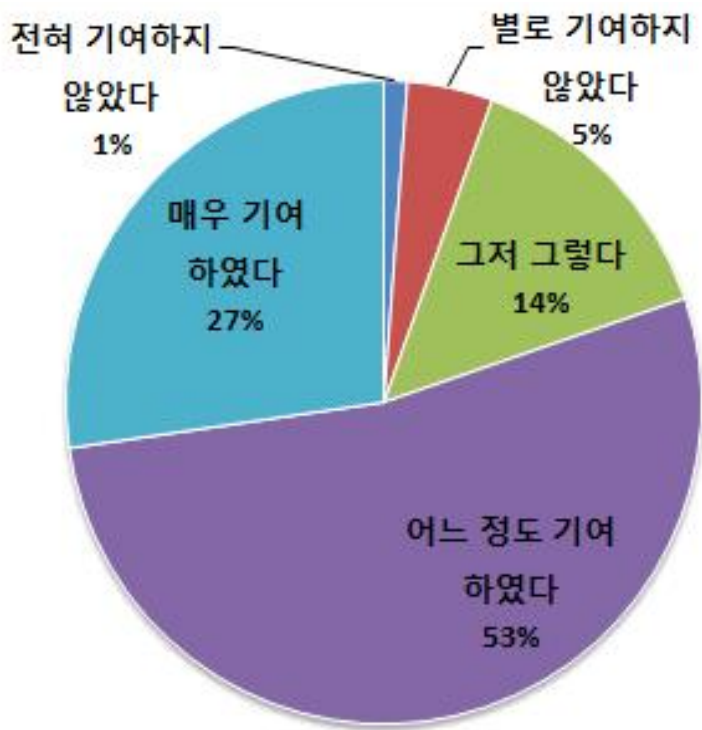


②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평생학습과 지역발전 기여

-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134명(53%), 매우 기여하였다 69명(27.3%) 순으로 나타났으며 80.3%의 높은 응답을 보임

- 평생학습 도시 지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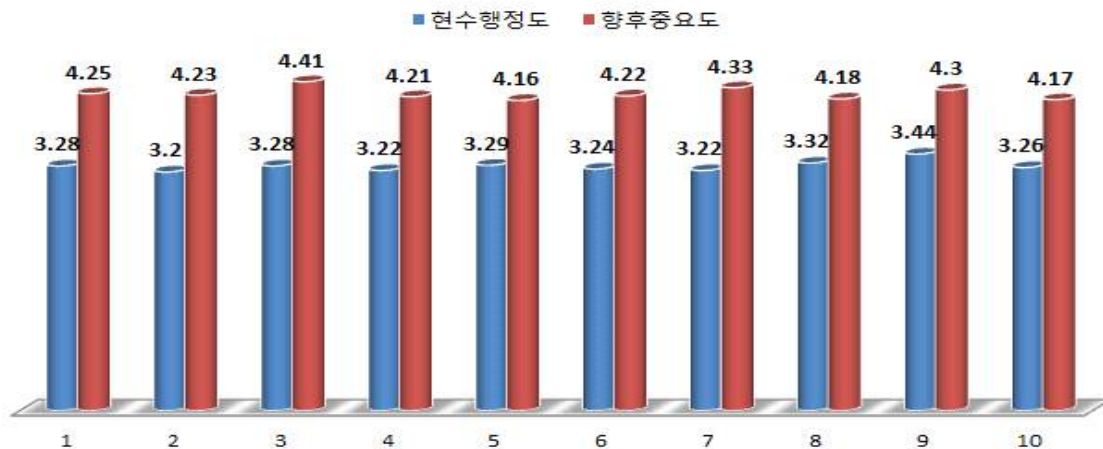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합계
2.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지역민 대상 평생학습과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3	11	36	134	69	253
	%	1.2%	4.3%	14.2%	53.0%	27.3%	100.0%



③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의 현 수행정도와 향후 중요도

- 10개의 질문 모두 현 수행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향후 중요도는 5점 척도중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향후 중요도 중에서는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운영',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자질 향상 교육',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평생교육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현 수행 정도	3.28	244	.820	.053
	향후 중요도	4.25	244	.655	.042
2.우리 지역의 평생교육정책 연구·개발·평가	현 수행 정도	3.20	245	.838	.054
	향후 중요도	4.23	245	.724	.046
3.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운영	현 수행 정도	3.28	245	.842	.054
	향후 중요도	4.41	245	.699	.045
4.전라남도 평생교육 종합 정보망 구축과 활용	현 수행 정도	3.22	243	.793	.051
	향후 중요도	4.21	243	.701	.045
5.중앙정부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 사업 안내와 지원	현 수행 정도	3.29	244	.831	.053
	향후 중요도	4.16	244	.715	.046
6.평생교육관련 DB 구축	현 수행 정도	3.24	245	.821	.052
	향후 중요도	4.22	245	.702	.045
7.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자질 향상 교육	현 수행 정도	3.22	244	.815	.052
	향후 중요도	4.33	244	.667	.043
8.시·군 평생교육기관 사업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현 수행 정도	3.32	245	.853	.054
	향후 중요도	4.18	245	.730	.047
9.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확대	현 수행 정도	3.44	245	.830	.053
	향후 중요도	4.30	245	.705	.045
10.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현 수행 정도	3.26	245	.772	.049
	향후 중요도	4.17	245	.754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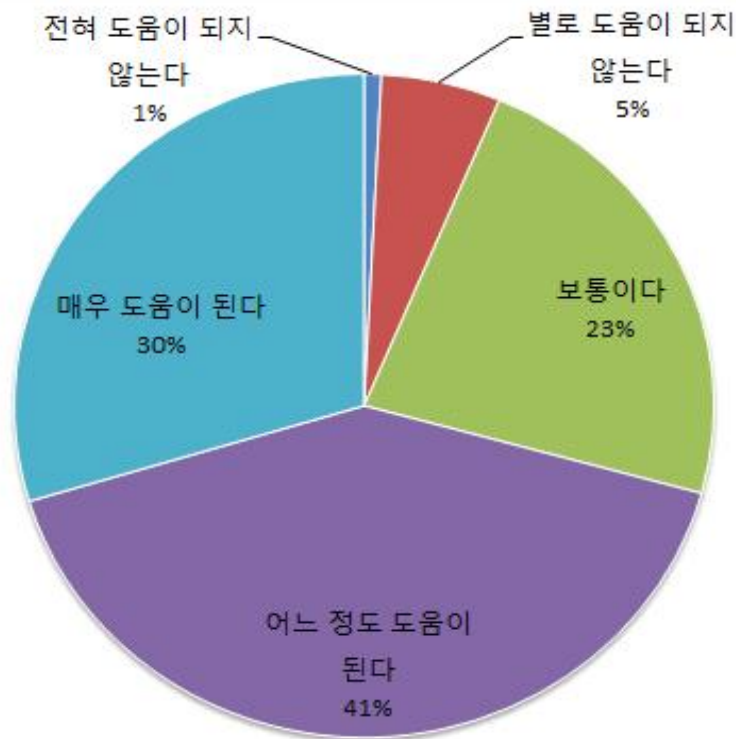


④ 독립법인화 도움 정도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104명(41.1%), 매우 도움이 된다 75명(29.6%), 보통이다 58명(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7%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합계
4.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 발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	14	58	104	75	253
	% 0.8%	5.5%	22.9%	41.1%	2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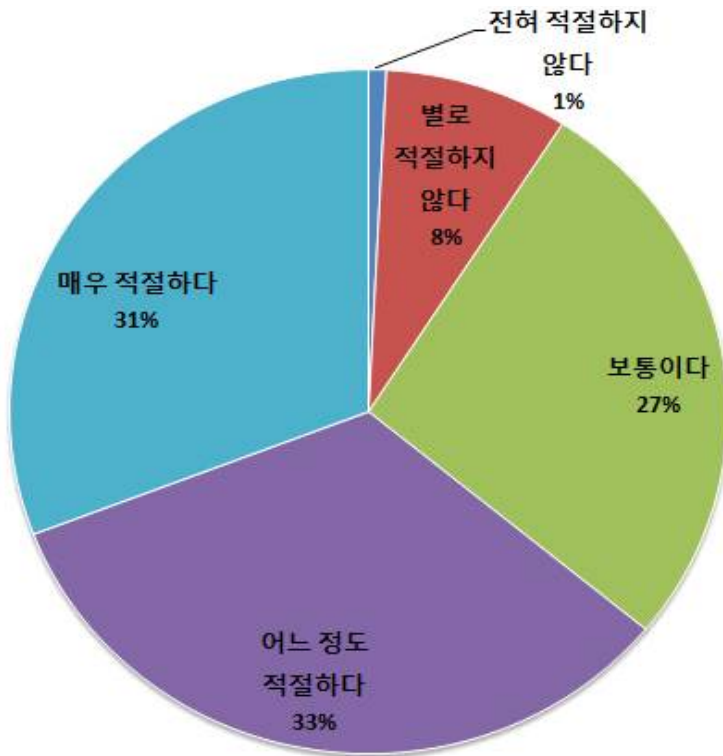


⑤ 독립법인 형태 운영 적절성

- 독립법인형태 운영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 84명(33.2%), 매우 적절하다 78명(30.8%)로 64%의 응답을 보임

- 독립법인형태 운영의 적절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23명의 응답을 제외하고는 적절하다는 응답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은 적절하다고 나타남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다	별로 적절하 지 않다	보통이 다	어느 정도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합계
5.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확보된 신설 독립재단 법인형태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	21	68	84	78	253
	%	0.8%	8.3%	26.9%	33.2%	3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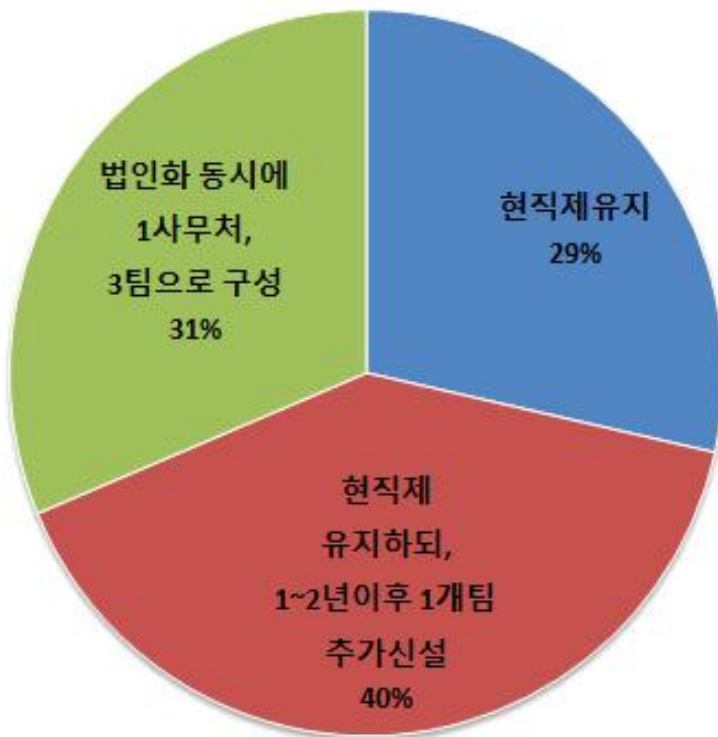


⑥ 직제 구성

- 직제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직제 유지하되 추후 1개팀 신설 100명(40.2%)’, ‘법인화 동시 1사무처, 3팀구성 78명(31.3%)’ 응답을 보임

- 현 직제 유지 후 1개팀 추가신설과 법인화 동시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분		현직제 유지	현직제 유지하되, 1~2년이후 1개팀 추가신설	법인화 동시에 1사무처, 3팀으로 구성	합계
6.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 확보가 담보된 법인화 추진시, 직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71	100	78	249
	%	28.5%	40.2%	3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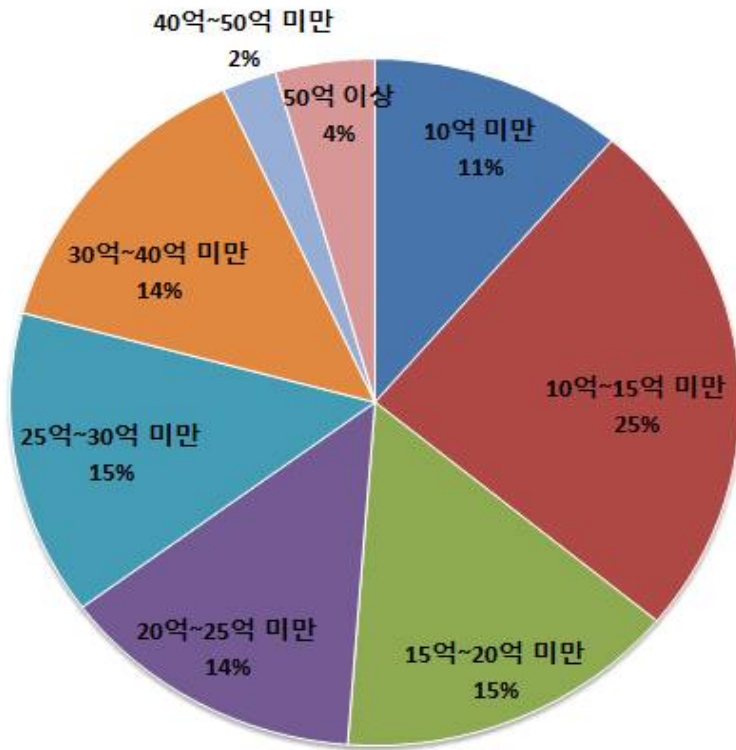


⑦ 연간 예산

- 진흥원 연간 예산과 관련해서 10억~15억미만 62명(24.8%), 15억~20억미만 38명(15.2%), 25억~30억미만 36명(14.4%)의 순으로 응답을 보임

- 예산은 10억부터 40억 까지 골고루 나타남

구분	10억 미만	10억~15억 미만	15억~20억 미만	20억~25억 미만	25억~30억 미만	30억~40억 미만	4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합계
7. 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과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독립법인 전환에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28	62	38	34	36	35	6	11	250
	% 11.2%	24.8%	15.2%	13.6%	14.4%	14.0%	2.4%	4.4%	100.0%



⑧ 진흥원 소재지

- 진흥원의 소재지로는 현 위치 유지후 독립공간마련 90명(36%), 현 위치 유지 81명 (32.4%), 별도 독립공간 마련 79명(31.6%) 순으로 대부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소재지는 현 위치 유지와 별도의 독립공간 마련이 매우 비등하게 나타남

구분		현 위치 유지	현 위치 유지 후, 독립공간마련	독립법인 전환시 별도의 독립공간 마련	합계
8.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원이 독립법인화 될 경우, 조직과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사무소 소재지로 어디가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빈도	81	90	79	250
	%	32.4%	36.0%	31.6%	100.0%



㉑ 서술의견

구분		
5-1 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확보된 시설 독립재단 법인형태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운영이 필요함	6명
	기타 - 진흥원으로 공무원 교류 인사 해당되는(관련있는)국 별로 1명씩 -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운영프로그램 등이 중복되는 과정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예)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원, 읍사무소, 농협문화센터) =>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의견제시가 어렵습니다.	3명

구분		
6-1 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 확보가 담보된 법인화 추진시, 직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제 규모 즉시 확대	9명
	추후 확대	2명
	기타 - 조직규모 설문은 일반인들에게는 조사가 어려움	1명

구분		
10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고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독립재단 필요	15명
	기관의 홍보와 사업의 활성화 필요	8명
	소재지 위치조정	2명
	기타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조사	1명

-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서술식 의견이 6명, 직제 규모에 관하여는 법인화 추진하며 즉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명, 또한 전남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필요하다는 의견이 15명으로 나타남

1. 타당성 검토의 개요

가.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역할 필요

- 「평생교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재단법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근거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의하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대상 사업으로는 ①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의 효율화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함에 따라 부실 운영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화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나. 타당성 검토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V-1] 타당성 검토 기준

구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타당성 검토 조항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7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결과 공개 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6조제3항)에서는 적정성 검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V-2] 설립 타당성 검토 항목(제6조제3항 관련)

분야	적정성 검토 항목
사업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민간 경영참여 곤란성,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 환경훼손 여부)
	사업의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고려사항별 분석결과에 대한 적정성
	기업성 기준(경상수지 5할이상 여부) 적합성 및 그 산출근거
	유사 중복 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

사업별 수지분석	향후 5년간 수익흐름 추정 및 분석
조직 및 인력운영	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충족 여부 등
주민복지 증진	기관 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충족 여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적정자본금 분석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근거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수익처분가능성, 행정재산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기관시설에 따른 출연 및 예산지원규모의 적정성
	향후 수지 분석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저해 관계 등

□ 타당성 검토 항목

- 사업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별 수지분석(B/C분석)
 -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 확보
 - 비용과 편익의 비교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분석
 -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편익비용비(BCR) 분석
-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 다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하여 최적안 선정
 -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 직급별 직종별 충원계획 수립
 -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검토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적정 자본금규모 분석
 - 사업에 필요한 적정 출자 출연금 규모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조달방안 분석

다. 타당성 검토 절차 및 방법

□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

- 1단계: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검토(타당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 2단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 3단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심의위원회의 설립 여부 심의

□ 설립 타당성 검토 방법¹⁾

- 사업의 적정성 분야에서는 사업의 공공성, 지속성, 수익성, 그리고 유사 중복 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항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 환경훼손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사업별 수지분석 분야에서는 B/C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수익흐름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분담 방식 또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토대로 한 재무 분석으로 대체가 가능함
- 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에서는 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적정 소요인력의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기관 신설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야에서는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적정자본금 분석 분야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 및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향후 수지 분석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저해 가능성과 예산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 기관 심의 위원회를 두어야 함
-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부서 공무원 2인, ③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지방의회가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2인 등으로 구성함
- 운영심의위원회는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담

1) 안전행정부(2013).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및 설립타당성 표준모델 개발.

토결과, ④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규모, ⑤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운영계획, ⑥ 기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유관기관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7조)

[표 V-4] 설립 전 협의 생략 기준

구분	출자기관	출연기관
광역자치단체	5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기초자치단체	3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

□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
-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이 중요한 통제수단이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의회설명회가 완료된 후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가 의결되어 이송되어 오면 재의여부를 검토하여 공포 및 시행함

라. 타당성 검토 분석 틀

□ 법적 타당성

- 법적 타당성은 평생교육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이를 통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할 수 있음
- 특히 상위법 상에서 기관설립의 주체를 지역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와 설립 형태 및 운영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이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판단근거로 설정함

□ 정책적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임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기관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예측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
 - 첫째, 국가적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 둘째, 시정방향과의 연계성 여부
 - 셋째, 공공성 확보 및 책임성 지속 여부

□ 재무적 타당성

-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사회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추진주체의 입장에서 소요예산의 규모를 예측하는 단계임
- 즉, 재무적 타당성은 교육수요를 추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출자 출연금 규모를 도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분석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최적의 설립형태를 도출함

□ 실행 타당성

- 실행 타당성 검토는 기관 설립 후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직구조 설계 및 인력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 다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을 도출함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 소요인력 산출, 직급별 직종별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인건비 지급 기준 및 경상경비 등을 검토함
- 뿐만 아니라 실행 타당성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주민복지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

-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2. 법적 타당성 분석

가. 법인 설립 관련 법률

□ 민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조항

- 평생교육법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평생교육법 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평생교육법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형태

- 평생교육법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진흥원의 설립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규정함
 - 진흥원의 법인화는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은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할 수 있는 형태임
-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이 조항에 의거, 전라남도지사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2항
 - 이 조항에서는 시·도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함

다.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추진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임무)
 -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전라남도 소속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설치)
 -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음(개정 2013.2.20)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업무)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 (조직 및 시설)

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추진의 법적 타당성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형태 전환 계획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 9월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2013년 11월 수립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4~2018)에 의거, 2013년 12월 전라남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2014년 3월 19일 지정·위탁 운영으로 개원하였음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후 독립재단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음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독립 판단 기준

- 그동안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 등 독립재단으로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독립의 판단기준 및 관련근거에 의거,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재단독립은 충분한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양적·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액 및 확충하여 독립법인화의 적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V-5]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재단독립의 판단 기준

독립성 판단 기준	예/아니오	관련 근거
- 평생교육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
- 평생교육진흥 관련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는가?	예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 평생교육진흥사업 예산 규모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 총 예산의 50%이상 인가?	예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
- 평생교육진흥사업 전담인력이 부서(사업소) 총정원의 50%이상인가?	예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 (산출식 : (7/7)*100= 100%)

※ 출처: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년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신규) 지원 신청서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국가적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국정과제 72)

- 평생학습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존속 및 경쟁력 강화 필수전략으로써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예: 영국(Skills for Life), 핀란드(The Joy of Learning), 싱가포르(Manpower 21))
-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창의교육 전략과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그림 V-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출처: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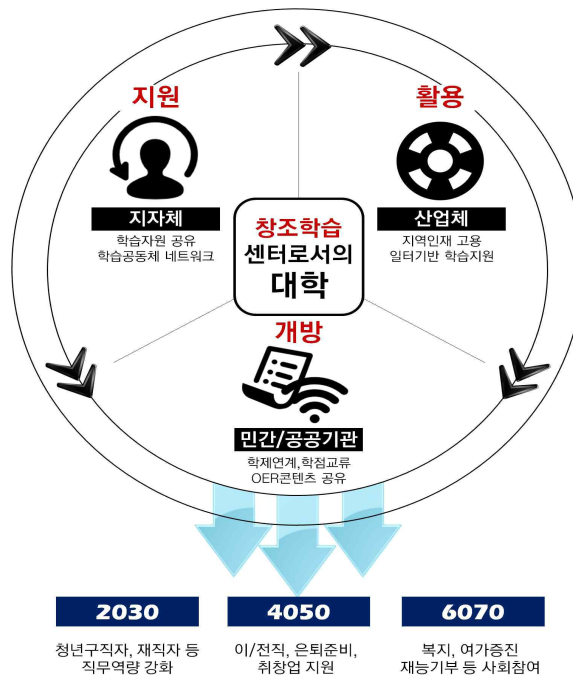
-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은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40.4%)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5개의 정책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②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 ③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하여 평생학습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평생학습 지원
- ④ 일-학습복지-문화의 연계를 통한 주민 주도의 마을학습공동체 구축 기반 확대
- ⑤ 생애단계별 계층별 학습기회 확대 및 교육-고용-복지, 문화 연계 평생학습체제 편성

□ 창조학습생태계의 지원자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창조학습생태계는 학습을 통해 유발된 성과가 지역의 발전과 연계되는 모델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두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창조적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한 창조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임
- 이러한 창조학습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기관 간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임
- 따라서 기관별 프로그램, 담당 인력, 학습정보 등을 연계 협력 교환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춤형 평생교육의 제공이 필요함
- 특히 지자체는 지역대학, 교육시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지원 및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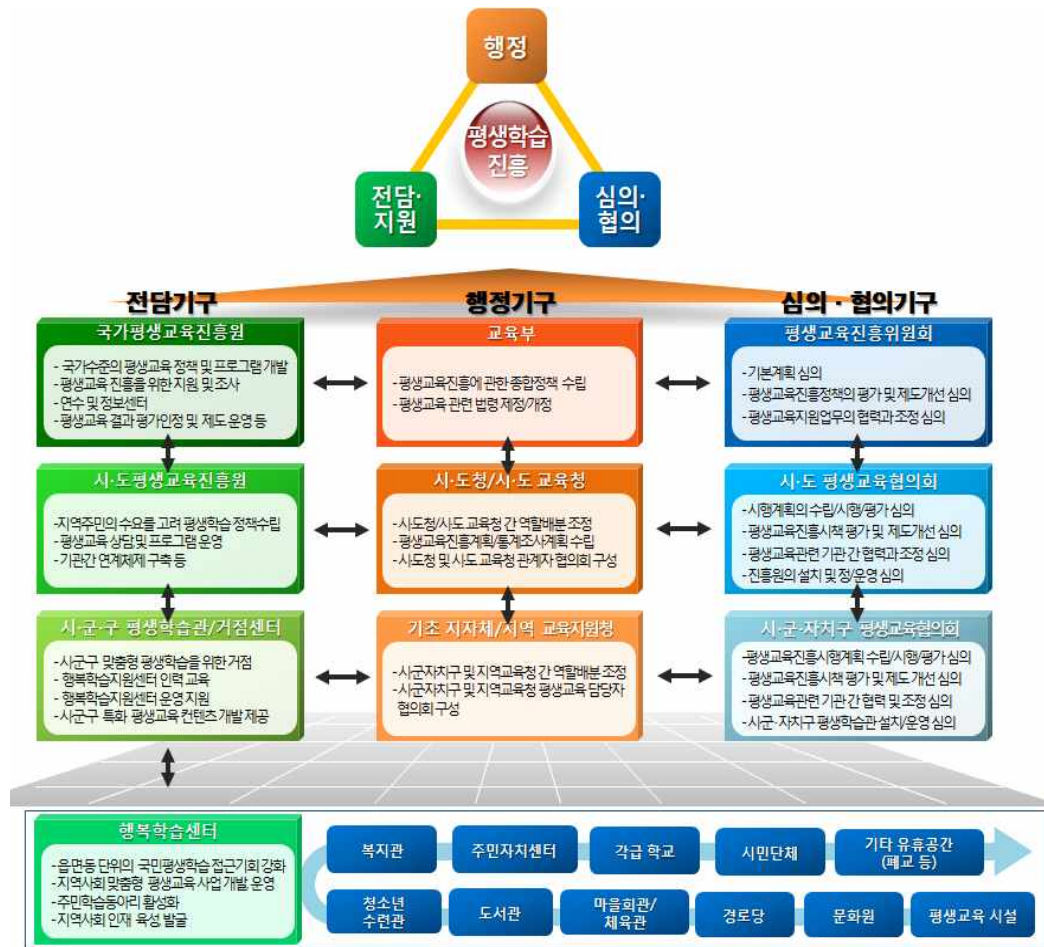


[그림 V-2] 창조학습생태계

※ 출처: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 중앙-광역-기초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완성

- 지역 간 재정여건의 격차와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미비로 인한 제도적 한계가 대두되었음
 -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체제의 완성 없이 기초단위에서의 실행에 따라 연계체계성 부족
 -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간 역할 중복에 따른 혼선 발생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4대 영역의 하나인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음
- 국가와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추진 체제 완성을 위하여 국가 - 시·도 및 교육청 - 시·군·구 -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추진체제 완성,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시간·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전국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내 평생학습관 운영, 150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정책목표 설정함으로써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함
-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2014.01.28) 및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로부터 생활권역까지 연계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함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생활권)으로 연계되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함



[그림 V-3]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도

※ 출처: 전라남도(2013). 2014 전남 평생교육 시행계획

□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재정비

-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평생교육 정책 시행에 시너지 효과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점차 확대 지원하고 있음
 -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광역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이전 교육청에서 구축한 평생교육 인프라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지역 평생학습 기구 중추기관으로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 완료 및 운영 안정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기반조성의 지원이 필요함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 안정시까지 예산 지원 실시, 이에 상응하는 시·도자치단체의 매칭펀드 투자 의무화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공동사업(연수, 평생학습계좌제 등) 확대
-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정책기조는 평생교육의 지역화·생활화·다각화이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은 고도의 관리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의 광역적 차원의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나.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계획 검토

□ 전라남도 비전 및 전략

- 전라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와 7개의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 기본목표 :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있는 정주 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전국 제일의 「녹색산업」 중심지 육성,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발전거점 및 광역교통망 확충, 동북아의 문화관광 허브 조성,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자연환경의 효율적 이용, 자연친화형 정주여건 조성 및 복지수준 향상
-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에 교육·문화·체육시설 부문의 목표로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미래지향 학교 건설’을 설정하고, ‘지역 경제교육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음²⁾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계획은 교육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 상응하는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 평생교육 비전과 전략 등은 중장기 기본계획인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4~2018)에 의해 실행하고 있음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추진 방향
 -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추진역량 강화 등
 - 지역현안 및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되, 지역에 맞는 인프라운영 모델 구축 등
 -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평생교육 제공: 평생교육과 일자리 연계,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지역산업 인력 양성 등
 -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생활에 활력을 주는 예술 활동 및 취미 개발 지원 등

2) 전라남도(2012. 2)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

비전 : 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전남

목표 :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향토문화예술 진흥	사회통합	지역산업 지원	추진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학 강좌 • 관광문화 해설사양성 • 지역축제 지원 • 인문·교양·취미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 • 성인문해 교육 • 여성능력 개발 • 노인복지·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창업교육 • 귀농·귀촌 교육 • 시민 경제교육 • 취업 준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협의회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 네트워크 구축 • 콘텐츠 개발·보급

지역특성을 활용한 권역별 특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근교 : 문화·체험·휴양 콘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노인케어 • 동 부 권 : 국제행사 자원봉사, 물류전문과정, 시민경제교육 • 중·남부권 : 한방식품, 차문화, 판소리, 남도문학 • 서 부 권 : 섬, 영산강 고대문화 해설가, 해양레저 전문과정

[그림 V-4] 전라남도 평생교육 비전과 전략

※ 출처 : 전라남도(2016). 전라남도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 경과

- 2009년 2월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 2009년 2월 : 전남지역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2007~2013)수립
- 2012년 9월 : ‘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방침 결정
- 2013년 11월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4~2018)수립
- 2013년 12월 : 2014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수립
- 2014년 1월 : 전라남도 평생교육협의회 창립총회
- 2014년 3월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2015년 1월 : 2015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2016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중점 추진과제

- 2016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중점 추진과제는 4대 분야의 6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과제 1. 추진역량 강화 : 18개 세부 추진과제
 - 과제 2. 생활의 활력 증진 : 11개 세부 추진과제
 - 과제 3. 사회 통합 : 17개 세부 추진과제
 - 과제 4. 지역산업 지원 : 17개 세부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별로 담당 기관(기구) 및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V-6] 세부 추진과제

과제	세부 추진과제		2016년 예산	추진부서
① 추진역량 강화	1-1	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63	인재양성과
	1-2	시·군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	인재양성과
	1-3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 지원	60	평생교육진흥원
	1-4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과정	36	평생교육진흥원
	1-5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24	평생교육진흥원
	1-6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연계 시군DB구축	24	평생교육진흥원
	1-7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23	평생교육진흥원
	1-8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13.5	평생교육진흥원
	1-9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구축	2.5	평생교육진흥원
	1-10	평생교육 실태 조사	15	평생교육진흥원
	1-11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8	평생교육진흥원
	1-12	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1	도 교육청
	1-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	도 교육청
	1-14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123	도 교육청
	1-15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도 교육청
	1-16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1,255	도 교육청
	1-17	행복마을 사무장(리더) 육성	72	건축개발과
	1-18	동부지역 「열린 강좌」 운영	10	동부지역본부
②	2-1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
	2-2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108	도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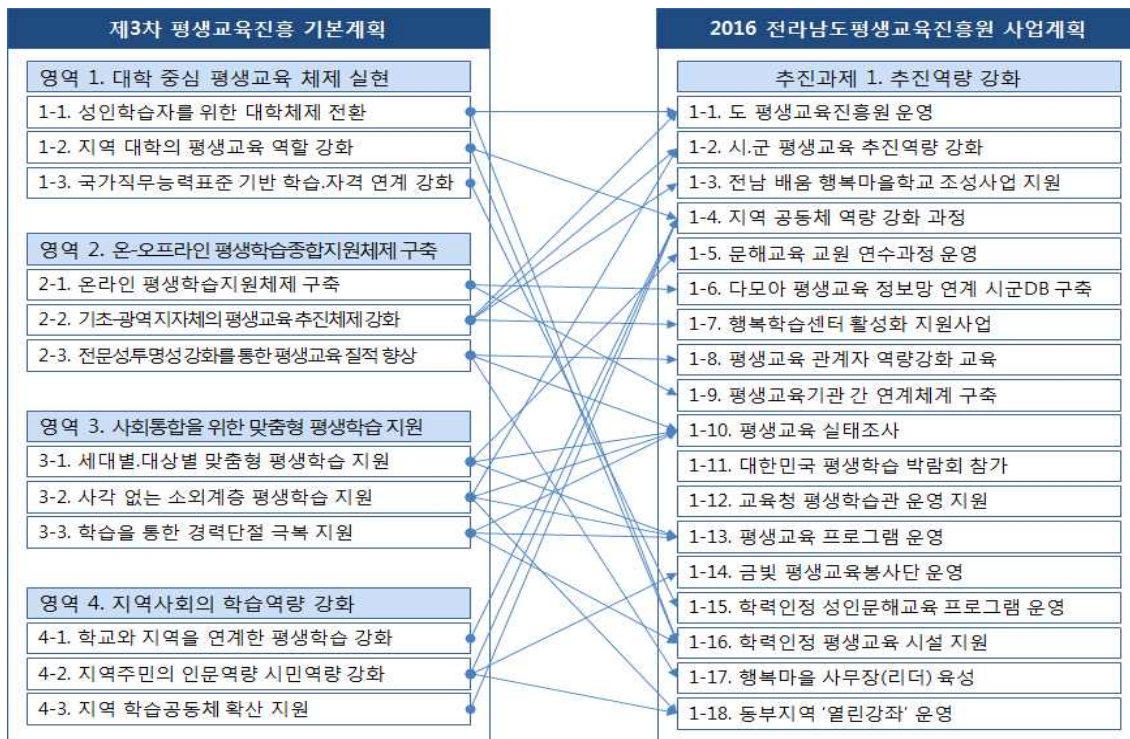
생활의 발표인증진	2-3	전통향토음식 인재양성교육	10	식품유통과	
	2-4	소비·식생활 교육	100	식품유통과	
	2-5	가고 싶은 섬, 주민대학	32	해양항만과	
	2-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관리	748	관광과	
	2-7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 배우기 강좌	35	문화예술과	
	2-8	성균관 여성 유도회 청소년교육을 위한 어머니 학교	30	문화예술과	
	2-9	아리랑 문화학교 운영	5	문화예술과	
	2-1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170	스포츠산업과	
	2-11	목공예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4	산림자원연구소	
	③ 사회 통합	3-1	배움+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18	평생교육진흥원
		3-2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	264	여성가족정책관실
3-3		다문화 건강가정 육성교육	46	여성가족정책관실	
3-4		아동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35	여성가족정책관실	
3-5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88	여성가족정책관실	
3-6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150	여성가족정책관실	
3-7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뚝 교육	44	노인장애인과	
3-8		농어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2,380	노인장애인과	
3-9		여성소기업 발굴 및 여성살림마당 운영	12	여성플라자	
3-10		육아용품 나누미센터 운영	20	여성플라자	
3-11		직장·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여성플라자	
3-12		인권보호(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13	여성플라자	
3-13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운영	3	여성플라자	
3-14		찾아가는 차세대 리더십 교육	5	여성플라자	
3-15		시·군 여성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4	여성플라자	
3-16		여성기관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2	여성플라자	
3-17		젠더 세미나	6	여성플라자	
④ 지역산업 지원	4-1	전남 행복 일자리 창출교육	60	평생교육진흥원	
	4-2	전남 생명농업대학 운영	140	농업기술원	
	4-3	도시민 주말 귀농교육	10.5	농업기술원	
	4-4	농업인 정보화 교육	41	농업기술원	
	4-5	여성 농업인 창업 전문교육	14	농업기술원	
	4-6	수도권 귀농 교육생 현장교육	48	농업정책과	
	4-7	농업 경영자 과정	200	농업정책과	
	4-8	창조 경영 혁신 리더 교육	10	농업정책과	
	4-9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1,808	농업정책과	
	4-10	전남 녹색 산림버섯 학교	20	산림자원연구소	
	4-1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4,728	일자리정책실	
	4-12	대학벤처 동아리 육성 지원	130	일자리정책실	
	4-13	여성 경제인 경영 연수	10	지역경제과	
	4-14	IT 조선융합 고급인력 양성사업	1,151	지역경제과	
	4-15	IT 농식품 융합 고급인력 양성사업	1,420.7	지역경제과	
	4-16	에너지 기초 인력양성 사업	240	지역경제과	
	4-17	에너지 인력양성 교육	25	에너지산업과	

※ 출처 : 전라남도(2016). 전라남도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다.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추진과제 1과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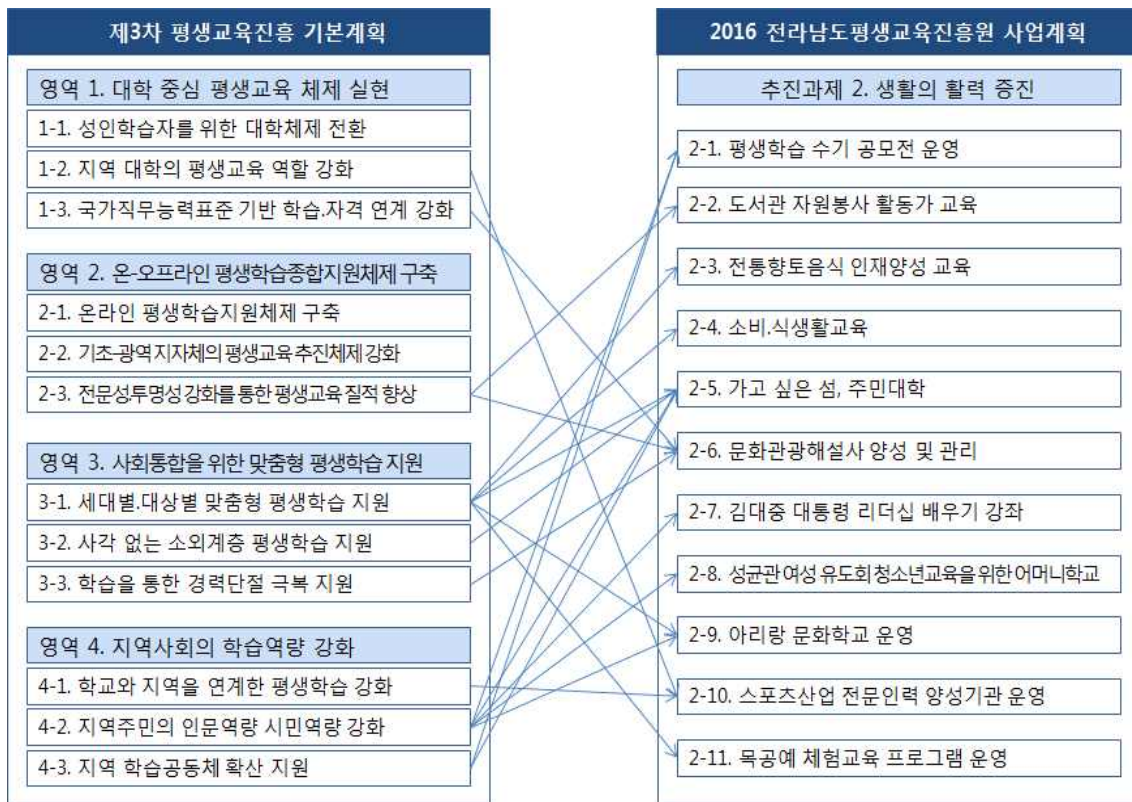
- 현 정부의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4개 영역의 12개 세부목표를 둔
-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과정, 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등을 실시함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연계 시군DB 구축,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행복마을 사무장(리더) 육성 등의 과제를 실시함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매년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동부지역 열린강좌 운영 등의 과제를 실시함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동부지역 열린강좌 운영 등을 실시함



[그림 V-5]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1(추진역량 강화)과의 연계성

□ 추진과제 2와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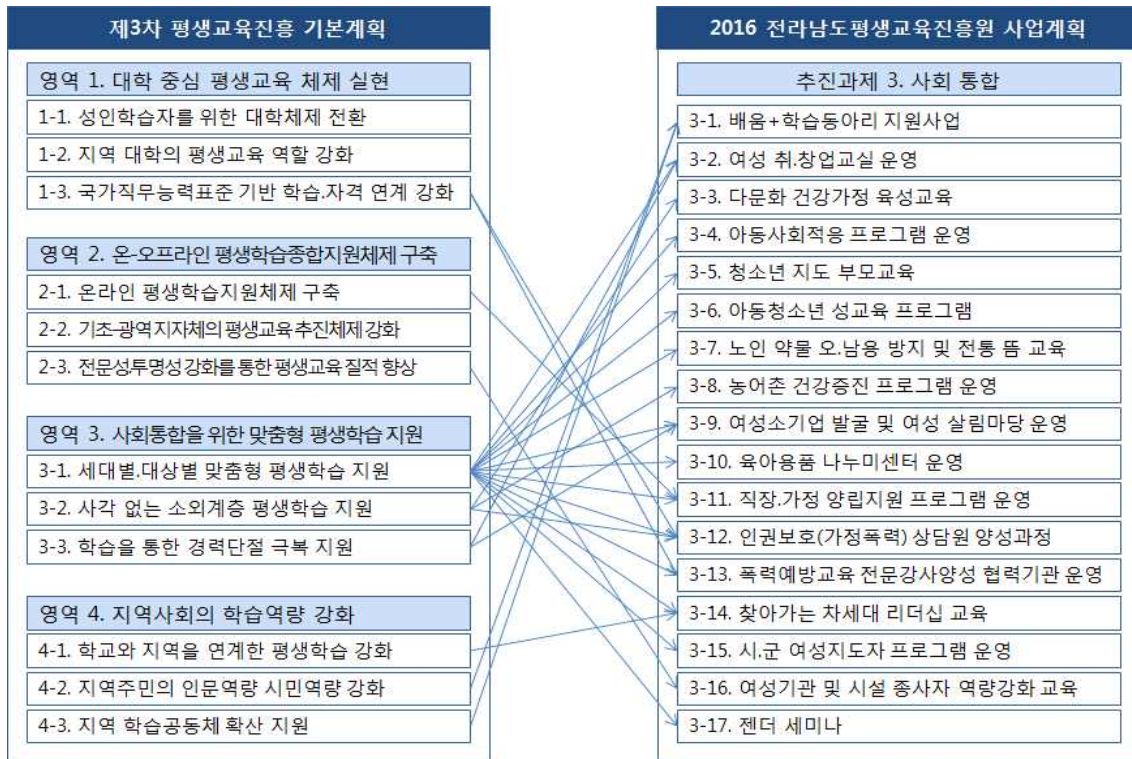
-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관리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및 관리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전통향토음식 인재양성 교육, 소비·식생활교육, 가고 싶은 섬 주민대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관리, 아리랑 문화학교 운영, 목공예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운영, 가고 싶은 섬 주민대학,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 배우기 강좌, 성균관 여성 유도를 위한 어머니학교, 아리랑 문화학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V-6]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2(생활의 활력 증진)과의 연계성

□ 추진과제 3과의 연계성

-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을 위하여 인권보호(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운영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직장·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관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배움+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 다문화 건강가정 육성교육, 아동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품 교육, 농어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성소기업 발굴 및 여성살림마당 운영, 육아용품 나누미센터 운영, 직장·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권보호(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운영, 찾아가는 차세대 리더십 교육, 시·군 여성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관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젠더 세미나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차세대 리더십 교육, 배움+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V-7]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3(사회통합)과의 연계성

□ 추진과제 4와의 연계성

-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대학벤처 동아리 육성 지원, IT 조선융합 고급인력 양성사업, IT 농식품 융합 고급인력 양성사업, 에너지 기초 인력양성 사업, 에너지 인력양성 교육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창조 경영 혁신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전남 행복 일자리 창출교육, 전남 생명농업대학 운영, 도시민 주말 귀농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여성 농업인 창업 전문교육, 수도권 귀농 교육생 현장교육, 농업 경영자 과정, 창조 경영 혁신 리더 교육,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등 다양한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벤처 동아리 육성 지원, IT 조선융합 고급인력 양성사업, IT 농식품 융합 고급인력 양성사업, 에너지 기초 인력양성 사업, 에너지 인력양성 교육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V-8]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과제 4(지역산업 지원)과의 연계성

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추진의 정책적 타당성

□ 현재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운영형태 : 지정위탁(광주전남연구원)
 -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4조
- 지정기간 : 2014. 1. 22 ~ 2017. 1. 21(3년간)
- 조 직 : 1원장 1처 2팀
- 인 력 : 7명(원장, 사무처장1, 팀장1, 팀원4) *원장은 광주전남연구원장겸임
- 운영예산('16) : 563백만원(국비 63, 도비 500)
- 학습동아리 지원, 문해교육 교원양성, 행복일자리 창출사업,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등

□ 현재 계획 중인 법인 설립(안)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시기 : 2017. 1월중 (예정)
- 조직구성(안)
 - 임원 : 이사(15인 내외), 감사(2인), 원장
 - 조직·인력 : 1처, 3개 팀 12~15명(출범초기 공무원 파견)
 - * 전국평균(2016년) 12명 - 대전 37명, 경기 30명, 충남 12명
- 소요예산 : 연 1,800백만 원
 - 기본재산 출연(300백만 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 전국평균(2016년) 13억 - 대전 50억, 경기 27억, 충남 15억
- 사무소 소재지 : 전라남도청 인근
- 주요기능
 - 평생교육 연구개발평가, 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평생교육사업 총괄 조정
 -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지역사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일-학습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독립 법인화 타당성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동력으로 평생교육이 강조
 - 청년층(직무교육), 중·장년층(생애전환기 교육), 노년층(건강, 행복)
 -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역량 강화 등
-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각 시도가 독립법인 설립 또는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나, 점진적으로 독립법인화 추세
 - 독립법인(4개 시도) :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법인화 추진 중
 - 지정운영(11개 시도) :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경남, 경북, 제주 등

- 교육청, 시·군 등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교육 정책개발 활성화 도모
 -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등
-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전라남도 평생교육 방향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준수 연계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추진은 도정방향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민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 충분한 사업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4.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소요예산 및 재정 투자 계획 검토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요예산 검토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 예산액은 422,000천원, 2016년 예산액은 500,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78,000천원 증가함
- 전년도 대비 2016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고, 교육훈련비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V-7] 전년 대비 소요예산 비교

목	세 목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합계		422,000	500,000	78,000
인 건 비	계	106,495	148,243	41,74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095	133,843	
	공무원과건수당	14,400	14,400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여추진비	4,200	4,200	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2,145	12,354	209
일반운영비	계	58,992	61,811	2,819
	사무관리비	33,888	34,527	
	공공운영비	25,104	27,284	
여 비	계	10,800	16,900	6,100
	국내여비	10,800	11,900	
	국외업무여비	-	5,000	
업무추진비	계	3,200	3,200	0
	시책업무추진비	2,000	2,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	1,2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700	55,000	52,300
복리후생비	계	11,508	15,792	4,284
	사회보험부담금	8,319	12,204	
	기타복리후생비	3,189	3,588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68,000	34,000	-34,000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20,000	20,000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42,610	39,000	-3,610
일반보상금	계	1,050	1,500	450
	행사실비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800	1,5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7,500	88,000	-9,500
자산취득비	계	2,800	-	-2,800
	자산취득비	800	-	
	도서구입비	2,000	-	

□ 재정 투자 계획 검토

- 전라남도 유관 사업 향후 투자 계획임(표 V-8).
- 63개 세부 추진과제 모두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유관 부서간 사전 의견 조율과 유기적 협력 통해 향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r기 능 활성화와 특화 사업 추진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표 V-8 > 재정 투자 계획

구분	코드	세부 추진과제	투자계획(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3개 사업	18,711	19,050	19,240	19,488	19,666
①추진 역량 강화	1-1	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63	563	563	563	563
	1-2	시·군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1-3	전남 배움 행복학교 조성사업 지원	60	80	70	60	60
	1-4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과정	36	36	48	48	60
	1-5	문해교육 교원 연수 과정 운영	24	24	30	30	30
	1-6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연계 시군DB구축	24	48	48	36	36
	1-7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23	25	27	30	30
	1-8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13.5	13	13	13	13
	1-9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구축	2.5	3	3	3.5	3.5
	1-10	평생교육 실태조사	15	15	15	15	15
	1-11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8	10	10	10	10
	1-12	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1	2	3	4	5
	1-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	2,100	2,200	2,300	2,400
	1-14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123	125	127	130	135
	1-15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60	70	80	90
	1-16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1,255	1,255	1,255	1,255	1,255
	1-17	행복마을 사무장(리더) 육성	72	218	218	218	218
	1-18	동부지역 「열린 강좌」 운영	10	12	13	15	15
②향토 문화 예술 진흥	2-1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운영	3	5	8	10	12
	2-2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자 교육	108	108	110	110	110
	2-3	전통향토음식 인재양성교육	10	10	10	10	10
	2-4	소비, 식생활 교육	100	100	100	100	100
	2-5	가고싶은 섬, 주민대학	32	40	48	56	56
	2-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관리	748	695	695	695	695
	2-7	김대중대통령 리더쉽배우기 강좌	35	35	35	35	35
	2-8	성균관 여성 유도회 청소년교육을 위한 어머니 학교	30	30	30	30	30
	2-9	아리랑 문화학교 운영	5	5	5	5	5
	2-1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170	170	170	170	170
	2-11	목공예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4	24	24	24	24

구분	코드	세부 추진과제	투자계획(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③사회 통합	3-1	배움+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18	23	28	33	38
	3-2	여성 취·창업 교실운영	264	264	264	264	264
	3-3	다문화 건강가정 육성	46	46	46	46	46
	3-4	아동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35	38	38	38	38
	3-5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88	90	92	96	99
	3-6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150	156	160	170	174
	3-7	노인 약물 오·남용방지 및 전통뜸교육	44	44	44	44	44
	3-8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2,380	2,380	2,380	2,380	2,380
	3-9	여성 소기업 발굴 및 여성살림마당 운영	12				
	3-10	육아용품 나누미센터 운영	20				
	3-11	직장·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3-12	인권보호 상담원 양성 과정	13				
	3-13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운영	3				
	3-14	찾아가는 차세대 리더십 교육	5				
	3-15	시군 여성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4				
	3-16	여성기관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2				
	3-17	젠더 세미나	6				
④지역 산업 지원	4-1	전남 행복 일자리 창출교육	60	70	80	90	100
	4-2	전남 생명농업대학 운영	140	144	148	152	156
	4-3	도시민 주말 귀농교육	10.5	11	12	13.5	14
	4-4	농업인 정보화 교육	41	50	55	60	65
	4-5	여성 농업인 창업 전문교육	14	16	17	18	20
	4-6	수도권 귀농 교육생 현장교육	48	48	48	48	48
	4-7	농업 경영자 과정	200	200	210	210	220
	4-8	창조 경영 혁신 리더 교육	10	10	10	10	10
	4-9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1,808	1,900	1,900	2,000	2,000
	4-10	전남 녹색 산림버섯 학교	20	20	30	30	35
	4-1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4,728	4,728	4,728	4,728	4,728
	4-12	대학벤처 동아리 육성 지원	130	130	130	130	130
	4-13	여성 경제인 경영 연수	10	10	10	10	10
	4-14	IT 조선융합 고급인력 과정 지원	1,151	1,151	1,151	1,151	1,151
	4-15	IT 농식품 융합 고급인력 과정 지원	1,420.7	1,420.7	1,420.7	1,420.7	1,420.7
	4-16	에너지 기초 인력양성 사업	240	240	240	240	240
	4-17	에너지 인력양성 교육	25	50	50	50	50

나. 재원 조달방식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은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원칙)에서는 기관경영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서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 사업의 경우 출자·출연하여 재단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진흥원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 제공이라는 공익목적 달성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출연기관이라는 적절한 설립형태를 지니고 있음

□ 재원 확보의 지속성 검토

-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출연금으로 재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재정지원이 명시되어 있어서 재원 확보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가능함
 -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운영 등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

[표 V-9]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재정지원 근거

조항	의의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출자 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이 공공복리 증진과 경영 효율성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경영원칙 명시함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발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설립 가능하게 함
제20조(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의 안정성 제공함

다. 설립형태 검토

□ 도 지정(직접경영) 형태

- 도 지정(직접경영) 형태의 장점

- 직접경영은 행정과 업무 추진이 용이하며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용이함
- 또한 운영 초기에 필요한 재원을 시·도의 재원으로 충당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가능함
- 인력의 안정성도 높고 전문직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정부의 성과관리 체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도 지정(직접경영) 형태의 단점

- 관료 조직에 의한 운영은 각종 행정체계 및 통제 등으로 인해 경직성과 비능률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성이 미흡하며, 변화하는 교육수요와 해당 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미흡함
- 또한 공직에서의 성과 유인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영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 내지 책임 의식이 결여되기 쉬움

□ 지정 위탁 형태

- 지정 위탁 형태의 장점

- 민간위탁은 계약방식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고 민간운영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가능함
- 또한 재계약을 위한 성과유인 동기가 높고 성과지향적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높음

- 지정 위탁 형태의 단점

- 수익에 치중하는 경우 공익침해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의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음
- 또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소재 여부로 인한 분쟁의 발생 여지가 있으며, 수익성이 높지 않은 평생교육의 특성상 정확한 민간위탁비용 산정이 어려워 비용부담이 가중되거나 역선택의 우려가 높음

□ 재단법인 형태

- 재단법인 형태의 장점

- 평생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 방식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운영의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조화시켜줌. 또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직원의 신분 안정을 높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통합적인 운영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재단법인 형태의 단점

- 독점적 운영으로 경쟁원리를 상실하여 장기적인 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의 우려가 있음
-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소요와 초기 설립 및 정착 단계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과 별도 인력 확보 등은 재정 부담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퇴직 공무원 등의 인력으로 충원되는 경우 실질적인 자율성 훼손될 우려가 있고, 민간위탁에 비해 자율성이 약함

[표 V-10]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대안 비교 검토

구분	도 직영	지정위탁	독립 재단법인 설립
개 념	전라남도가 사업소의 형태로 직접운영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사무를 위탁	특정사업의 공공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사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운영
근 거	지방자치법 제 109조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법 제 32조
성 격	사업소	개인, 단체, 법인	비영리법인
업무관계	지자체업무의 일부	특정업무의 위·수탁	특정업무의 위·수탁
경영비용	자체예산	사업위탁금	출연금+ 수탁금+ 수수료수입
자본조달	도예산	도예산	출연금+ 차입금
경영자	전라남도지사	위탁기관 지정업무전담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예결산 승인	지방의회	·예산: 지방의회 ·결산: 자치단체장	이사회 또는 정관으로 결정
자자체의 업무감독	행정조직에 적용되는 범위	·위탁사무에 대한 수시감사 ·한시적 사전승인 및 협의	·경영관련 보고서류 제출 요구권 ·출연지분 관련 업무, 재산, 회계 감사권
장점	·설립 목적에 적합한 공공성 확보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경영책임 명확 ·행정력을 통한 영향력 확보 ·운영비 안정적 조달	·경영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신규직원 채용 불필요 ·시설, 보안, 안전관리 부담 경감 ·지속적 계약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고	·비영리 독립법인형태로 영리보다는 공익에 우선한 공공성 확보 가능 ·전문인으로 구성된 독립법인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게 사업의 확장 가능 ·조직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단점	·전문성, 경영노하우 결여 ·관료제적 경직성과 비능률성 : 도민의 요구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성 약화 ·조직추가 및 정원증설 부담 ·기관의 독립성 유지의 어려움 ·민간 자율과 책임경영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	·능률성,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함 ·위탁체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및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곤란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의 선정이 어려움 ·계약체결과정의 특혜수지에 대한 개연성 ·홍보성, 성과주위 경영 ·시설 사용시 발생문제의 책임 분쟁 발생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불가	·초기출연금에 대한 부담 ·조직 구성에 따른 인력확보 부담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사업 추진 능력의 결함 시 조직 개편의 어려움

□ 설립형태별 타당성 검토 결과

-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립형태별 대안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공공성(책임성)의 측면 : 직영경영은 시설의 공공성이 가장 높으며, 민간위탁은 단기적인 이윤 추구 위험성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 내재함. 재단법인은 일정 부분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 가능함
 - 전문성의 측면 :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은 인력의 전문성이 직영경영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경제성의 측면 : 경제적 효율성은 직영경영이 민간위탁과 재단법인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안정성의 측면 : 직영경영은 조직의 안정성을 가장 높이며, 반대로 민간위탁이 안정성이 가장 떨어짐. 재단법인은 일정 부분 내에서는 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 가능함
- 평생교육은 수익성이 크게 높지는 않으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어 효율성만을 판단 근거로 민간위탁 할 경우 수익증대 이뤄지지 않으면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음
-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직접경영은 공공조직의 관료적 특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비능률성 발생 가능성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능률성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호와 수요 반영에 어려움 가중시킴
-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가 아래와 같음을 고려할 때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충족시켜야 함
 -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조사연구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추진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사업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 해당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보수교육
- 재단법인 형태는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경직성 및 대응성 부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과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적 형태는 재단법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정위탁, 장기적으로 독립재단 설립이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V-11] 설립유형별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

구분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직접경영	◎	△	△	◎
민간위탁	△	◎	◎	△
재단법인	○	◎	◎	○

※ ◎ 가장 좋음 ○ 좋음 △ 보통

※ 출처 : 계룡시(2013). 계룡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이용재(2013). 보훈복지센터운영 및 구성에 관한 연구; 성명기(2006). 도 건립 운영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안 연구. 참고 후 재구성.

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추진의 재무적 타당성

□ 연구 가정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의 B/C 분석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성상 공공성에 기반을 둔 조직이므로, 수익 분석 보다는 향후 5년 간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전문인력 운용에 수반되는 운영비 등 간접비와 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비율 분석 등을 통해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예측될 수 있는 재정적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함.

□ 수입 분석

- 2014년~2015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총사업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2014	415,500	157,000	258,500
2015	422,000	103,000 (교육부 63,000, 농어촌희망재단 40,000)	319,000

- 2016년~2020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총사업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출연금)	기타수입	비고
2016	563,000	63,000	500,000	0	
2017	1,210,000	100,000	1,110,000	0	법인기본재산 200,000포함
2018	1,119,000	100,000	1,019,000	0	
2019	1,030,000	60,000	965,000	5,000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발생
2020	1,071,000	60,000	1,004,000	7,000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발생

- 필요 예산액의 88%~94%는 도비 출연금으로 채워지고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정책 및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주요 내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2019년부터는 지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감소하는 대신 평생교육 분야의 다른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고보조금을 2020년까지 발생될 수 있는 수입으로 계상하였음.

※ 예산액(총사업비)은 ‘마.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5개년도(2016~2020) 지출예산 분석’ 자료를 참고

□ 2014년도 정산 분석

- 정산 총괄표

(단위: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415,500,000	415,500,000	-	415,277,830	415,277,830	-	222,170	222,170	-

- 과목별 예산 집행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계		258,500,000	258,277,830	222,170
운영비		129,958,000	129,742,770	215,230
	인건비	56,926,000	56,920,090	5,910
	직무수행경비	4,065,000	4,064,510	490
	일반운영비	33,294,000	33,270,530	23,470
	여비	7,459,000	7,337,800	121,200
	업무추진비	2,000,000	1,999,400	600
	복리후생비	6,146,000	6,082,440	63,560
	자산취득비	16,068,000	16,068,000	
	행사홍보(개원기념세미나)	4,000,000	4,000,000	
사업비		128,542,000	128,535,060	6,940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50,000,000	50,000,000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5,000,000	4,996,500	3,500
	평생교육종사자 역량강화	5,000,000	4,997,000	3,000
	평생교육 실태조사	5,000,000	5,000,000	
	선진시민 의식교육	5,000,000	5,000,000	
	다모아 시스템구축	38,500,000	38,499,920	80
	전남평생학습축제참가	4,628,000	4,627,640	360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414,000	10,414,000	
	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	5,000,000	5,000,000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국비	도비		
1	평생교육진흥원운영비	129,958,000		129,958,000	129,742,770	215,230
2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3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10,000,000	5,000,000	5,000,000	9,996,500	3,500
4	평생교육종사자 역량강화	10,000,000	5,000,000	5,000,000	9,997,000	3,000
5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000	10,000,000	5,000,000	15,000,000	
6	선진시민 의식교육	15,000,000	10,000,000	5,000,000	15,000,000	
7	다모아 시스템구축	115,500,000	77,000,000	38,500,000	115,499,920	80
8	전남평생학습축제참가	4,628,000		4,628,000	4,627,640	360
9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414,000		10,414,000	10,414,000	
10	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합 계		415,500,000	157,000,000	258,500,000	415,277,830	222,170

- 전라남도의 보조금(415,277,830원)으로 2014년 3월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되어 전남의 평생교육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함.

- 전라남도과 도교육청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 지원해 줌으로써,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사업 즉 다모아 종합 정보망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평생교육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 제공하였고, 전남 행복 일자리 창출사업 및 2014 배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및 사회 재능기부 기회 제공하여 인생을 재설계하고, 이웃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만들었음. 아울러 도내 평생교육 기관과 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군, 교육기관 등의 평생교육 종사자·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마인드 정립 및 전문성을 신장하였으며, 교육영상 콘텐츠 개발·보급하는 등 홍보에도 열의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보여짐.

□ 2015년도 정산 분석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중(%)	비고	
운영비	운영비 합		185,400	43.9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095	25.2	팀원 3명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3명 수당 400,000*3명*12월
		공무원 파견수당	14,400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0	1.0	사무처장 350,000원*1명*12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2,145	2.9	2014년분(3,595,000원)과 2,850,000원*3명=8,550,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252	8.1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비, 회의운영비 사무실 일반관리비 등
	여비	국내여비	10,800	2.6	국내 출장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	3,200	0.8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8,319	2.8	4대보험료
		기타복리후생비	3,189		건강검진료, 자기계발비 등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비	2,800	0.7	도서구입비 등	
사업비	사업비 합계		236,600	56.1	
	배움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		49,000	11.6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9,250	4.6	
	배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0,000	2.4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9,000	4.5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12,000	2.8	
	다모아 시·군 DB 구축지원		25,000	5.9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15,000	3.6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15,750	3.7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1,600	0.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2.4	
	지역맞춤형 복지프로그램		40,000	9.5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20,000	4.7	
합 계		422,000	100.0%		

○ 예산내역 : 422,000천원

- 국고보조금 103,000천원(교육부 63,000, 농어촌희망재단 40,000),
- 도비(민간위탁금) 319,000천원

□ 2016년도 필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중(%)	비 고	
운 영 비	운영비 합		236,000	41.9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3,843	26.4	팀원 4명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3명 수당 400,000*3명*12월
		공무원 파견수당	14,400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0	0.7	사무처장 350,000원*1명*12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2,354	2.2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5,290	6.3	협의회 분담금 포함
	여비	국내여비	16,900	3.0	시도협의회 국외연수 5,000천원 포함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	3,200	0.6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15,813	2.8	4대보험료, 건강검진료, 자기계발비 등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327,000	58.1	비 고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50,000	8.9	첫 도입사업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60,000	10.7	전년 대비 3.1배 증액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36,000	6.4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23,000	4.1	전년 대비 약 20% 증액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60명)		24,000	4.3	전년 대비 100% 증액
	다모아정보망 시군 평생교육 DB구축		20,000	3.6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18,000	3.2	전년 대비 80% 증액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20,000	3.6	전년과 동일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13,500	2.4	전년 대비 90% 수준으로 감소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2,500	0.4	전년 대비 16% 수준으로 대폭 감소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	2.7	신규사업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		20,000	3.6	신규사업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8,000	1.4	신규사업
	평생교육 소식지 및 성과집 발표		14,000	2.5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3,000	0.5	
총 합 계		563,000	100.0		

□ 2017년도 필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중(%)	비고	
운영비	운영비 합	582,626	57.7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파견수당 포함)	257,145	25.4	원장1, 직원4, 파견3(총 7명)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포함)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0	0.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5,442	1.5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연간임대료	200,839	19.9	년간 임대료 150,000천원 포함
	여비	국내여비	20,000	2.0	시도협의회 국외연수 5,000천원 포함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	4,000	0.4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30,000	3.0	4대보험료+기타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사무기기	51,000	5.0	컴퓨터 10대,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
사업비	사업비 합계	428,000	42.3	비고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60,000	5.9	전년 대비 10,000천원(20%) 증액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70,000	6.9	전년 대비 10,000천원(17%) 증액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36,000	3.6	전년과 동일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25,000	2.5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60명)	24,000	2.4	전년과 동일	
	다모아정보망 시군 평생교육 DB구축	48,000	4.7	전년 대비 28,000천원 증액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23,000	2.3	전년 대비 5,000천원 증액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30,000	3.0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13,000	1.3	전년 대비 500천원 감액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3,000	0.3	전년 대비 500천원 증액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	1.5	전년과 동일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	30,000	3.0	전년 대비 10,000원 증액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1.0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평생교육 소식지 및 성과집 발표	20,000	2.0	전년 대비 6,000천원 증액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5,000	0.5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16,000	1.6	신규 사업	
총 합 계	1,010,626	100.0			

- 2017년 독립법인화에 따라 운영비가 전년 대비 약 2.5배 증액됨. 이는 전문인력이 1명 충원되고, 건물 임대료 15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컴퓨터와 사무기기 등 단발성 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사업비는 전년도 327백만원에서 428백만원으로 약 30.9%로 증액됨.

□ 2018년도 필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중(%)	비고	
관 영 비	운영비 합		628,243	56.2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파견수당 포함)	294,489	26.3	원장1, 직원5, 파견3(총 9명) 전년 대비 인건비 3% 증액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300	0.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8,531	1.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전비 등	252,323	22.6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200,000천원 포함
	여비	국내여비	20,600	1.8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	4,000	0.4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34,000	3.0	4대보험료+기타 복리후생비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490,000	42.6	비고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70,000	6.3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80,000	7.2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48,000	4.3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27,000	2.4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60명)		30,000	2.7	전년 대비 6,000천원 증액
	다모아정보망 시군 평생교육 DB구축		48,000	4.3	전년과 동일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28,000	2.5	전년 대비 5,000천원 증액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40,000	3.6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13,000	1.2	전년과 동일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3,000	0.3	전년과 동일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	1.3	전년과 동일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		20,000	1.8	전년 대비 10,000천원 감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0.9	전년과 동일
	평생교육 소식지 및 성과집 발표		20,000	1.8	전년과 동일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8,000	0.7	전년 대비 3,000천원 증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16,000	1.4	전년과 동일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14,000	1.3	신규사업
총 합 계					

- 독립법인화 2년차에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비 200백만원이 추가되고, 연간 임대료 150백만원은 삭감되었음.
- 사업의 확장 단계에 따라 전문인력을 추가로 1명 충원(31,801천원)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0% 증액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운영비가 582,626천원에서 628,243천원으로 7.8% 증액되었음.

□ 2019년도 필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중(%)	비 고	
관 영 비	운영비 합		441,954	42.9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파견수당 포함)	303,090	29.4	원장1, 직원5, 파견3(총 9명) 전년 대비 인건비 3% 증액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400	0.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9,087	1.9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전비 등	55,139	5.4	
	여비	국내여비	21,218	2.1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	4,000	0.4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35,020	3.4	4대보험료+기타 복리후생비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587,500	57.1	비 고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80,000	7.8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90,000	8.7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48,000	4.7	전년과 동일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30,000	2.9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60명)		30,000	2.9	전년과 동일
	다모아 정보망 시군 평생교육 DB구축		36,000	3.5	전년 대비 8,000천원 감액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33,000	3.2	전년 대비 5,000천원 증액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50,000	4.9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13,000	1.3	전년과 동일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3,500	0.3	전년 대비 500천원 증액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	1.5	전년과 동일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		30,000	2.9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1.0	전년과 동일
	평생교육 소식지 및 성과집 발표		20,000	1.9	전년과 동일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10,000	1.0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24,000	2.3	전년 대비 8,000천원 증액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35,000	3.4	전년 대비 21,000천원 증액
	서남해안 개발에 따른 전문가 양성		30,000	2.9	신규사업
총 합 계					

- 독립법인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10% 증액에서 5% 증액으로 감소.
- 이전비와 임대료 같은 일시적 비용이 사라지면서 전체 예산중 운영비 비중이 441,954천원 (42.9%)로 떨어진 반면 사업비 예산 비중이 587,500천원(57.1%)로 증가하였음.

□ 2020년도 필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중(%)	비고	
관 영 비	운영비 합		454,031	42.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파견수당 포함)	311,949	29.1	원장1, 직원5, 파견3(총 9명) 전년 대비 인건비 3% 증액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4,500	0.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19,660	1.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전비 등	55,996	5.2	
	여비	국내여비	21,855	2.0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	4,000	0.4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36,071	3.4	4대보험료+기타 복리후생비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616,500	57.6	비고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80,000	7.5	전년과 동일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00,000	9.3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60,000	5.6	전년 대비 12,000천원 증액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30,000	2.8	전년과 동일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60명)		30,000	2.8	전년과 동일
	다모아정보망 시군 평생교육 DB구축		36,000	3.4	전년과 동일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38,000	3.5	전년 대비 5,000천원 증액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60,000	5.6	전년 대비 10,000천원 증액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13,000	1.2	전년과 동일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3,500	0.3	전년과 동일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	1.4	전년과 동일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		20,000	1.9	전년 대비 10,000천원 감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0.9	전년과 동일
	평생교육 소식지 및 성과집 발표		20,000	1.9	전년과 동일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12,000	1.1	전년 대비 2,000천원 증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24,000	2.2	전년과 동일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35,000	3.3	전년과 동일
	서남해안 개발에 따른 전문가 양성		30,000	2.8	전년과 동일
총 합 계		1,070,531	100.0		

○ 독립법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로, 운영비 비중(42.4%)과 사업비 비중(57.6)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 사업비 측면에서 일자리와 역량강화 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는 꾸준히 증액처리되고 있음.

마.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5개년도(2016~2020) 지출예산 분석

□ 전남평생교육진흥원 년도별 예산 추정액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비	236,000	582,626	628,243	441,954	454,031
사업비	327,000	428,000	490,000	587,500	616,500
총액	563,000	1,010,626	1,118,243	1,029,454	1,070,531

□ 운영비

<단위: 천원>

편성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	148,243 총7명(파견3)	257,145 총8명(파견3)	294,489 총9명(파견3)	303,090 총9명(파견3)	311,949 총9명(파견3)
직무수행경비	4,200	4,200	4,300	4,400	4,500
퇴직연금	12,354	15,442	18,531	19,087	19,660
일반운영비	35,290	200,839	252,323	55,139	55,996
여비	16,900	20,000	20,600	21,218	21,855
업무추진비	3,200	4,000	4,000	4,000	4,000
복리후생비	15,813	30,000	34,000	35,020	36,071
자산취득비		51,000			
합계	236,000	582,626	628,243	441,954	454,031

□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생교육 성과발표회(1식)	50,000	60,000	70,000	80,000	80,000
행복일자리 창출지원사업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과정	36,000	36,000	48,000	48,000	60,000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1식)	23,000	25,000	27,000	30,000	30,000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60명)	24,000	24,000	30,000	30,000	30,000
다모아정보망 시군 평생교육 DB구축	20,000	48,000	48,000	36,000	36,000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18,000	23,000	28,000	33,000	38,000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13,500	13,000	13,000	13,000	13,000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2,500	3,000	3,000	3,500	3,500
전라남도 평생교육 실태조사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1식)	20,000	30,000	20,000	30,000	20,000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평생교육 소식지 및 성과집 발표	14,000	20,000	20,000	20,000	20,000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3,000	5,000	8,000	10,000	12,000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16,000	16,000	24,000	24,000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14,000	35,000	35,000
서남해안 개발에 따른 전문가 양성				30,000	30,000
합계	327,000	428,000	490,000	587,500	616,500

□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사업비	45.3%	60%	60%	51.6%	50.6%
인건비	148,243	257,145	294,489	303,090	311,949
사업비	327,000	428,000	490,000	587,500	616,500

- 2017년부터 지정위탁에서 독립 법인화로 전환되면서 사업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됨. 이는 독립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인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량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법인화로 전환되면서 전문인력이 보강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해석됨.
- 2017년~2018년 확장기를 거치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예전보다 높은 편이나 2019년 정착기를 지나면서 비율은 하향 조정됨.
- 특히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대비 인건비 평균 비율이 68%임을 감안하면 재정적 측면에서의 인력운용은 경쟁력이 높은 편임.
- 다만, 사업 추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량이 확대되는 2019년부터 전문 평생교육사 1명을 추가 고용해 도(도교육청) 파견 인원을 포함한 10명으로 증원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현 연구에서는 9명으로 가정).
 - 2019년 부터 8급 상당 평생교육사 1명을 증원해 총 인원 10명으로 하면, 인건비는 358,473천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은 58%로 시도 평균 68% 보다 여전히 낮은 수치임.

※ 5개년도 인력운용 계획

- 16년)7명(원장, 처장, 팀장, 직원4) →(1명 증)→ 17년)8명(원장, 처장, 팀장 2, 직원4) →(1~2명 증)→ 18~20년)9~10명(원장, 처장, 팀장급 2~3, 직원 5)

<참고>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대비 인건비(2016.1월 기준*) * 전남도청 제공

연번	시도	설치시기	설립 형태	정원 (명)	사업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인건비 /사업비
1	경기	'11. 12. 28	법인/설립	30	1,000	1,734	170%
2	서울	'14. 04. 03	법인/설립	15	857	790	92%
3	광주	'13. 04. 16	법인/설립	11	628	494	78%
4	대전	'11. 06. 13	법인/설립	19	3,489	1,503	43%
5	부산	'11. 03. 01.	지정(부산인적자원개발부)	9	305	288	94%
6	대구	'14. 02. 20	지정(대구경북연구원)	5	155	164	105%
7	인천	'13. 05. 09	지정(인천인재육성재단)	10	398	397	99%
8	울산	'12. 07. 01	지정(울산발전연구원)	7	628	332	53%
9	강원	'14. 03. 25	지정(강원발전연구원)	7	280	270	96%
10	충북	'11. 04. 20	지정(충북발전연구원)	4	60	120	2%
11	충남	'12. 01. 01	지정(충남인재육성재단)	12	1,055	480	45%
12	전남	'14. 03. 19	지정(전남발전연구원)	7	327	173	53%
13	경북	'13. 06. 27	지정(대구대학교)	7	500	176	35%
14	경남	'15. 01. 01	지정(경남발전연구원)	6	800	175	22%
15	제주	'12. 07. 18	지정(제주발전연구원)	7	840	275	33%
						평균	68%

□ 운영비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비	236,000	247%↑	582,626	108%↑	628,243	70%↓	441,954	103%↑	454,031

- 2017년부터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5배 증가함. 이는 지정위탁에서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요되는 단발성 비용으로 사무실 컴퓨터 등 자산 취득비 51백만원, 사무실 전세비용(현 위치를 유지했을 경우) 150백만원 등을 주요 내역으로 볼 수 있음.
 -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년도 대비 5% 가량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지만 법인 형태로 새롭게 운영되는 것을 고려해 10% 증가로 여유를 두어 필요예산을 산정하였음.
-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도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는 본격적인 확장기로 접어들면서 사무공간을 이전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른 이전비용(2억원)을 추가로 산정했으며 사무실 임대료(150백만원)는 빠지게 된다. 2018년에는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전년대 대비 10% 증가 분으로 산출하였음.
- 2019년부터는 이전비용(2억원)은 산입이 되지 않고 운영비 증가 요율을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서 산출하였음.

□ 사업비 분석

<단위: 천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비	327,000	428,000	490,000	587,500	616,500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6년까지 추진해온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사업 수혜 대상 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른 초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 특히 법인화 운영이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 신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음.
 -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개소당 8백만원 소요),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지원(개소당 7백만원), 서남해안 개발에 따른 전문가 양성(과정당 10백만원 소요) 등
 - 2017년 총 필요예산은 1,010,626천원으로 사업비 428,000천원은 총 예산의 42%만을 차지함. 이는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경상비(자산취득비, 사무실 임대료, 회계감사 수수료 등)와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2018년부터는 총예산에 차지하는 사업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법인 설립 3년차인 2019년도 부터는 전체 운영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확대됨. 확장, 성장기(2017~2018년)를 거치면서 조직이 안정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율도 둔화되고 소모성 경상경비도 완만하게 증가하게 됨. 반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은 그 대상인원을 늘려 전반적인 사업량과 예산이 늘어나게 됨.
- ⇒ 즉 법인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량 확대(질적 향상)가 나타나는 시점을 법인 설립 3년차인 2019년도로 볼 수 있음.

5. 실행 타당성 분석

가.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적 기능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평생교육법 제20조 상에 5가지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나, 광역단위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함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업무)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임
 - 지역 평생교육 기획 및 정보의 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 학습계좌제 운영
 -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도 평생교육을 지역 비전과 특성에 맞게 조율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평생교육의 가시적인 성과 축적 및 학습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지역 평생교육을 총괄 수행
- 진흥원의 업무범위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정책 연구·개발, 사업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관리, 학습문화 조성, 성과관리 등임

[표 V-12]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분 야	세부사업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 평생교육기관 및 유사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 연구소, 대학,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 지역고용센터와의 네트워크 •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연수 및 워크숍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책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수요조사 • 평생교육 관련 지역 일자리 수요조사 • 전남도 평생교육 자원을 활용한 정책 연구 • 도민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연구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평생교육시설 사업 지원 • 도민 생애단계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일반시민,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 리더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선도화 프로그램 개발 • 대학 연계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자, 강사, 강좌 인력풀 등 관리 • 평생교육 추진 백서 발간
학습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 및 기능(직무)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체계는 현재 1원장, 1처, 2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체적인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V-9]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 및 전라남도 평생교육 계획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과제 중심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 조직체계(직제) 및 인력 구성 비중으로 볼 때 업무의 효율성 및 성과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구체적인 팀별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V-13]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팀별 주요업무

부서	인원			담당업무
	A+B	평생교육사 (A)	기타 (B)	
원장	1명	명	1명	사업 총괄
사무처장	1명	명	1명	사업 총괄
기획운영팀	3명	1명	2명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소식지 발행 평생학습 강사은행제 운영 평생교육 워크숍 실시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평생교육 DB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개발지원팀	2명	1명	1명	평생교육 각종 공모사업 추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학습축제 추진 평생학습 상담·실습 운영 학습동아리 발굴·육성 및 지원

나. 타 시·도 조직 및 인력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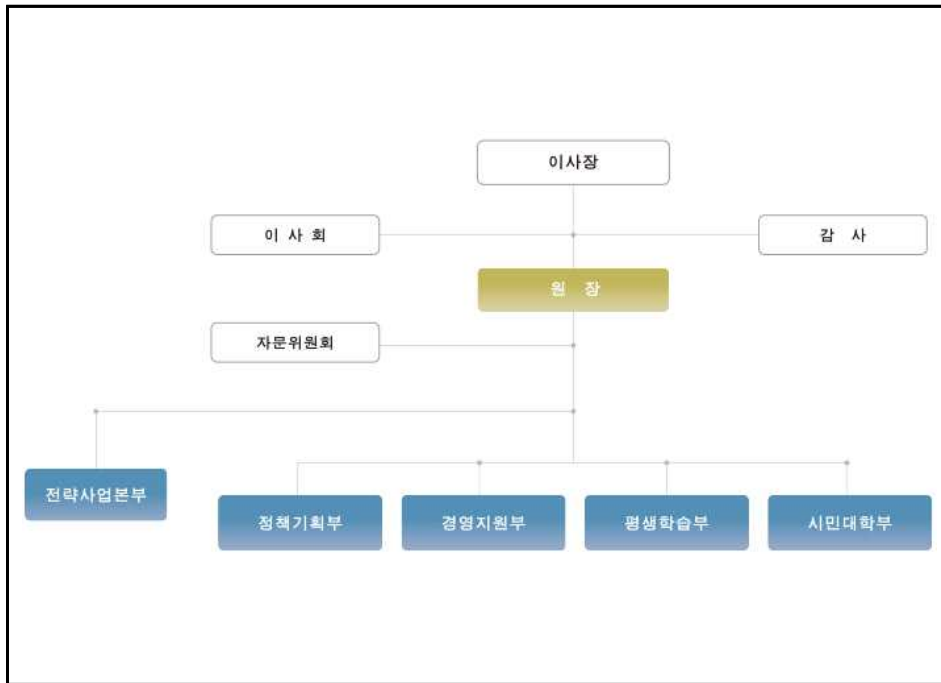
□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구조 및 인력체계 비교

- 2016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15개임
- 법인설립 4개 시·도가 법인 설립, 11개 시·도가 지정운명을 하고 있음
- 15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과 현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4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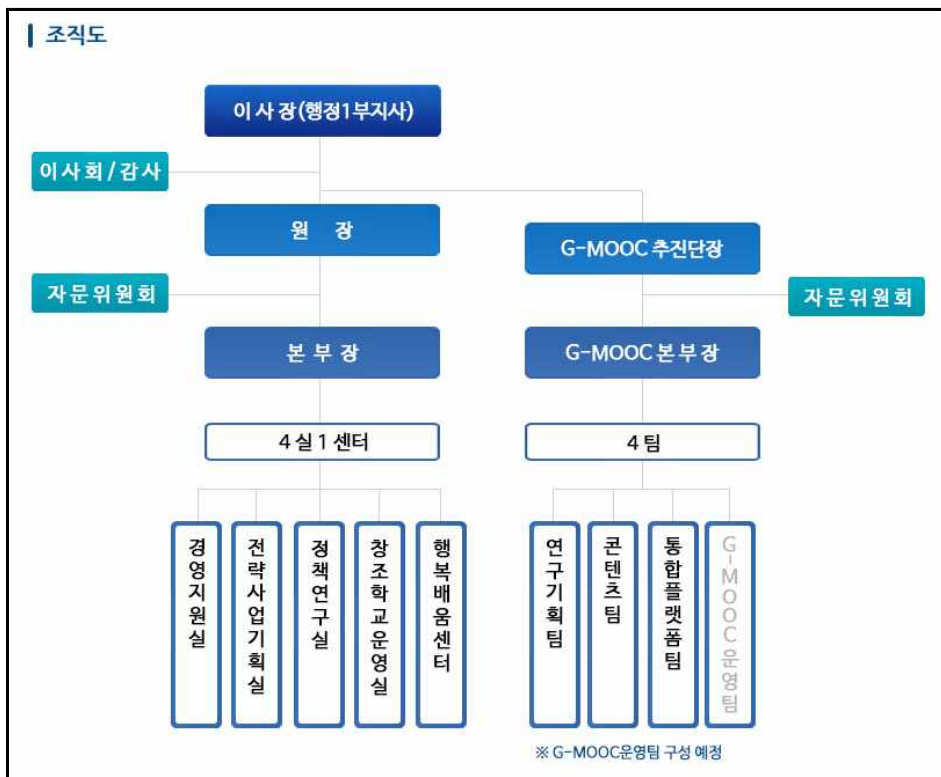
[표 V-14]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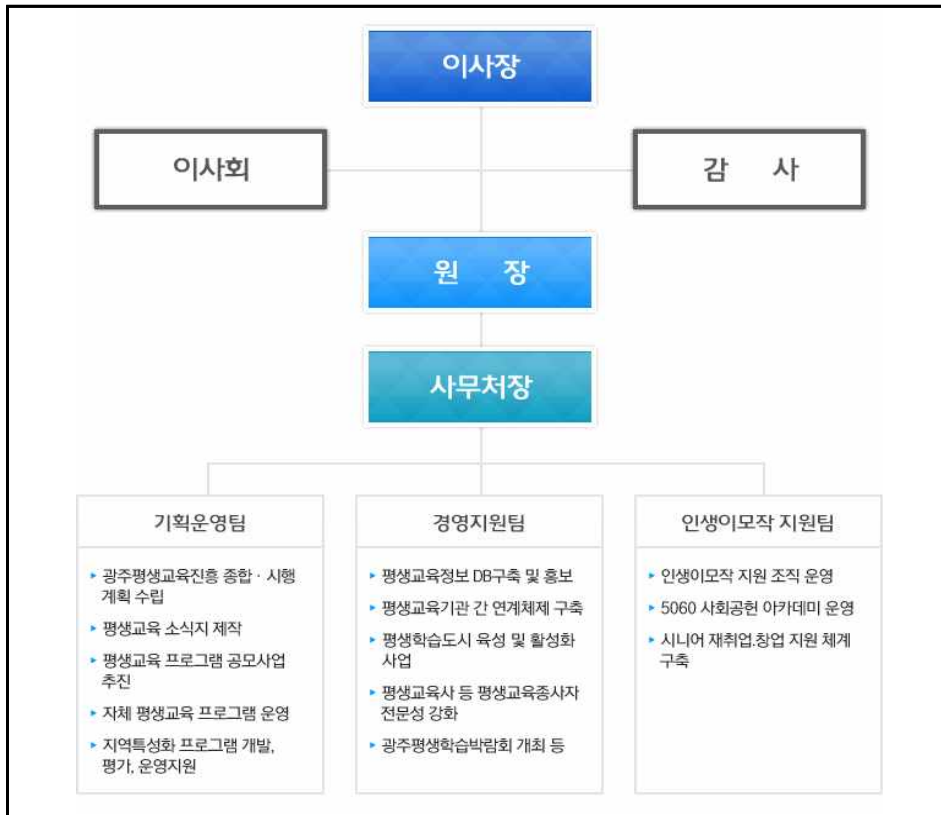
구 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비고
	운영 방식	운영기관	개원일 (법인설립일)	조직	구성 인원	예산(지방비)		
						'15년	'16년	
전남	지정 위탁	광주전남연구원	'14.3월	1처 2팀	7	319	500	
서울	독립 재단	법인설립	'14.4월 ('15.3월)	2팀	15	1,928	1,647	
대전	독립 재단	법인설립	'11.6월 ('11.6월)	1본부 3부 2팀	37	6,497	4,992	
경기	독립 재단	법인설립	'11.12월 ('11.12월)	1본부 5실 1센터	30	4,264	2,734	
광주	독립 재단	법인설립	'13.7월 ('15.2월)	1처 2팀	11	1,000	1,122	
부산	지정 위탁	인적자원개발원	'11.3월	2팀	9	600	758	
대구	지정 위탁	대구경북연구원	'12.5월	1처 2팀	5	290	319	
인천	지정 위탁	인재육성재단	'13.5월	2팀	10	783	795	
울산	지정 위탁	울산발전연구원	'12.7월	1센터 2팀	7	885	960	
강원	지정 위탁	강원발전연구원	'14.3월	1국 2팀	7	500	550	출연금
충북	지정 위탁	충북발전연구원	'11.4월	1처 2팀	4	186	180	
충남	지정 위탁	인재육성재단	'12.1월	1처 3팀	12	2,045	1,535	
경북	지정 위탁	대구대학교	'13.6월	2팀	7	500	676	
경남	지정 위탁	경남발전연구원	'15.4월	1국 2팀	6	850	975	
제주	지정 위탁	제주발전연구원	'12.12월	1국 2팀	7	550	1,115	출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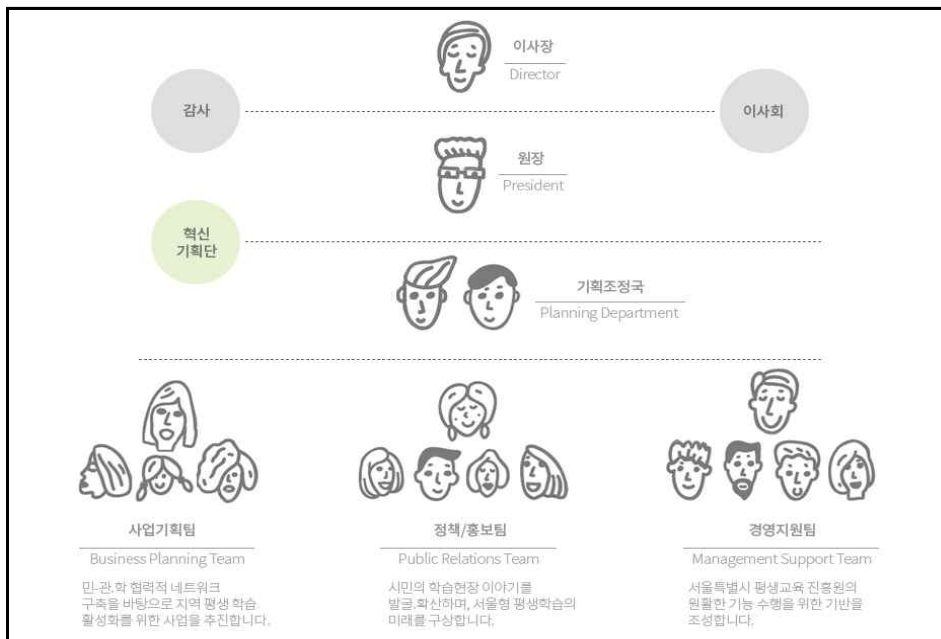
[그림 V-10]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그림 V-1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그림 V-12]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그림 V-13]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검토 결과

- 타 시·도와 비교 및 주요 직무분석을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핵심 기능 수행 및 특화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는 독립재단 법인 형태로 원장, 1처, 3개 팀을 목표로 하고, 초기 인력은 12~15명(출범초기 공무원 파견)으로 구성하여 조직을 개편 운영하고, 이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개편되는 조직 방향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직 운영 체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다. 지역사회 파급효과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민의 행복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총생산(GDP)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국민행복지수로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민행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 (UN, 2012)로 대두됨
-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신뢰, 직업의 질, 선택의 자유, 정치 참여 등이 행복의 중요 요소로 평생학습은 이들 요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 평생학습이 국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 기제인 만큼 제도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 특히 주거, 소득, 고용에 대한 행복도가 낮은 만큼, 창조경제사회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 지원 필요
 -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지역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기회 제공 확대 필요
-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일자리 개발과 확산 도모
 - 창조학습공동체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소득창출 및 지역개발
 - 전라남도는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창조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학습형 일자리 사업추진과 지역의 베이비부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습 활성화 및 취업 지원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격차 해소

[표 V-15] 전라남도 시·군별 평생교육 추진 현황(2016년 현재)

시군	담당 부서	2016년 예산(천원)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일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갯수	예산(천원)
목포시	교육지원과	434,972	2006. 3.	2006. 1.	7	204,775
여수시	교육지원과	606,000	2006. .	2006. 5.	7	415,400
순천시	평생학습과	1,404,533	2012. 9.	2004. 7.	7	1,404,533
나주시	교육체육과	145,800	2015.11.	2008. 1.	2	145,800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383,464	2008. 3.	2006.11.	8	383,464
담양군	자치행정과	157,200	2012. 7.	2008. 7.	4	157,200
곡성군	행정과	428,000	2008. 5.	2006. 1.	5	326,800
구례군	사회복지과	90,000			3	90,000
고흥군	평생학습사업소	87,620	2014.12.	2011. 7.	3	84,800
보성군	총무과	112,000			2	112,000
화순군	총무과	211,600	2015. 4.	2015. 3.	7	211,600
장흥군	총무과	0		2009.11.		
강진군	미래산업과	153,102	2007. 4.	2006. 8.	4	368,102
해남군	행정지원과	383,100	2011. 4.	2009. 4.	7	383,100
영암군	홍보교육과	523,600	2008. 1.	2007.10.	3	504,160
무안군	행정지원과	73,500	2006. 7.	2006. 7.	5	73,500
함평군	총무과	10,000		2008. 8.		
영광군	문화교육사업소	18,400	2015.12.	2013.11.	1	55,000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289,630			3	289,630
완도군	자치행정과	2,035	2015. 9.	2012.12.	3	407,000
진도군	행정과	71,050		2009. 9.	9	71,050
신안군	행정지원실	39,000		2015.10.		
계	전담부서설치: 10개 시군	5,624,606	협의회 구성: 15개 시군	조례 제정: 19개 시군	90	5,687,914

- 전라남도 시·군별 평생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지자체별 평생교육 전담조직이 설치된 시·군은 10개 시·군이었음
 - 2016년 현재 15개 시군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19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음
 - 2016년 평생교육 예산의 경우, 순천시(1,404,533천원)가 가장 많고, 이어서 여수시(606,000천원), 영암군(523,600천원), 목포시(434,972천원), 곡성군(428,000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장흥군은 자체예산 통계가 없고, 완도군(2,035천원), 함평군(10,000천원) 등의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순천시(7개 프로그램, 1,404,533천원)가 가장 많고, 이어서 영암군(3개 프로그램, 504,160천원), 여수시(7개 프로그램, 415,400천원), 완도군(3개 프로그램, 407,000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3곳이 있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남도는 지자체 간 평생교육 활성화 수준에서 지역적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상위 차원의 조직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할은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교육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및 정보격차의 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지역격차 통합

- 세대별·계층별 평생학습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 및 계층 간, 세대 간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등 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임
- 공동체의식 회복, 신뢰 형성과 같은 사회통합의 효과가 기대됨

□ 평생교육을 통한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여가, 문화, 건강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활의 만족과 기쁨,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요소로 '평생학습'을 인식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평생학습참여율과 국민 행복지수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가입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평균은 40.4%, 행복지수 평균은 6.2이나,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6%, 행복지수는 4.2위로 32위에 그치고 있음
-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러나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행복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평생

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하에 정책적 차원의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음

-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창의교육전략과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도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기대 증가율이 2017년에는 40.4%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저학력 성인계층 참여율도 2017년에는 36%, 전체 대학생 중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 비율도 2017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즉, 평생학습참여율의 증대를 통한 행복지수의 동반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기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추진의 실행 타당성

□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구조 재구조화 필요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구성으로 국가평생교육정책 실현 및 전라남도 평생교육 5개년 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타 시·도와의 조직비교 및 주요 직무를 비교 검토한 결과 핵심 전문기능 수행 및 시·도 진흥원만의 특화사업 등을 개발·수행하고, 기초 지자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재의 구조로는 부족한 실정임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구조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 참여 증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평생학습은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국민 행복, 사회적 신뢰형성 등 높일 수 있는 중요 기제로 평생교육의 제도적 차원을 통해 전라남도 평생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 수준의 지역격차 및 다양한 세대와 계층 간의 격차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창조경제사회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지자체-산업체-지역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즉, 평생학습 참여 증대를 통해 도민 행복지수 및 삶 만족도 향상 등 지역사회 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1. 기본방향

가. 추진 배경 및 기반 구축

□ 추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전문기관 지정, 위탁 ▶ 도 산하단체의 유사기능 통합 독립
법인으로 전환

□ 기반 구축

- 평생교육 학습통합 D/B구축,
- 권역별, 유형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보급,
- 평생학습 문화 조성,
-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민·관·산·학)

나. 비전과 전략

비전 : 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전남

목표 :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향토문화예술 진흥

- 남도학 강좌
- 관광문화 해설사양성
- 지역축제 지원
- 인문·교양취미 교

사회통합

- 다문화 이해
- 성인문해 교육
- 여성능력 개발
- 노인복지·케어

지역산업 지원

- 소규모 창업교육
- 귀농귀촌 교육
- 시민 경제교육
- 취업 준비 교육

추진역량 강화

- 평생협의회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 네트워크 구축
- 콘텐츠 개발·보급

지역특성을 활용한 권역별 특화 교육

- 광주근교 : 문화체험·휴양 콘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노인케어
- 동 부 권 : 국제행사 자원봉사, 물류전문과정, 시민경제교육
- 중·남부권 : 한방식품, 차문화, 판소리, 남도문학
- 서 부 권 : 섬, 영산강 고대문화 해설가, 해양레저 전문과정

[그림VI-1] 전라남도평생교육 비전과 전략

다. 설립 모형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법인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업체가 재단 법인이다

- 재단의 중심은 설립자의 설립목적과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며,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비해 목적, 활동,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고정되어 있다

□ 설립 절차

법인의 목적과 명칭, 소재지, 이사회 구성 등의 명시된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신고절차를 밟으면 성립한다

□ 설립 주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법인의 목적과 의사에 의하여 설립되며,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재단의 목적은 설립자가 정하며, 이는 설립자가 재산의 출연과 함께 정관을 만들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의 변경은 설립자가 만든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만 가능하다

□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존속에 필수적 요건으로서, 재산은 설립자의 출연으로 조성되며, 기본재산은 출연의 시점부터 설립자의 개인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어 어떤 경우라도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나 새로 기본재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 의사 결정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설립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며, 대체로 이사회에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되며 법인의 이사나 이사회 등의 대표권은 법인의 설립의 목적과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과 같은 법리를 적용 받는다

라. 재단법인 설립의 유리성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지만,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 및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위의 근거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설립 전 협의를 할 경우에는
 -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재화,
 -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규모,
 - 향후 5년간의 조직, 인력운영계획,
 - 기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유관기관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광역자치단체의 출자기관(5억 원 미만), 출연기관(2억 원 미만)
 - 기초자치단체의 출자기관(3억 원 미만), 출연기관(1억 원 미만)

□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전라남도 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하나,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최초 출연금이 2억원 미만일 때 협의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의 신속한 설립과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 미만의 출연으로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설립 필요성 및 근거

□ 국정 기초

-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의 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4대 전략 및 65개 과제 제시
- 창조교육실현을 위해 ‘꿈과 끼 교육’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스펙초월’ 을 기조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제시
- 국정기조에 맞춰 초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제 2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과 교육 지원 필요성 대두

□ 법적 근거

- 교육 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10조(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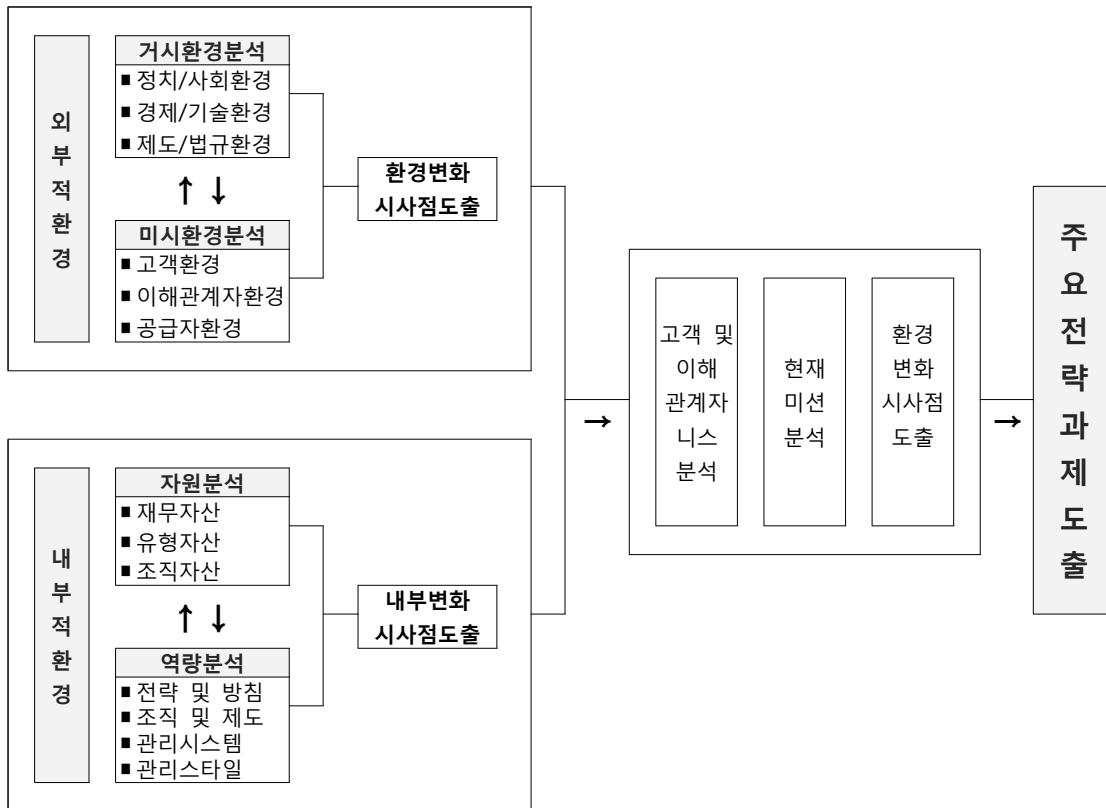
□ 추진 방향

- 평생교육 관계기관교육 및 협력체계구축으로 추진력 강화
- 지역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특화
- 학습과 복지, 고용이 연계되는 창조적 프로그램 제공
- 행복 가득한 수요자 만족형 프로그램 개발
- 생활 속에 묻혀있는 문화적 가치를 찾는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2. 조직설계를 위한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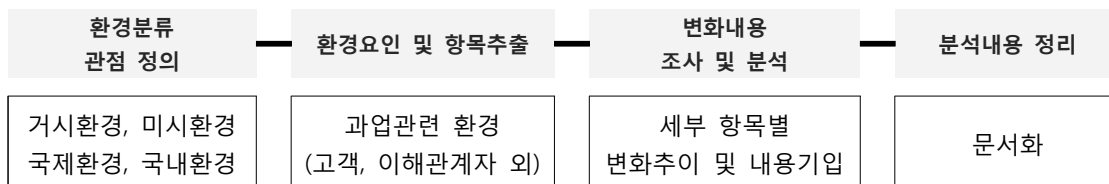
가. 목적과 방법

- 환경 분석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용하는데 적합한 설계를 위해 대. 내외적인 환경요인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 하기 위함
- 환경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외부 환경은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환경(모든 기관에 미치는 환경)과 미시환경(작은 단위의 조직에 미치는 환경)으로 분류 하고, 내부 환경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적 환경과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방식 등의 환경과 그에 따른 활동 등 내부적 여건을 분석인 역량분석 으로 분류함



[그림VI-2] 조직설계를 위한 환경분석

- 진흥원이 재단으로 전환되었을 때 평생교육 진흥원의 고유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진흥원의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그림VI-3] 분석내용 정리방법

나. 외부 환경 분석

- 거시환경 분석은 외부환경 요인 중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조직에 위협한 요소들을 제거 정리하는 단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규, 자원등이 해당함
- 조직을 움직이는데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미래와 현재의 기회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분석하여, 미래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
- 외부환경 위험요소를 사회적, 정치적, 지역적,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임

□ 사회적 환경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 문화 적응 교육 등 그들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정치적 환경

-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 국가 중심의 경영보다 법인이나 기관중심의 책임경영 필요
- 관 중심의 경영이 아닌 평생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의 정상화가 필요

□ 지역적 환경

-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상 도,농이 함께 함으로써 환경적요인을 고려하여야함
- 지역적으로 특화된 상품이나 문화적 요소를 교육프로그램화 하는 노력이 요구됨
-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맞는 정책수립
- 지역에 산재한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는 정책 수립
- 기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행복 제공

다. 내부 환경 분석

-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의 자원의 역량분석을 통한 자원적 환경과 역량적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관리나 운영방식을 제고하기위해 실시
- 조직 내부분석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들에 대한 분석
 - 자원분석 : 재무자산, 인적자산, 정보자산 등을 말함
 - 역량분석 : 조직의 역량으로 전략, 업무수행, 관리 시스템이 해당
- 도·농 복합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제도의 정비
- 지역 특성화 등 창조적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추진할 안정된 위치를 보장할 독립 기관의 지위 필요

라. 기타요인

- 진흥원의 역사가 평생교육관련 경험과 축적된 조직의 지식이 부족함
- 민. 관의 평생교육 관련유관 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상생의 협력 관계형성이 중요
- 기관의 운영에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인 설립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자기혁신을 위한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강화 교육이 필요

마. 환경분석의 제언

-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녀 기관 발전의 다양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지역적 요구의 다양성은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전과 주민 밀착형 조직으로 성장 가능
- 환경적 요인으로 특화된 역량을 지닌 선도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
- 평생교육 현장의 수요(고령화, 다문화 사회, 지역 특화)에 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구축 필요
- 조직원의 자기혁신과 구성원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역량강화필요
-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
-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상급기관의 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개발
-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 다양한 지역적 요구나 특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부조화 관리 필요

3. 조직 구성 전략

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 평생교육 참여 증대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요구
- 지역적, 계층별 다양한 요구에 맞는 조직체계의 필요성 증대
-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요구

나. 네트워크 환경구축

- 법인화에 따른 평생교육 사업의 다양화 및 질적, 양적 성장
- 도내 평생교육 기관(기초단체, 대학, 민간기관, 평생교육사등 현장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법인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역할 조정과 지원기능담당
-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진흥원의 위상 제고 노력

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성

- 국가 및 도의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영역 및 과제에 대한 진흥원의 행정적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용
- 상급 단위의 운영 방향에 따른 최선의 평생교육 진흥 사업수행 역량강화와 서비스 지원
- 외부요인에 따른 조직의 체계화 및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유연성 확보

라. 기본적 조직

- 조직체계의 변화에 따른 팀별 업무의 명확성 : 효율 및 책임의 극대화
- 평생교육 직무에 맞는 조직 구성 : 전라남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
-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팀별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
- 연차별 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직체계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

4. 추진체계구성

가. 추진체계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문기관 지정. 위탁운영 ▶ 도 산하단체의 유사 기능 통합 독립법인으로 전환
- 시군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아직 미흡함
 - 시군단위 평생학습도시 : 11개 군
 - 평생학습 조례제정 : 19개 시군
 - 협의회 구성 : 16개
 - 평생 학습관 설치 : 5개 시군

나. 조직

[표VI-1]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 장	직 원	비고(파견공무원)
인 원	7	1	3	3
평생교육사 수	3	-	3	-

°원장, 사무처장, 2팀(기획운영팀, 개발지원팀)으로 구성
 자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평생교육진흥원 기본 현황)

다. 주요사업

[표VI-2]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구 분	내 용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평생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전남지역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평생교육 학습자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지역의 평생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
지역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역 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창출 ·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 배려하는 ‘훈훈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라남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도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도내 평생교육기관 현황, 강좌 및 강사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제공
배움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5. 법인의 단계적 발전

모델을 1단계(도입)▶2단계(안정)▶3단계(성숙)▶4단계(진흥)) 로 발전

- 1단계
 -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
 -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 조직간 원활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 조직의 변화 시 조직 및 인력의 안정적 배치 운영이 가능 하다
 -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하여 조직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 평생교육 전문가를 육성 배치하여 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

- 2단계
 -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을 달리 한다
 - 업무 효율의 극대화에 맞는 조직변화와 인력 재배치를 한다
 - 기존의 팀 구성을 업무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간 마찰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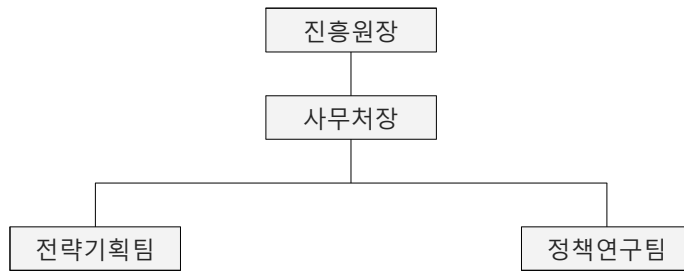
- 3단계
 - 업무의 효율성에 맞춰 조직을 세분화 하여 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 조직원의 업무 경계를 확실히 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
 - 업무의 성과분석을 통한 상벌의 정확성을 기한다
 - 조직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 4단계
 - 법인은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정책을 만드는 업무로 전환한다
 - 지역 내 평생교육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민간이 할 수 없는 소외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진행으로 사회적 의무를 하는데 진력을 다한다
 - 향토적 문화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문화 전승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 업무의 중 민간과 진흥원의 영역을 확정하여 중복투자를 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가. 연차적 조직체계

□ 도입기

- 법인화~2017년(1년) : 기존 조직체계를 운영(제1안)
조직의 형태 : 1원장, 1사무처장, 2개 팀(전략기획팀, 정책 연구팀: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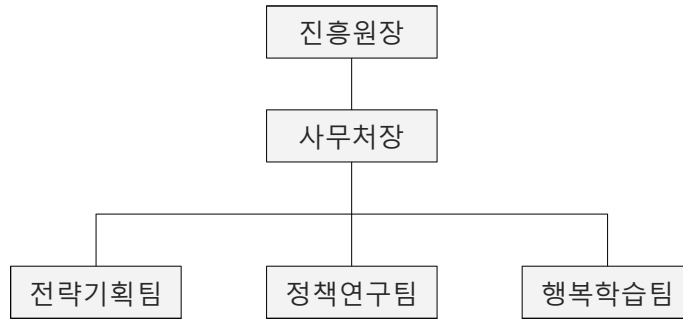


[그림VI-4]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1안)

[표VI-3]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1안)

실(팀)명	주요업무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소식지 발행 ▪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 평생교육정보 DB구축 및 홍보 ▪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등 교육 지원 ▪ 평생학습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 예산 · 회계등 지원 ▪ 지역문화 창출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기획
정책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관련 조사, 개발, 연구 (프로그램 개발, 평가, 보급, 운영, 지원) ▪ 평생학습기관 대상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각종 공모 사업 추진 ▪ 국가, 지역 평생학습축제 추진 ▪ 평생교육 상담 및 실습 운영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지원 ▪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등 ▪ 학습과 일 병합 프로그램 개발

- 법인화~2017년(1년) : 기존 조직체계를 운영(제2안)
조직의 형태 : 1원장, 1사무처장, 3개 팀(전략기획팀, 정책 연구팀:11명)



[그림VI-5]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원조직체계(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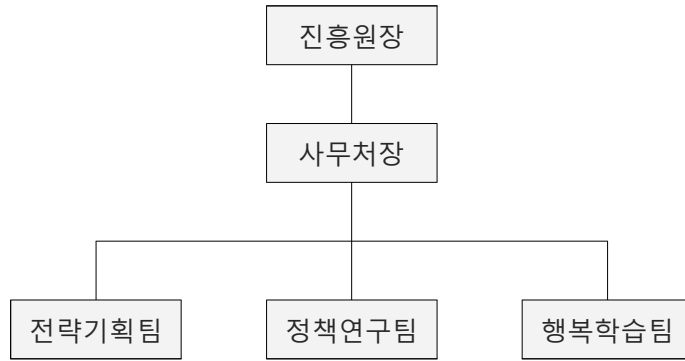
[표VI-4]2016~2017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2안)

실(팀)명	주요업무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수립 ▪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구축 ▪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소식지 발행 ▪ 평생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정책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관련 조사, 개발, 연구(프로그램 개발, 평가, 보급, 운영, 지원) ▪ 평생교육 예산 및 회계 ▪ 평생교육정보 DB구축 및 홍보 ▪ 평생학습기관 대상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각종 공모 사업 추진 ▪ 국가, 지역 평생학습축제 추진 ▪ 평생학습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 지역문화 창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기획
행복학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상담 및 실습 운영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지원 ▪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등 ▪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기획 ▪ 학습과 일 병합 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 운용하여 초기 업무적 적응기 제공
- 조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
- 단계별 조직변화는 직원의 업무이해도 증진 및 효율성의 극대화
- 익숙한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팀간 업무의 이해가 높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조직의 확대 개편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어 향후 단계적 업무 확장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분배를 할 수 있어 팀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 상황 방지
- 초기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법인화에 따르는 조직 개편(제2안)도 선택 가능

□ 안정기

법인화 후 2~3년(2018~2019) : 새로운 조직체계로 활성화를 가져오는 시기
 조직의 형태 : 1원장, 1 사무처장, 3개팀(전략기획팀, 정책연구팀, 행복학습팀: 인원 12명)



[그림VI-6]2018~2019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

[표VI-5]]2018~2019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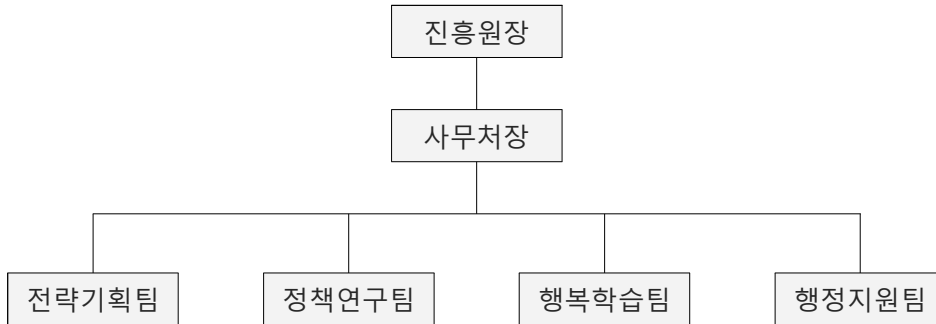
실(팀)명	주요업무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등)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 道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 인사(직원채용, 경영 및 성과평가 등) ▪ 규정(세칙)제·개정 ▪ 감사업무 ▪ 업무편람 제작 및 관리 ▪ 종합성과관리 체계 구축(시·군 평생교육 성과관리) ▪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운영 ▪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시·군, 대학 등) ▪ 글로벌 배움운동 네트워크 구축(협약, 협의회, 세미나 등) ▪ 예산관리 ▪ 총무 및 문서관리 ▪ 계약 업무 ▪ 시설관리 ▪ 자산 및 인사, 회계 시스템관리 ▪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사업(ISO9001 인증 유지관리) ▪ 구매업무 ▪ 직원교육 ▪ 복무관리 ▪ 직원 복지 및 여가지원 ▪ 기관 사회공헌 활동(농촌봉사 활동 등) ▪ 진흥원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관리)
정책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평생교육 백서 발간(연간 평생학습 통계조사 등) ▪ 도, 진흥원 평생교육 정책 현안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공무 수탁사업 발굴 및 추진 ▪ 시·군 평생교육 브랜드 개발 ▪ 시·군 통합형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 외부기관 및 시·군 컨설팅 사업 ▪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 운영 및 컨설팅
<p style="text-align: center;">행복학습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 ▪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전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도민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도 운영 ▪ 전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 ▪ 일·학습 선순환 프로젝트 사업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운영 ▪ 문해 아카데미 활성화 사업 ▪ 인문학 활성화 사업 ▪ 軍·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사회적 나눔경제 활성화 지원 ▪ 숲 체험 교육사업 ▪ 소상공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 ▪ 찾아가는 도서벽지 지역민 힐링캠프 운영 ▪ 다문화 학습공동체 조성 사업 ▪ 여성 사회재진입 교육 사업 ▪ 소식지·기별꾼 사례집 제작 및 운영 ▪ 다모아정보망 운영 및 관리 ▪ 전남온통배움터 운영 ▪ 평생교육 강사풀 구축 및 인정제 운영 ▪ 평생교육 전문가 D/B구축 ▪ 도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배움온통 학교 운영 ▪ 교육기부 사업 ▪ 베이비부커 New Start 사업 ▪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및 해외취업 지원

- 평생교육과 관련한 역할과 기능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의 허브로서의 기능 수행
- 시·군 및 대학, 민간기관과 견고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전라남도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
- 조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갖추어 내실있는 교육서비스 지원 체계 운용
- 업무의 책임성을 담보하여 지역 특화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업무에 효율적 대처

□ 성숙기

법인화 후 4~5년(2020~2021년)로 1원장, 1사무처장, 4개팀(전략 기획팀, 정책연구팀, 행복학습팀, 행정 지원팀, 행정 지원팀: 인원13명)



[그림VI-7]2020~2021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

[그림VI-6]2020~2021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안)

실(팀)명	주요업무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등)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 道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 인사(직원채용, 경영 및 성과평가 등) ▪ 규정(세칙)제·개정 ▪ 감사업무 ▪ 업무편람 제작 및 관리 ▪ 종합성과관리 체계 구축(시·군 평생교육 성과관리) ▪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운영 ▪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시·군, 대학 등) ▪ 글로벌 배움온통 네트워크 구축(협약, 협의회, 세미나 등)
정책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평생교육 백서 발간(연간 평생학습 통계조사 등) ▪ 도, 진흥원 평생교육 정책 현안과제 연구 ▪ 외부 공무 수탁사업 발굴 및 추진 ▪ 시·군 평생교육 브랜드 개발 ▪ 시·군 통합형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 외부기관 및 시·군 컨설팅 사업 ▪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 운영 및 컨설팅
행복학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운영 ▪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전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도민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도 운영 ▪ 전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 ▪ 일-학습 선순환 프로젝트 사업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운영 ▪ 문해 아카데미 활성화 사업 ▪ 인문학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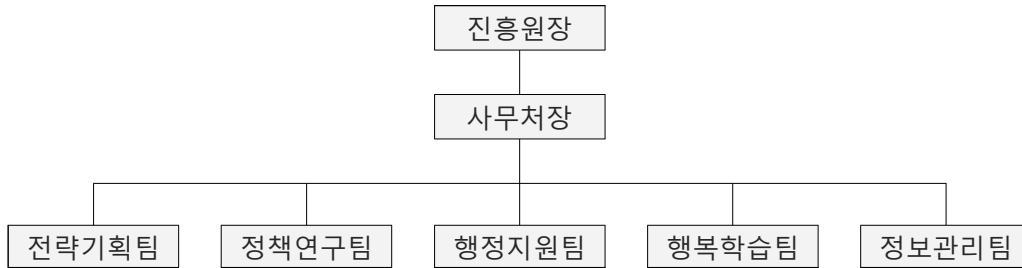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사회적 나눔경제 활성화 지원 ▪ 숲 체험 교육사업 ▪ 소상공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 ▪ 찾아가는 도서벽지 지역민 힐링캠프 운영 ▪ 다문화 학습공동체 조성 사업 ▪ 여성 사회재진입 교육 사업 ▪ 소식지·기별곤 사례집 제작 및 운영 ▪ 다모아정보망 운영 및 관리 ▪ 전남은통배움터 운영 ▪ 평생교육 강사풀 구축 및 인정제 운영 ▪ 평생교육 전문가 D/B구축 ▪ 도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배움운동 학교 운영 ▪ 교육기부 사업 ▪ 베이비부커 New Start 사업 ▪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및 해외취업 지원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관리 ▪ 총무 및 문서관리 ▪ 계약 업무 ▪ 시설관리 ▪ 자산 및 인사, 회계 시스템관리 ▪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사업(ISO9001 인증 유지관리) ▪ 구매업무 ▪ 직원교육 ▪ 복무관리 ▪ 직원 복지 및 여가지원 ▪ 기관 사회공헌 활동(농촌봉사 활동 등) ▪ 진흥원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관리)

- 조직을 단계적으로 업무의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효율성 극대화 기대
- 기존의 팀 업무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팀간 업무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업무간 중복 방지를 위한 안정적 조직의 개편으로 팀간 소모적 마찰방지
- 단계별로 팀의 업무확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조직체계로 개편

□ 진흥기

법인화 후 6년 차인 2022~이후로 1원장, 1처장, 5개팀(전략 기획팀, 정책연구팀, 행정지원팀, 행복학습팀, 정보관리팀), 교육연수팀, 정보관리팀: 인원 17명)

기 구축한 조직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정보관리의 독립화 완성



[그림VI-8]2022~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

[표VI-7]2022~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실(팀)별 주요업무(안)

실(팀)명	주요업무
전략기획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등)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 道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 인사(직원채용, 경영 및 성과평가 등) ▪ 규정(세칙)제·개정 ▪ 감사업무 ▪ 업무편람 제작 및 관리 ▪ 종합성과관리 체계 구축(시·군 평생교육 성과관리) ▪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운영 ▪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시·군, 대학 등) ▪ 글로벌 배움 네트워크 구축(협약, 협의회, 세미나 등)
정책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평생교육 백서 발간(연간 평생학습 통계조사 등) ▪ 도, 진흥원 평생교육 정책 현안과제 연구 ▪ 외부 공무 수탁사업 발굴 및 추진 ▪ 시·군 평생교육 브랜드 개발 ▪ 시·군 통합형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 외부기관 및 시·군 컨설팅 사업 ▪ 지역사회주말행복배움터 운영 및 컨설팅
행복학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전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 ▪ 일-학습 선순환 프로젝트 사업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운영 ▪ 문해 아카데미 활성화 사업 ▪ 인문학 활성화 사업 ▪ 도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숲 체험 교육사업 ▪ 전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운영 ▪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 軍·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나눔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 ▪ 여성 사회재진입 교육 사업 ▪ 농어촌 배움운동 학교 운영 ▪ 베이비부머 New Start 사업 ▪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및 해외취업 지원 ▪ 인생 이모작“도·농 상생 프로젝트”완성
정보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모아 정보망 운영 및 관리 ▪ 전남온통배움터 운영 ▪ 도민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도 운영 ▪ 찾아가는 도서벽지 지역민 힐링캠프 운영 ▪ 다문화 학습공동체 조성 사업 ▪ 교육기부 사업 ▪ 평생교육 강사풀 구축 및 인정제 운영 ▪ 평생교육 전문가 D/B구축 ▪ 소식지·기별꾼 사례집 제작 및 운영 ▪ 연도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웹 접근성 인증 유지 관리 ▪ 내부전산망 관리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관리 ▪ 총무 및 문서관리 ▪ 계약 업무 ▪ 시설관리 ▪ 자산 및 인사, 회계 시스템관리 ▪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사업(ISO9001 인증 유지관리) ▪ 구매업무 ▪ 직원교육 ▪ 복무관리 ▪ 직원 복지 및 여가지원 ▪ 기관 사회공헌 활동(농촌봉사 활동 등) ▪ 진흥원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관리)

- 기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 분야의 전문화를 이뤄 팀별 기능과 역할이 정착되는 조직체계의 안정기
- 평생교육과 관련한 모든 역할과 기능을 망라하여 시·군 및 대학, 민간영역 기관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라남도 평생교육 허브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조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이뤄 평생교육 진흥 및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어 운영
- 조직의 완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팀별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평생교육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극대화

나. 연차적 인력운영 계획

□ 조직의 성장(1원장1처장2팀▶1원장1처장3팀▶1원장1처장4팀▶1원장1처장5팀)으로 사업의 확대와 다양한 영역의 개발 및 발전도모에 인력의 증가 필요함

□ 2016~2021년도 단계별 인력 운용계획

[표VI-8] 2016~2021년도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팀)별 인력 운영계획(안)

구 분	~2017(도입기)						~2019(안정기)						~21021(성숙기)						2022~(진흥기)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소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소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소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소 계	
투 입 인 력	원 장					1						1						1						1	
	사무처장	1				1	1					1	1					1	1					1	
	전략기획팀		1 (1)		1 (1)	1 (1)	3 (3)		1		2	3		1		2	3		1	1	1		3		
	정책연구팀			1 (1)		1 (1)	2 (2)			1	1	1	3		1		1	1	3		1	1	1		3
	행복학습팀			(1)	(1)	(1)	(3)			1	1	1	3			1	1	1	3		1		1	1	3
	행정지원팀															1		1	2		1		1	1	3
	정보관리팀											1	1									1	1	1	3
	소 계						7 (11)						12						13						17

주) 현재 조직체계(2016년)를 기본으로 구성()안은 제 2안입니다

다. 연차적 소요 자원 및 조달방안

□ 소요 자원

- 조직의 성장으로 인력 증가에 따른 자원의 증가
- 조직의 확대에 따르는 시설 확충 및 정보화 설비 보강 자원
-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자원의 증가
- 조직의 창조적 활동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 및 운영비의 증가
-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원비용 증가
- 기타 진흥원 운영의 필요 경상비의 증가

□ 연차별 자원조달 방식검토 및 방안

- 자원조달 방식 검토

- 연차별로 증가하는 자원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법인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필요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자원의 조달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사업에 필요한 적정의 출자. 출연 규모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자원 분석등의 조달 방안을 만들어야함

- 자원조달의 방안

■ 진흥원 자체 사업을 통한 자원조달 하는 경우

- 설립 시 평생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형성으로 컨트롤 타위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민간영역의 침범으로 민.관 협력으로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출연기관의 지원의 경우와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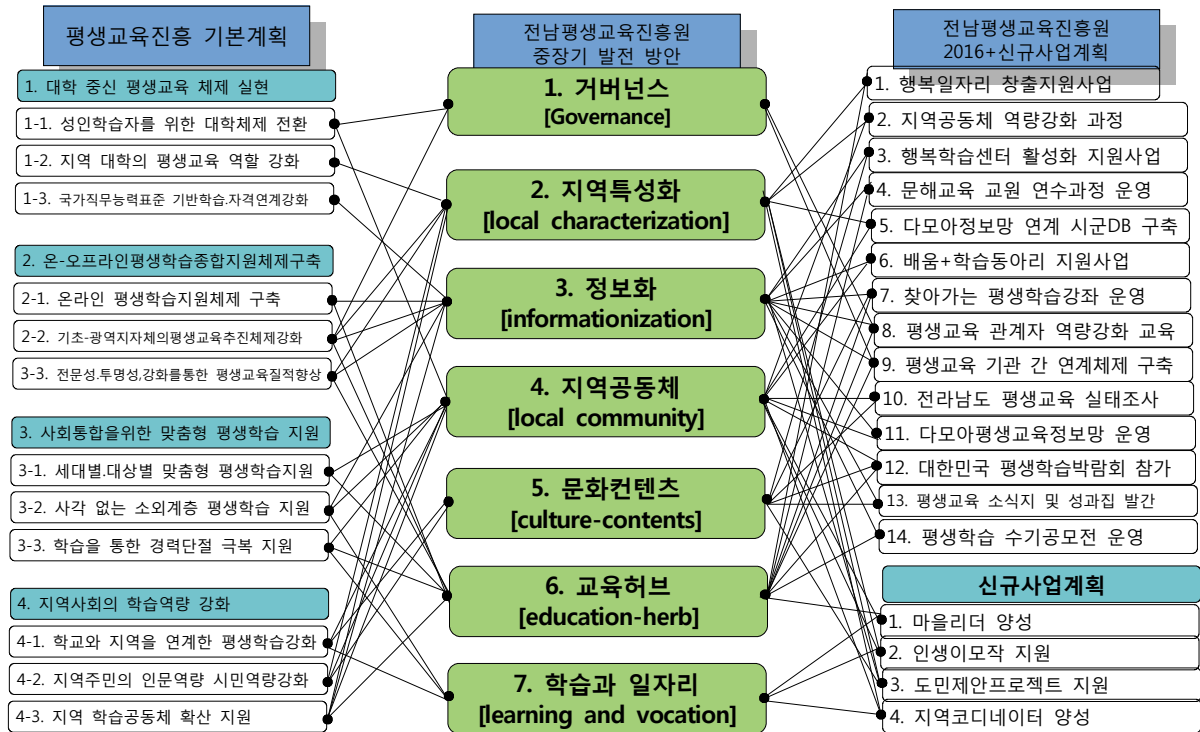
- 설립 시 출연금 및 기관장 인건비등에 자원 조달을 받게 된다면 법인화 전환 후에도 운영에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평생교육 의 장기계획에 의거 시·군 및 대학, 민간기관과 진행하는 사업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정적 운영가능
- 진흥원의 법인 설립 후 재정적인 이유로 사업비등 설립기관의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평생교육 진흥원의 자생력을 갖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법인 설립 후 각 지방 자치단체인 시·군의 사업별 대응투자 참여를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영의 원칙에서는 기관경영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어 사업참여의 명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 4조 지방자치단체의 대상 사업에서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경우 출자·출연하여 재단 설립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 전환 시 필요자원의 조달방식을 출연기관형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출자기관은 자본금 출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제약조건들이 많지만 출연기관은 최초의 출연금 출연 이후 주주처럼 재단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임
- 평생교육진흥원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복리와 공익목적을 달성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 형태의 설립을 하는 게 타당함

□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전환 후 재원 조달 수행 업무

- 공모사업 및 외부연구용역 수행 할 경우 사업 수행 중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진흥원 수입으로 계상이 가능하며, 진흥원 운영비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다년과제인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투자를 줄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
- 단체 성격의 기부행위는 할 수 없지만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재단형태에서는 기부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필요재원은 공모사업의 간접비율을 내부규정에 맞게 명문화 시키고, 외부용역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진흥원의 노력에 따라 점차 감소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

라. 중장기 중점과제



[그림VI-9]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 방안

중점과제 1 거버넌스[Governance]

□ 목적

전라남도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과 지역맞춤형 복합적 기능 수행으로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구현

□ 추진내용

- 전라남도 평생학습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 수립
 - 전라남도 평생학습전략 협의회(가칭) 구성
 - 전라남도 평생교육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전라남도 내 시·군 평생교육관련 기관과의 사업 및 성과 분석 팀 운영
 - 법인과 전라남도와의 사업 추진 부서간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 사업의 중복 및 유사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제고

[표VI-9] 전라남도평생학습전략 협의회 구성 예시

구분		소속 및 지위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장
간사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위원	유관부서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 및 인재육성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등 담당과장
	유관기관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대학 평생교육학 전문교수, 민간 기관을 대표하는 원장, 예술 및 지역대표 전문가
	도의회	교육관련 상임 위원회 도의원

- 점진적으로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시·군 등 자치단체로 협의회 확대운영
- 도민들의 아이디어가 생활 속에 녹아드는 프로그램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시·군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워크숍, 세미나 등 기회제공
- 자치단체 간 평생교육관련 선진적 정보공유의 장 제공

▪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파트너십 강화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전라남도 교육청이 평생학습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전라남도, 진흥원,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화
- 전라남도 내 시·군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전라남도과 교육청의 인프라(학교, 시설, 전문인력) 활용방안 모색 및 사업 발굴

▪ 시·군 등 자치단체, 교육청, 민간영역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평생학습 의 학습적 기능 확대를 위한 지역중심의 평생학습 형 학교지정 운영
- 지역 대학의 학과별 특성을 활용한 평생교육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 목적

- 국가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타 지역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 확대
- 지역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평생 학습 전국화 추진

□ 추진 내용

- 전국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타 광역 평생학습도시 간 교류 활동 및 연계사업 추진
 - 지역 간 학술교류를 통한 선진 평생학습 사례공유 및 비전 제시
 - 광역 시도 및 자치단체 등 다양한 협력주체들이 공동사업 추진
 - 시·군 등 타 지역 간의 교류로 창의적 학습모델제시
 -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간 교류 활동 및 연계사업 추진
 - 광역 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활동
- 평생교육 중장기적 운영모델 개발
 - 지역 인재육성으로 인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모델 제시
 - 평생교육 사업 추진 등에서 자력운영의 동력인 내부 전문성 강화
 - 시·군 등 자치지역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 모델 개발
- 지역 특성화를 통한 지역적 한계 극복
 - 시·군에 거주하는 마을 리더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신장
 - IT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환경 개선 사업
 - 학습형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지역민의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개선

중점과제 3 정보화[informationization]

□ 목적

-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누구나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학습기회 제공
-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창의적인 사고로 평생학습의 뉴 리더의 발현을 유도

□ 추진 내용

- 지역의 한계를 넘는 원스톱 평생학습 선진적 포털운영
 - 홈페이지 매뉴얼의 리셋 및 기능개선
 - 카페, 밴드등을 활용 다양한 사이버 공간활용
 - 시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콘텐츠강좌 확대로 정보의 일반화 노력
 - 신속한 정보제공의 스마트 평생학습체제 구축
- 전라남도민의 평생학습의 생활화
 - 인문, 예술, 직업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
 - 학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콘텐츠 발굴 및 교육기회제공 등 연계확대
 - 원격 지원센터 및 상담 센터 등을 시·도의 직할로 운영
- 원스톱 전라닷컴(가칭)등 평생학습 포털 운영
 - 도민의 e-러닝의 생활화
 - 학습 공동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연계
 -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 목적

- 지역중심의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과 학습공동체 구현
-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
-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 특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

□ 추진 내용

-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
 - 시·군의 행복학습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진흥원의 역할 분담
 - 행복학습센터 전환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관리
 - 행복학습 매니저들의 활동 지침서 개발 및 제작, 배포
- 지역특성화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육성
 - 22개 시·군 자치구 연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 평생학습동아리 연계 DB구축
 - 정기적 연수 및 세미나 등을 통한 협의체 구성
 - 성과보고회, 박람회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및 특화된 우수 동아리 포상
 - 지역기반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하여 능동적 지역사회 참여 유도
- 계층별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 경력 단절여성들의 다양한 일자리 연계자격 및 직업교육 제공
 - 도·농 복합 광역시의 특성상 실버세대를 위한 자기개발 및 문화 교육
 - 다문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등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 후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 지원

중점과제 5 문화컨텐츠[culture-contents]

□ 목적

- 도민 스스로가 지역의 학습을 통해 창출 또는 발견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치를 공유하여 주인의식과 지역 연대감 강화
- 마을 유산 찾기 프로젝트 운영
- 평생학습마을 조성을 통한 “일·삶·배움”의 일체형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 추진 내용

- 마을 문화유산 찾기 학습 프로젝트 운영
 - 지역의 마을전통, 역사, 유래, 경관, 기념물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프로그램 발굴
 - 마을 내 토착민을 유산 학습강사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유산에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운영에 지역민이 직접 참여
 - 마을의 역사와 유래등 기록보존을 위한 마을 박물관 조성
 - 지역 마을회관 이나 노인회관등 일부를 자치박물관으로 조성
 - 지역 평생학습의 결과물(작품, 활동상황 동영상, 프로그램 자료)등을 보존
- 문화와 행복이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 지역민 스스로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리더 양성 배치로 인프라 구축
 - 양성된 학습 매니저들의 역량강화 지속적 교육
 -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민들의 소통채널 확보 유지
- 도민제안 프로젝트 지원
 - 지역 공동체에서 요구한 프로젝트 선별 지원
 - 마을 리더들의 요구분석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해소등 현안 문제를 평생학습을 통해 해결
- 새로운 문화 만들기
 - 다양한 다문화 사회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 및 학습 모델 개발
 - 기존의 마을유산에 외부적 문화결합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

□ 목 적

- 도민 누구에게나 다름없이 누릴 교육의 권리와 평생학습의 고른기회제공
- 교육의 학습공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용이한 접근성
- 생활 속 평생학습 지향으로 평생학습 문화정착

□ 추진 내용

- 소외계층의 학습기회 제공
 -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 소외계층 직업 전문교육 지원
 - 문해교육을 통한 비문해율 감소
- 전라남도의 학습 공간화
 - 시·군의 자치 시설에 “평생학습 보금자리” 를 만들어 근거리 학습권 보장
 - “평생학습 보금자리” 의 지도를 보급 누구든 쉽게 이용하도록 배려
 -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 활용 캠페인 전개
 - 도민 1인 1평생학습동아리 가입 캠페인, 1인1재능나눔 캠페인등 다양한 캠페인 공모
- 마을 리더 양성
 -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구심체 역할
 - 지역 내 관광 마을 내 사업관리, 공동체관리자 역할
 - 지역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 현실에 맞는 역할 모델 개발
- 지역민 재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선진 학습을 접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의 기회 제공
 - 지역민의 1인 1동아리 활동으로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 재능 나눔의 장을 제공하여 학습의 보편적 가치 공유 기회를 제공
 - 재교육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로 소득 증대등 삶의 질 고취
- 소외없는 교육의 기회 제공
 - 저학력, 비문해의 해소로 평균적 삶을 살아갈 기초 역량 강화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확대로 사회참여 기회 역량 강화
 - 다문화, 이주민들의 교육을 통한 문화 흡수로 국제 역량 강화
 - 지역의 가정생활 교육의 확대로 지역 인적 역량 강화

□ 목적

- 학습을 통하여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 지역의 발전과 함께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발전 보급할 인재를 양성한다
- 지역의 문화재를 재해석하여 문화 창달과 보급의 기회를 만든다
- 지역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 추진 내용

▪ 학습과 일자리

- 학습형 일자리 발굴하여 자립모델 확대
- 창조적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학습의 선 순환적 환경구축
-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형 일자리 유형 및 자립형 모델 조사
-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전개
- 방과 후 교사 등 찾아가는 일자리 연계지원
-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 지원 개발

▪ 지역간 연대 신 성장 동력 찾기

- 서남해안 관광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배치
- 지역특화 관광 상품 홍보 전문 요원 양성 배치
- 지역 내 산재한 문화재의 효율적 상품화를 위한 전문 해설사 양성 배치
- 여유와 행복을 안은 슬로우 로드 개발 보급으로 다시 찾는 전남 만들기

▪ 문화 보급 및 마을 리더 양성

- 지역의 문화보급 및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문화의 질적 고양을 가져온다
- 마을 리더를 양성하여 조직의 관계성, 조정력, 팀웍을 발휘하게 한다
- 마을을 이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

▪ 인생 이모작 지원

- 안전 귀향 “도·농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귀농, 귀어인 을 연결해주는 사업
- 귀농, 귀농인 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프로그램 지원
- 농촌 내 유희인력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안정적 인력지원

▪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 마을 문화재 발굴 등 관광 상품 개발 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 지원
- 지역 문화재 및 관광 안내 해설사들을 지역 특화 전문가로 양성 배치지원
-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마. 학습과 일자리형 지역특화 사업 예시

□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 퇴직자의 경험과 청년들의 열정을 결합하여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 전라남도의 특성인 도·농의 교류를 통한 생산, 판매 등 “도·농 상생 프로젝트”를 설계 지원으로 지역 특화 사업의 발전 모색
- 도시의 새로운 유통 및 관리 기술을 농어촌에 과급하여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유도
- 도·농 상생교류를 통하여 지역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접목을 새로운 문화 창출의 기회

□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 지역에 널려있는 문화에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전통 문화에 생명승화 지역민 교육
- 지역적 한계를 가진 문화를 현대와 접목 발전 승화 계승 할 수 있는 전문가양성
-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재인식교육으로 전통문화 찾기 활동으로 동질성 확보

□ 서남해안 개발에 따르는 전문가 양성 사업

- 지역 문화종태(文化綜態)를 새로운 문화로 특화 설계하는 지역문화 설계 전문가(local-culture-creator: 문화 설계자)양성
 - 지역적으로 고착화된 문화 및 전통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 하고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갈 전문가를 양성
 - 지역 문화 특화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고 공감문화의 안목을 가진 전문가 양성
 - 다양한 특질의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낼 수평적 리더십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 지역문화의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전문 지역문화홍보 전문가(culture-curator: 문화 큐레이터)양성
 - 지역 문화의 특질을 잘 이해하고 전달 할 홍보전문가 양성
 -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역생활 밀착형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여 문화 이질감 배제
 - 전라남도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역의 특화된 문화를 잘 이해하는 지역민으로 선발 양성
- 지역문화를 전달하는 전문 문화 해설 사(culture-commentator:문화 코멘테이터)를 양성하여 배치
 - 지역문화의 정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감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전라남도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전달력 함양한 문화 해설사 양성
 -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민으로 발굴 양성

□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표VI-10]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2017(도입기)	~2019(안정기)	~2021(성숙기)	2022~(진흥기)	계
전국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훈련 - 국가, 자치단체 기관 연계 구축 - 국가, 도 사업 수행 - 지역대학과 네트워크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협력구축 - 교육청과 파트너십 강화 - 담당직원 워크숍, 세미나 진행 - 다모아 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적 정보공유 - 인프라 활용 모색 - 지역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 다모아 정보망 유지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연계사업 활성화 - 지역토착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 민간영역 활성화 지원 - 평생학습 형 학교지정 	99,780
	21,500	23,650	26,010	28,620	
지역특성화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공동 사업 추진 - 평생학습도시 교류 활동 -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창의적 학습모델 제시 - 선진사례공유와 비전 제시 - 지역 연계 특성화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교류확대 - 지역 연계 사업 추진 - 지역 특성화 모델 제시 - 평생교육 중장기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를 통한 지역적 한계극복 - IT인프라 구축으로 학습환경 개선 - 자력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지역리더 문제 해결 역량강화 	257,580
	55,500	61,050	67,160	73,870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평생학습 포털 운영 - 홈페이지 매뉴얼 리셋 및 기능개선 - 카페, 밴드 등 사이버 공간 활용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정보 콘텐츠 제공 - 스마트 평생학습체계 구축 - 다양한 분야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공동 콘텐츠 개발 및 교육기회 제공 - 시·도직할 원격 지원 체계 운영 - 원 스톱 전라 닷컴 포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러닝의 생활화 - 학습 공동콘텐츠 제공 - 인문, 예술, 직업연계 사업 활성화 	259,890
	56,000	61,600	67,760	74,530	
지역 공동체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 - 행복학습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박람회, 보고회 등 참여로 공동체 의식 고취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 행복학습 지침서 개발 - 지역 특성화 동아리 발굴 및 지원 - 귀향 지원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연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 학습동아리 연계 DB구축 - 정기적 직원연수 및 세미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동아리 포상 등을 통한 활동 동기 제공 -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 계층별 다양한 학습 기회제공 - 다문화 등에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417,690
	90,000	99,000	108,900	119,790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유산 찾기 학습 프로젝트 운영 - 지역내 마을의 역사 등 프로그램 발굴 - 토착 학습 강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산관련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에 참여할 토착 주민 강사 육성 - 마을 역사와 유래 마을박물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평생학습 결과물 보존 시설 조성 관리 - 문화와 행복 마을 공동체 조성 - 마을리더 양성배치 - 학습 매니저 역량강화훈련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세대간 계층간 갈등 해소 프로그램 진행 -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마을 리더 양성 인프라 구축 - 일·삼·배움의 일체형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139,230
	30,000	33,000	36,300	39,930	
교육허브로서의 역할 확대와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학습기회 제공 - 문해교육지속 강화 - 학습 보금자리 만들기 -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직업전문 교육지원 - 시군에 "평생학습 보금자리" 조성 - 다문화 가정정착 지원교육으로 지역의 국제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리더 양성과 실질적 활동지원 - 지역 내 리더의 역할 모델 개발 - 지역내 가정의 교육 확대로 지역 인적 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업의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 도민 1인 1학습 동아리참여를 위한 지원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발굴을 위한 캠페인 	176,190
	38,000	41,800	45,900	50,490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형 일자리 발굴 - 일·학습 전환 환경 구축 - 자립형 일자리 만들기 - 지역의 특성과 맞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 희망 찾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친화적 일자리 창출 모델 만들기 - 지역연대 신성장 동력 찾기 교육 - 창조적 학습 공동체 만들기 - 지역 문화보급 마을 리더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해안 관광 벨트 지원 전문가 양성 - 지역 관광상품 홍보 매니저 양성 - 지역 문화재 전문 해설사 양성 - 지역 문화보급 마을 리더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평생교육 관리 운영 전문가 양성 - 인생 이모작 지원교육 - 귀향 "도·농 상생 프로젝트" 완성 - 지역문화 창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 미래지향적 일병합 프로그램 개발 	459,460
	99,000	108,900	119,790	131,770	
계	390,000	429,000	471,820	519,000	1,809,820

* 사업비는 물가 및 사업 확대 을 반영하여 매년 10% 증액

6. 법인화 추진 당위성 및 제언

-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라남도의 직접 또는 위탁 운영은 평생학습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힘들
- 이러한 외부적 변화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선 독립 법인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법인화는 사업추진 등을 주도할 독립적 추진체로 지속적 평생교육 발전이 가능함
- 전라남도 행정 업무와의 간섭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도 중단 없는 사업이 가능함
- 꾸준하고 계획적인 사업의 진행으로 평생교육진흥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중복투자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
- 법인화로 독립적 예산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 사업이 가능함
- 법인화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용이함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중복지원을 막을 컨트롤타워 역할로 예산 절감이 가능함
- 지역특화 사업의 발굴, 예산, 기획, 지원 등 지속적 노력으로 창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인화로 성과관리 등을 통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력운용체계, 예산,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통하여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법인화가 필요하며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경기도(2009). 경기 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2009~2013).
- 경기도(2013).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2013~2017).
- 경상남도(2008).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2008~2009).
- 광주광역시(2005). 광주전남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 광주광역시(2008). 2008년도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원기본계획(2013~2017). 평생직업교육국.
- 교육부(2014).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인적자원부(2005).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09).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모형 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성인학습자 대학 평생학습 수요 실태 조사분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13~'17) 수립.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http://kosis.kr>
- 권인탁(2006).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평생교육학연구. 12(4). 한국평생교육학회. 121-147면.
- 김민호(2001).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방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병완·임형택 외(2006). 지속가능 발전 광주 남구 중장기발전계획. 광주 남구.
- 김해시(2007). 김해시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수립. 김해시.
- 김희수·임형택 외(2005).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도시 중기발전계획 수립. 광주 남구.
- 박소연·임형택 외(2009). 전남 지역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전라남도발전연구원.
- 박인중 외(2011).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운영 방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변종임(2005). 평생학습도시 향후 추진 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부산 사상구(2008). 부산 사상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부산 사상구.
- 부산 해운대구(2008). 부산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해운대구.
- 서울시(2010). 서울형 그물망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평생교육 5개년 ('10~'14)계획.
- 순천시(2006).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3개년계획(2006~2008). 순천시.
- 양홍권 외(2006).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집문당.
- 용인시(2007). 용인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인시.
- 이희수(2002). 평생학습도시 시범 사업 평가 및 모델 도시 구축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2003).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형택 외(2008).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임형택 외(2009). 2010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인재육성 시행계획. 광주발전연구원.
- 임형택 외(2011). 순천문화건강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순천시.
- 임형택 외(2013). 담양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담양군.
- 임형택·민문식(2015). 마을평생교육: 사례와 전망. 과주: 공동체.
- 전라남도(2013).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4~2018). 전남발전연구원.
- 전남발전연구원(2014). 전남 시·군별 지역발전 구상 보고서. 전남발전연구원.
- 전라북도(2008).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전북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
- 전라남도발전연구원(2013).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4~2018).
- 정경순(2014). 사회적 경제와 평생교육의 연계: 대안운동과 학습의 접합. 평생교육학연구, 20(1): 189-211.
- 충청북도(2008).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 최운실 외(2005). 한국평생교육의 총체적 진단과 발전모델구상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임형택 외(2009). 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군산시.
- 최운실 외(20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수립연구.
- 하봉운 외(20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
- 한국평생교육진흥원(2009).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모형 연구.

□ 부록 : 설문지

생명의당,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관계자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분들의 전문 의견을 토대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라남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과 운영 방안을 만드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마다 성실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본 설문조사지와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책임연구자 : 임 형 택 교 수

연구담당자 : 김 중 완 연구원

☎ 010-2613-9879

E-mail : e3951478@hanmail.net

※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응답자 정보

※ 해당 답변 문항에 √ 해 주세요

1. 성별 : ___① 남 ___② 여

2. 연령 : 만 _____세

3. 근무지역

___① 광양시 ___② 나주시 ___③ 목포시 ___④ 순천시 ___⑤ 여주시

___⑥ 강진군 ___⑦ 고흥군 ___⑧ 곡성군 ___⑨ 구례군 ___⑩ 담양군

___⑪ 무안군 ___⑫ 보성군 ___⑬ 신안군 ___⑭ 영광군 ___⑮ 영암군

___⑯ 완도군 ___⑰ 장성군 ___⑱ 장흥군 ___⑲ 진도군 ___⑳ 함평군

___㉑ 해남군 ___㉒ 화순군 ___㉓ 기타

4. 담당업무

공무원 : ___① 일반행정직공무원 ___②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해당자만 체크) : ___① 정규직 ___② (기간제) 계약직

· 평생교육사라면 자격 급수는? ___① 1급 ___② 2급 ___③ 3급

5. 업무경력

___① 1년 미만 ___② 1년~3년 미만 ___③ 3년~5년 미만 ___④ 5년~10년 미만 ___⑤ 10년 이상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이해와 활성화 요구

1. 귀하는 생활 속에서 평생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___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어느 정도 필요하다 ___⑤ 매우 필요하다

2. 전라남도는 2003년 순천시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4개 시(순천시, 목포시, 여주시, 광양시)와 7개 군(신안군, 무안군,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담양군, 화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지역민 대상 평생학습과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___②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___⑤ 매우 기여하였다

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 수행과 중요도

3.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 3월 19일에 개원(광주전남연구원 위탁 운영) 이래 지금까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도내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에 대해 현 수행 정도와 향후 중요도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역할에 대한 현 수행정도과 향후 중요도										
현 수행정도					역 할	향후 중요도				
매우 미흡함	미흡함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2.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정책 연구·개발·평가					
					3. 지역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운영					
					4. 전라남도 평생교육 종합 정보망 구축과 활용					
					5. 중앙정부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 사업 안내와 지원					
					6. 평생교육관련 DB 구축 (기관, 교강사, 다모아정보망 등)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자질 향상 교육					
					8. 시·군 평생교육기관 사업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9.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해교육 등)					
					10.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1. 행복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 중요도, 설립형태와 기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 발전에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법인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___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___⑤ 매우 도움이 된다.

5. 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확보된 신설 독립 재단 법인형태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___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___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어느 정도 적절하다. ___⑤ 매우 적절하다.

※ 최근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 시도
사 례**

- 독립법인(4) : 대전, 경기, 광주, 서울 / * 충남, 제주는 법인화 추진중
- 지정운영(10) : (연구원) 대구,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대구대학교) 경북 / (인재육성재단) 부산, 인천, 충남
- 추진중(2) : 전북(인재육성재단 추진중 보류), 세종(인재육성재단)

의견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규모

6. 귀하께서는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예산 확보가 담보된 법인화 추진시, 직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 ___ ① 현 직제(1처 2팀) 유지
___ ② 현 직제 유지하되, 2 ~ 3년 이후 1개 팀(예: 평생교육 일자리 진흥팀) 추가 신설
___ ③ 법인화 동시에 1사무처, 3팀으로 구성
___ ④ 기타 ()

※ **현직제** : 1원장, 1사무처, 2팀(기획운영팀, 개발지원팀)

※ **인 원** : 정원 7명(원장 1,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3)

· 원장(광주전남연구원장 겸임), 파견 3(도 2, 교육청 1), 채용 3(평생교육사)

의견 :

7. 귀하께서는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재단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체 인원 수 : _____명(원장과 처장 포함)
___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_____명

※ **독립재단 평균 23명**(대전 37명, 경기 30명, 광주 11명, 서울 15명 등)

※ **전국 평균 11.6명**(전남7명, 충남 12명, 부산 9명, 인천 10명, 강원 7명, 경북 7명 등)

□ 부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5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

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출자·출연 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인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지도·감독 등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출연 기관의 최초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제18조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상황을 보증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중 제1항에 따른 지정·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 설립 전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설립 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25.]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5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7.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이 영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 가. 출자금: 5억원
- 나. 출연금: 2억원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 가. 출자금: 3억원
- 나. 출연금: 1억원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 제86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기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7조(출자기관의 상환 보증 범위) 법 제2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기관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사항: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하고 통합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통합 공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2. 경영 성과와 재무 현황
3.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결과
4.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 6. 법 제23조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무
- 7.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사상 조치에 관한 사무

부칙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출자·출연 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 사업의 자금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出資)법인·출연(出捐)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 제67조의3 및 제78조제2항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⑦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